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보건복지부 소관
(1차관 소관)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 문 위 원 정경윤

전 문 위 원 오세일

【 목차별 담당 입법조사관 】

구분	목차	입법조사관	연락처(6788-)
Ⅰ권(제1차관소관)	기획조정실	안병갑	5494
	복지정책관	박지호	5497
	복지행정지원관		
	연금정책관	김태엽	5506
	사회서비스정책관	박지호	5497
	인구아동정책관	조서연 허기원	5500 5498
	노인정책관	양승민	5499
	장애인정책국	김대명	550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박지호	5497
Ⅱ권(제2차관소관)	보건의료정책관	안병갑	5494
	공공보건정책관	오은선	5509
	한의약정책관	최은영	5496
	첨단의료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	오현승	5503
	필수의료지원관		
	건강정책국	조서연	5500
	정신건강정책관	허기원	5498
	보건산업정책국	김태엽	5506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안병갑	5494
	의료개혁추진단		

【 목 차 】

Ⅰ. 결산 개요 ····· 1

1. 총괄 ····· 1

가. 세입세출결산 ····· 1
나. 기금 결산 ····· 2
다. 총지출 결산 ····· 3

2. 세입세출결산 ····· 5

가. 일반회계 ····· 5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9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31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3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39

3. 기금 결산 ····· 47

가. 국민연금기금 ····· 47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 56
다. 응급의료기금 ····· 65

4.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업 현황 ····· 73

Ⅱ. 실국별 검토 ····· 75

1. 기획조정실 ····· 75

가. 개요 ····· 75
1) 결산 총괄 ····· 75
2) 이·전용 현황 ····· 77
3) 이월 및 불용 현황 ····· 79

나. 사업별 검토 ····· 82
<일반회계>
1)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 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82
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편성 후 전액 전용한 문제 ····· 83
2) 정책기반 구축(7033-304) ····· 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87
나) 예비비를 통한 정책 홍보 문제 ····· 88
3)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 9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94
나) 국제부담금으로의 비목변경을 통한 통합적 분담금관리 필요 ····· 95

2. 복지정책관 ····· 99

가. 개요 ····· 99
1) 결산 총괄 ····· 99
2) 이·전용 현황 ····· 100
3) 이월 및 불용 현황 ····· 101

나. 사업별 검토 ····· 103
<일반회계>
1) 생계급여(1131-300) ····· 1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03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104
다) 예산 추계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106
2) 의료급여(1132-302) ····· 11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10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111
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114
3) 자활사업(1137-300) ····· 1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18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119
다) 자활성공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21
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137-309) ····· 12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24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125
다) 실집행율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127
5)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2631-326) ····· 13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30
나)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 131

3. 복지행정지원관 ····· 136

가. 개요 ····· 136
1) 결산 총괄 ····· 136
2) 이·전용 현황 ····· 137
3) 이월 및 불용 현황 ····· 138

나. 사업별 검토 ····· 141
<일반회계>
1)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2640-305) ····· 14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41
나)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교부 주의 ····· 1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 14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44
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146

4. 연금정책관 ····· 150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 150
1) 개요 ····· 150
2) 이·전용 현황 ····· 151
3) 이월 및 불용 현황 ····· 153

나.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 154
1) 수입 결산 ····· 154
2) 지출 결산 ····· 156

다. 사업별 검토 ····· 164
<일반회계>
1) 기초연금지급(2131-300) ····· 1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64
나) 기초연금급여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 제고 필요 ····· 165
2)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1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74
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 175
<국민연금기금>
3)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 17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79
나) 적정 규모 임차료 지출계획 수립으로 계획변경 최소화 필요 ····· 180

5. 사회서비스정책관 ····· 184

가. 개요 ····· 184
1) 결산 총괄 ····· 184
2) 이·전용 현황 ····· 185
3) 이월 및 불용 현황 ····· 186

나. 사업별 검토 ····· 188
<일반회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 18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88
나)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 개요 ····· 189
다)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교부 주의 ····· 190
2) 사회복무제도지원(2636-314) ····· 19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93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 194
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 19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96
나) 교부 요건이 소멸된 국고 보조금의 이자 반환 필요 ····· 19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 19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99

나) 보조금 교부지침에 따른 연 2회 이상 분할 교부 필요 ····· 200

6. 인구아동정책관 ····· 203

가. 개요 ····· 203

1) 결산 총괄 ····· 203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4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5

4) 기금 결산 ····· 206

5) 이·전용 현황 ····· 207

6) 이월 및 불용 현황 ····· 209

나. 사업별 검토 ····· 211

<일반회계>

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 2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11

나) 지원대상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12

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사 채용 안정성 제고 등 ····· 215

2)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 21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19

나) 사업 참여 아동 확대 등 사업 활성화 필요 ····· 220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 22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24

나) 자립수당 지급 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등 ····· 225

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 23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30

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 필요 ···· 231

다) 사례관리 지원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236

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 필요 ····· 239

5)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 24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42

나)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243
6)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1333-301) ····· 24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48
나) 국외입양인 지원 사업 관련 재외동포청 사업과의 협력·연계 강화 필요 ····· 249
다) 연례적 연구비 이월 지양 필요 ····· 252
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 25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54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노력 필요 ····· 255
8)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 26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60
나) 대상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261
9)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1337-304) ····· 27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70
나)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 주의 필요 ····· 271
1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 27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73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274
1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2537-300) ····· 2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82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구와 정책간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 필요 ····· 283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2537-302) ····· 2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87
나)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 사업의 중복 지양 및 적극적인 인구 문제 해결 지향 필요 ··· 288
13)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 ····· 29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94
나)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295
다) 가족돌봄비 지원 관련,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과 비교 검토 필요 ··· 297
라) 고립·은둔청년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301
마) 전담조직 개소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 305
14) 아동수당 지급(2533-300) ····· 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09
나) 오지급액 환수 철저 및 부적정한 전용 지양 필요 ····· 310
15) 아동복지시설 등 인건비 ····· 31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15

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 3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 지역아동센터 지원(1338-300) ····· 3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18
나) 아동복지교사의 안정적 관리 및 지역아동센터 외 파견 확대 필요 ····· 320
<국민건강증진기금>
17) 모자보건사업(2535-302) ····· 32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23
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과 지방이양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검토 필요 ··· 324
다)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비의 합리적 배분 방식 검토 필요 ·· 328
라) 생애초기 건강관리 내내역사업의 실집행율 부진에 대한 대응 필요 ···· 332
<국민연금기금>
18)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 3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35
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일반회계 편성 필요 ····· 336
다)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민간위탁사업비)으로 편성 필요 ····· 339

7. 노인정책관 ····· 343

가. 개요 ····· 343
1) 결산 총괄 ····· 343
2) 일반회계 결산 ····· 343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344
4) 기금 결산 ····· 345
5) 전용 현황 ····· 346
6) 이월 및 불용 현황 ····· 347
7) 예비비 지출 현황 ····· 348

나. 총괄적 검토 ····· 349
<일반회계>
1)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 재편성 필요 ····· 349

다. 사업별 검토 ····· 353
<일반회계>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 35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53
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필요 ····· 354
2)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 35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56
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 357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의 전임제 전환 검토 필요 ····· 359
3) 노인단체 지원(2133-301) ····· 36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62
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문제 ····· 363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 36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66
나)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 지양 필요 ····· 367
다) 중도포기율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369
5)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 37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72
나) 기술지원형사업 지원 강화 필요 ····· 373
6)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 37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77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필요 ····· 379
다) 국회보고 제도 도입 필요 ····· 3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 38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85
나) 서비스 수행 필요인력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처우개선 필요 ····· 387
8) 장사시설설치(2140-300) ····· 39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90
나)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및 화장시설 확충 필요 ··· 391
9)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 39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95
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96
1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 4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0
나)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 401
<국민건강증진기금>
11) 치매관리체계 구축(2234-300) ····· 4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5
나) 농촌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 필요 등 ····· 406
12) 노인건강관리(2235-304) ····· 4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9
나) 수요를 고려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 등 ····· 410

8. 장애인정책국 ····· 414

가. 개요 ····· 414
1) 결산 총괄 ····· 414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415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417
4) 기금 결산 ····· 418
5) 이·전용 현황 ····· 419
6) 이월 및 불용 현황 ····· 421

나. 사업별 검토 ····· 423
<일반회계>
1)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 42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23
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 424
다) 반복적인 예산조정(내역변경·전용)에 의존하는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426
라) 지원 기준 및 법적 근거가 상이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세부사업 분리 또는 내역 구분 필요 ····· 430
2)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1532-304) ····· 4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35
나) 전용 절차 없이 일반연구비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관행 시정 필요 ·· 436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1535-304) ····· 44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41
나) 미이용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도 개선 필요 ·· 442

다) 재정수요 증가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조정(내역변경)을 통한 가산급여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445
라) 보전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불균형 개선 필요 ··· 449
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 ····· 45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52
나) 언어발달지원의 높은 잠재 수요와 만족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453
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1535-309) ····· 45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57
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선정 기준 완화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459
다)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익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교부 체계 정비 필요 ····· 465
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1535-310) ····· 46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69
나) 계약 방법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비효율 개선 필요 ··· 470
7)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1536-300) ····· 4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74
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475
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 48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81
나) 공모 참여 저조 등에 따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부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유인 방안 마련 필요 ····· 483
9)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1538-300) ····· 48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88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탁사업 중심 인력 운영 구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해소 필요 ····· 489
1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1542-302) ····· 49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95
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전액 불용 주의 ····· 496
11)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1542-307) ····· 5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00

나) 실집행 저조 및 장기 미개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5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542-300) ····· 5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06
나) 하위 법령 제정 시 자립 수요를 반영한 장애인주택 공급 기준 필요 ··· 507
<국민건강증진기금>
13) 재활병원 건립 사업(1563-301) ····· 5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11
나) 재활병원 건립 지연 해소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체계 개선 필요 ··· 512

9.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 517

가. 개요 ····· 517
1) 결산 총괄 ····· 517
2) 이·전용 현황 ····· 518
3) 이월 및 불용 현황 ····· 518

나. 사업별 검토 ····· 520
<일반회계>
1)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 ····· 52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20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521
다) 행정 착오로 인한 예산 오집행 주의 ····· 522
라)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필요 ····· 524

Ⅰ. 결산 개요

1. 총괄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각각 9,439억 4,900만원, 2,621억 5,7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1조 2,061억 600만원임.

- 총 징수결정액 1조 7,045억 7,300만원은 일반회계 1조 4,175억 9,900만원, 특별회계 2,869억 7,400만원으로 구성

- 총 수납액 1조 2,861억 8,300만원은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수납액 등 1조 400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환자진료 병원수입 등 2,461억 7,900만원으로 구성

- 총 미수납액은 4,172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및 과징금 미수납액 등 3,765억 3,700만원과 특별회계의 진료비 미수납액 등 407억 3,800만원으로 구성

- 불납결손액 11억 1,500만원은 파산 및 동시폐지로 채무법인 소멸로 인한 채권 소멸 또는 판결로 확정된 시효소멸 채권 등에 따른 것임.

<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C/A)	(C/B)		
계	**12,061**	**17,045**	**12,861**	**106.6**	**75.4**	**11**	**4,173**
□ 일반회계	9,439	14,176	10,400	110.2	73.4	11	3,765
□ 특별회계	2,621	2,869	2,461	93.9	85.8	0.5	407

2) 세출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4조 5,935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등을 모두 합한 예산현액은 73조 7,578억원임. 이 중 72조 5,947억원(98.4%)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11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1,516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계	**745,935**	**737,578**	**725,947**	**114**	**11,516**	**98.4**
□ 일반회계	726,288	718,091	706,789	58	11,243	98.4
□ 특별회계	19,646	19,486	19,158	56	272	98.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703	17,473	17,374	10	89	99.4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43	2,013	1,783	46	183	88.6

나. 기금 결산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3개 기금의 기금운용규모 실적은 총 220조 8,492억 7,700만원임. 당초 171조 9,656억 6,700만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48조 8,836억 1,000만원(28.4%)이 증가되었음.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수정 계획액(A)	실적(결산액)(B)	집행률(B/A)
계	**171,965,667**	**220,849,277**	**128.4**
□ 국민연금기금	166,745,869	215,518,382	129.2
□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31	4,544,447	99.7
□ 응급의료기금	661,667	786,448	118.9

* 기금운용규모 기준
* 기금은 수납액(자금조달)과 지출액(자금운용) 규모가 일치함.

다. 총지출 결산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현황을 총지출[1]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총 122조 8,478억원,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22조 221억원이며, 이 중 120조 6,640억원(98.9%)이 집행되었고, 29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3,283억원은 불용됨.

1)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의 실질적인 지출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모든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를 더하고(단, 금융성기금은 제외함), 정부 예산 및 기금 간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여 산출함.

< 2024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E)	집행률 (C/B)
총지출	**1,228,478**	**1,220,221**	**1,206,640**	**298**	**13,283**	**98.9**
▪ 예 산	**741,794**	**733,430**	**721,801**	**115**	**11,514**	**98.4**
◦ 일반회계	722,264	714,067	702,765	58	11,244	98.4
◦ 특별회계	19,529	19,363	19,036	56	270	9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703	17,474	17,374	10	10	9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26	1,889	1,662	46	181	88.0
▪ 기 금	**486,684**	**486,791**	**484,838**	**183**	**1,770**	**99.6**
◦ 국민연금기금	447,517	447,597	445,918	160	1,519	99.6
◦ 국민건강증진기금	36,377	36,400	36,215	17	168	99.5
◦ 응급의료기금	2,790	2,794	2,705	6	83	96.8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제외

- 내부거래 : 1조 3,653억원
  * 일반회계(책특회계·기금전출) 4,024억원, 특별회계 12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계정간전출 예수금상환) 5,700억원, 응급의료기금(예수금상환) 3,807억원
- 보전지출(여유자금, 채권매입 등) : 171조 4,147억원
  * 국민연금기금 170조 9,266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29억원, 응급의료기금 1,352억원

2. 세입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9,439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 4,175억원이며, 이 중 1조 400억원(73.4%)이 수납되고, 10억원(0.1%)은 불납결손, 3,765억원(26.6%)은 미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의 95.3%인 1조 3,516억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경상 이전수입으로, 1조 35억원(74.2%)이 수납됨.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943,949**	**1,417,599**	**1,040,003**	**1,059**	**376,537**	**26.6**
재산수입	12,411	61,315	35,146	-	26,168	42.7
경상이전수입	929,886	1,351,644	1,003,508	63	348,073	25.8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652	1,341	1,341	-	-	-
관유물 매각대	-	8	8	-	-	-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	3,291	-	996	2,295	69.7

나) 불납결손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불납결손액 10억 5,900만원은 채무법인 소멸로 인한 채권 소멸 또는 판결로 확정된 시효소멸 등에 따른 것임.

< 2024회계연도 불납결손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구분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계	**1,059**	
경상이전수입	63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56	시효완성
- 변상금 및 위약금	7	시효완성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96	
- 전대차관원금회수	996	파산 및 동시폐지로 채무법인 소멸로 인한 채권 소멸 또는 판결로 확정된 시효소멸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

다) 미수납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3,765억 3,700만원은 재산수입 261억 6,800만원, 경상이전수입 3,480억 7,3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억 9,500만원으로 구성됨.

-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발생함.

< 2024회계연도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376,537**	
재산수입	26,168	
- 건물대여료	18	납기일 미도래
- 토지대여료 등	1	납기일 미도래
- 전대차관 이자수입	1,097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5,053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경상이전수입	348,073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47,722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
- 변상금 및 위약금	13,218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 중인 상황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수납 예정
- 가산금	64	기타사유
- 기타경상이전수입	287,070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95	
- 전대차관원금회수	2,295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72조 6,288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34억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71조 8,091억원임.

이 중 70조 6,789억원(98.4%)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58억원(0.01%)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1,244억원(1.6%)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부문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이체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72,628,824	23,422	200,398	230,741 △230,741	△1,043,512	24,446 △24,446	71,809,132	70,678,927	5,827	1,124,379
기초생활 보장	17,919,672	50	-	△26,212	-	72 △72	17,893,510	17,238,939	76	654,495
취약계층 지원	5,076,849	1,023	-	-	-	3,874 △3,874	5,077,872	5,068,985	775	8,112
공적연금	52,336	-	-	-	-	60 △60	52,336	52,142	-	194
사회복지 일반	570,645	4,703	9,700	1,830 △288	△1,296	2,056 △2,056	585,294	564,656	2,243	18,395
아동·보육	10,497,881	1,164	-	288 △1,316	△1,042,216	1,445 △1,445	9,455,801	9,443,900	248	11,653
노인	24,835,292	49	-	△202,926	-	6,364 △6,364	24,632,416	24,237,133	80	395,204
보건의료	1,871,336	16,413	190,698	228,624	-	10,545 △10,545	2,307,071	2,268,615	2,346	36,111
건강보험	11,804,813	20	-	-	-	30 △30	11,804,833	11,804,558	59	216

나) 예비비 사용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04억원으로, 이 중 1,977억원(98.7%)을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용 내 역
계		**200,398**	**197,652**	**127**	**2,620**	
일반 예비비	의사 집단행동 대응	125,447	125,368	-	80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지원
일반 예비비	의료공백 해소 지원	74,951	72,284	127	2,540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지원

다) 이용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이용[2] 규모는 총 2,307억 4,2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등 확보 등임.

2)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이른바 입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일반적으로 예산총칙에 규정)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액	이 용 사 유	
계	**230,742** **△230,742**		
기초생활보장	△26,212	(생계급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3,500),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급 부족분(△22,712)	△26,212
사회복지일반	1,830 △288	(국제협력관리) 엘리엇 ISDS 후속조치 관련 법률비용 지급을 위한 부족분 이용	1,830
		(본부 인건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개편 및 처우개선 소요예산 부족분 이용	△288
아동·보육	288 △1,31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급을 위한 1,316백만원 이용	△1,3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및 전문임기제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본부인건비에서 288백만원 이용	288
노인	△202,926	(기초연금지급)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85,150백만원),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2,400백만원),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 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113,546백만원), 엘리엇 소송 관련 영국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정부 배상금 지급(△230백만원)	△201,326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엘리엇 국제투자분쟁관련 법원 결정에 따른 정부 배상금 지급 부족분 이용	△1,600
보건의료	228,624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손실보상 정산 및 정산 후 이의신청에 따른 부족분 확보	22,7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	5,90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수당,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 등 부족분 확보	198,69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예산의 연례적 과소 편성으로 예산 부족 발생에 따라 자체이용	1,316

라) 전용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3] 규모는 총 244억 4,9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노인단체 지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예산 부족분 충당 등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24,449** **△24,446**		
기초생활보장	72 △72	(생계급여)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관리용역비에서 전용	40 △40
		(의료급여) 임차료(△2)에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2) 확보, 일반연구비(△30)에서 일반수용비(+27) 및 국내여비(+3)로 전용	32 △32
취약계층지원	3,874 △3,874	(장애수당(차상위 등)) 월별 수급자가 '24년 예산상 계획 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예산 부족 발생, 집행실적 및 지자체 수요 등 토대로 12월까지의 부족분 충당	3,746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5
		(장애인연금) 장애인차별금지 모티터링 및 인식개선 관련 용역비 10백만원 전용,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관련 30백만원 전용	△40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웹접근성 인증 심사·SSL 보안 인증서 갱신비 마련 4백만원 자체전용, 홍보영상 제작 비용 9백만원 자체전용,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부족분 2백만원 자체전용, 전시체험장 천장누수 공사비 부족분 4백만원 자체전용	19 △19
		(장애인지원관리)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85
		(장애인활동지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에 따른 활동지원사업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한 자체 예산 전용 +4백만원,	4 △3,800

3)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이른바 행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제46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 간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사용 등 시급한 필요성, 필수경비 충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자체전용 △10백만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 지급분 확보를 위한 전용 △3,746백만원, △장애인차량 lpg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대리 계약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40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편의증진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용역비 부족으로 장애인연금사업(+10)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10)에서 전용, 장애인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해 장애인지원관리사업으로 전용(△10)	20 △10
사회복지일반	2,059 △2,056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자산취득비 낙찰차액(73백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	73 △73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부족분 자체전용	4 △4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부족분 자체전용	6 △6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통합돌봄법 제정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전용	△100
		(사회복무제도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직무교육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자체 전용	4 △4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4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6백만원 전용	6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2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20 △15
		(복지급여 사후관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부족분 자체전용	39 △39
		(본부 인건비) 채용후보자의 고용부담금, 예산성과금 및 공무원 인건비 등 부족분 충당	135 △508
		(소록도병원 인건비) 2024년 공무원 보수 부족액 충당	31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국관 기본경비 내 부족예산과목 해소	27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13 △3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5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국관 기본경비 조정	△6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20 △10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85 △27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8 △24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보위 사무국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	30 △30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55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1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으로 예산 전용	△2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부족분 전용	9 △5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본부기본경비(7011)부족으로 13백만원, 소록도병원 인건비(7005) 부족으로 43백만원	△56
		(정책기반 구축) 2024년 자체평가 시행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비용, 소송 수행에 따른 기일 참석을 위한 출장 여비 부족분 및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 등 예산 부족분 전용	92 △92
		(국제협력관리) 국제회의 증가로 국외여비 추가 재원 필요, 메이슨 ISDS 중재절차 수행을 위한 자문비용 지급에 부족한 비용 전용 등	259 △114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정보보안 컨설팅 강화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여비로 전용	11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 지원 등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6백만원 본부 기본경비로 전용	△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지원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부족분 84백만원 본부 기본경비로 전용, 국제협력관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기본경비 부족분 18백만원 전용	△102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4백만원)	4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34백만원)	34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비총액)) 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국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5 △5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총액)) 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국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1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및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부족분 충당	16 △10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1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27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조정 등	2 △2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조정,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11 △5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예산 재원 활용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10 △13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예산 재원 활용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65 △65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부족분 자체전용	6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 전용	21 △21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부족분 자체전용	10 △10
		(행정지원인력 운영) 공무직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48백만원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청년인턴 인건비 부족으로 급여지급을 위해 본부 인건비에서 100백만원 행정지원인력 운영사업 일용임금으로 전용	148 △48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164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필요한 부족 예산 전용(△164백만원)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내 운영비 조정	20 △20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ISP 수립비 등	354 △90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부족분 확보의 사유로,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에서 1백만원 전용	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연금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금개혁 선행사례 확인 및 연금개혁 도출 논의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확보(33백만원, △18백만원), 국제협력관 국제회의 참석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확보(△24백만원)	33 △42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직책수행경비 부족분을 같은 사업 내 특근매식비에서 5.4백만원 전용, 기본경비(비총액)에서 10.08백만원 전용. 과운영비 부족분을 기본경비(비총액)에서 1.8백만원 전용	17 △5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같은 사업 내 국내여비에서 60백만원 전용.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기본경비(총액)으로 △10.08백만원 전용. 과운영비 부족으로 기본경비(총액)으로 △1.8백만원 전용	60 △72
아동·보육	1,445 △1,445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기본계획 자문회의 운영 등을 위해 국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자체전용(11백만원)	11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무처 조직개편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전용	1,234 △26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초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말 홍보 예산 부족분 마련	150 △150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청년미래센터 전담지원 시범사업의 전담인력 교육을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연구비에서 전용	50 △50
		(아동수당 지급)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3.26.)에 따른 인건비, 사무공간 조성 등 처우개선 소요예산 확보 필요에 따라 전용 △1,208백만원	△1,208
노인	6,36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	4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6,364	대, 미등록 경로당 추가 지원,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 예산 마련	△5,204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미등록 경로당 추가 지원,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 예산 마련	6,360
		(기초연금지급)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및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확보(△1,160백만원)	△1,160
보건의료	10,545 △10,545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에 따른 치료비 예산 부족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서 679백만원 전용	679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신청 등 수요량 증가에 따른 전용	△679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출장업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3 △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장기조직기증원 운영사업 자체 전용 배정에 따른 정정처리	13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출장 증가에 때란 부족한 여비 확보	12 △12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회의 수당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	△13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안내서 인쇄비 부족으로 세목간 자체 전용	30 △30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Aus Biotech 2024 연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홍보 및 파트너링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비 전용	△6
		(제약산업 육성지원) Aus Biotech 2024 연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홍보 및 파트너링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비 전용	6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목간 자체 전용	2 △2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에 필요한 문서 발송 등기 비용 충당	△120
		(보건의료정책개발 지원 등)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에 필요한 문서 발송 등기 비용 마련	120
		(소록도병원관리) 한센환자치료-공공요금(4533-301-210-02) 부족액 충당	△90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한센환자치료) 한센환자치료-공공요금(4533-301-210-02)부족액 충당	180 △9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대체인력 파견수당 부족으로 내역사업인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에서 9,500백만원 전용	9,500 △9,500
건강보험	30 △30	(보험정책사업관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30백만원 전용	30 △30
공적연금	60 △60	(연금정책사업관리) 연금제도 인식조사 정책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내 일반수용비에서 60백만원 전용	60 △60

마)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00만원(0.03%)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5,830**		
기초생활보장	76	(자활사업) 연구용역 1건 계약기간 미도래	10
		(의료급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66
취약계층지원	776	(장애인지원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82
		(장애인활동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43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 2건 계약기간 미도래	380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9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39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34
사회복지일반	2,24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4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서비스 확대사업 등 정보화 사업과 법률 자문, 대리인	557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선임 등 소송 관련 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차년도 계약기간 유지	18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연구용역 3건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잔금 이월	10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54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70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4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4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539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16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80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1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4
		(정책기반 구축) 소송사건 외부대리인 선임에 대한 성공보수 이월	66
		(국제협력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비 이월	55
		(보건복지 상담 센터) 영상상담시스템 재구축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잔액 집행에 따른 자산취득비	369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지원시스템 ISP 원인행위 완료 및 연구용역 계약(24.12.~25.5.월)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88
아동·보육	249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자립촉진을 위한 자립수당/정착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4.8.16.~'25.2.28.)에 따른 이월	14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입양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기간('24.01월~'25.6월) 미도래	89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용역 계약기간('24.10월~'25.3월) 미도래	30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용역 사업기간 미도래	86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연구용역 사업기간 미도래	30
노인	80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연구 추진일정 고려에 따른 일반연구비 이월(80백만원)	80
보건의료	2,346	(국립치의학연구원) 계약기간('24.7~'25.7월) 종료 이후 연구용역 잔금 지급 예정	76
		(소록도병원관리)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 양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1,035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연구용역 등 계약기간 미도래	116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및 감리 사업 계약기간('24.10월~'25.1월) 미도래	86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손실보상 위탁심사 계약연장(20백만원), 긴급치료병상 위탁사업 사업계획 연장에 따른 재이월(90백만원)	11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시설 관련 사업 지연(①후생관 온수가열기 코일박스 철거 및 재설치 공사 업체 사유로 대금지급 지연-시설장비유지비 4백만원, ②공무직 사무동 건립공사 조달청 계약 지연('24.3~) 으로 인한 필수 공사기간 부족(10개월)-건설비 366백만원)	370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78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8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12백만원) 및 의대정원 증원 소송대리인 계약기간 미도래(26백만원)에 따른 이월	38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56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연구용역 계약기간(24.9.2~25.4.15) 미도래	101
건강보험	59	(보험정책사업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59

바) 불용 명세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조 1,243억원(1.6%)으로, 주요 사유는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우선 활용,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감액자 수 증가 등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124,373**		
기초생활보장	654,494	(생계급여) 지자체 실집행 현황을 반영한 집행잔액 등	154,426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등	13
		(자활사업) 집행잔액	3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등	2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우선 활용에 따른 불용, 연구용역 등 집행잔액	500,042
		(긴급복지) 운영비 집행잔액	8
취약계층지원	8,110	(노숙인등 복지지원) 집행잔액 등	657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56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집행 잔액	2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	38
		(장애인지원관리) 집행잔액	3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56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255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35),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1,368)	1,403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연구용역 낙찰차액 25백만원, 집행잔액 3백만원	2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미수립 및 자부담 확보 계획 불가로 인한 사업포기 불용 (2,230)	2,364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집행잔액 (13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비 공모 사업 집행잔액	586
		(장애인 단체) 집행잔액	8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연구용역 집행잔액(62), 장애체험센터 경상경비 집행잔액(12) 기태경상경비(4)	7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30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집행잔액(510), 연구용역 낙찰차액(4)	514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 되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의사자·의상자 신청 및 인정 건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1,651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집행잔액	2
공적연금	194	(연금정책사업관리) 홍보용역비 낙찰차액(72백만원) 및 홍보비 집행잔액(101백만원) 등	194
사회복지일반	18,39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정보화, 홍보용역 사업 낙찰 차액과 서비스 확대 사업 일부 과제 불이행에 따른 집행 잔액과 사업관리비 예산 집행 잔액	905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용역 낙찰차액(43백만원) 및 소액의 집행잔액(1백만원)	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30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정보화 용역사업 낙찰차액 54백만원(전년이월) 및 사업관리 집행잔액 22백만원	7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집행잔액	9
		(사회복무제도지원) 상병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여 계급별 보수 지급하기에 차액 발생	125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불용 및 연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540백만원)	540
		(보건복지 상담 센터) 상담사 휴·퇴직에 따른 인건비(101) 및 인건비성 경비(57), 관리용역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33), 건강보험공단 파견인력 철수로 인한 전용회선 해지,	338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사용종료된 서비스 해지 및 전화요금 감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137), 워크숍 취소 여비(3), 일반수용비 조달수수료(7) 등 집행잔액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05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7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3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0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41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불용	1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8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집행잔액	6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제세,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48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36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5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01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해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7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복리후생비 및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16백만원) 및 국외업무 여비(2백만원) 등 집행잔액	23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소송예산으로, 소송 진행단계 등에 따른 미집행(이월예산으로 재이월 불가)	538
		(행정지원인력 운영) 공무직 휴직, 퇴직 등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161백만원), 청년인턴 급여 및 여비 등 필요금액 지급 후 잔액 (208백만원)	369
		(복지급여 사후관리) 여비, 사업추진비 집행잔액	29
		(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13,464
		(소록도병원 인건비) 집행잔액	2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정현원 차이, 기준호봉 차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59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2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5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0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00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2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7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0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6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2
		(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소록도병원 전산운영경비) 집행잔액	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48
		(정책기반 구축)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34
		(정책연구개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등	9
		(국제협력관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12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연구비 등 집행잔액	13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3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8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3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0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4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7
아동·보육	11,65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홍보대행사 용역비 낙찰차액 9백만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4백만원	1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 교부금액 일부 조정 후 집행잔액	31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1
		(가정위탁 지원·운영) 집행잔액	8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설치비, 인건비 등 불용	6,587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금리변동 및 장기저축이 강제되는 사업특성 및 대상군 확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621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연구용역 집행잔액(67백만원) 및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1개소 선정지연으로 인한	118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불용(50백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설치비, 운영비 등 불용액 발생	3,805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집행잔액	8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민간위탁사업비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9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연구용역 집행잔액	1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7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연구용역 집행잔액	21
		(아동수당 지급)사업운영 집행잔액	16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운영 집행잔액	16
노인	395,20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여 신규입국자 귀국일정 지연으로 인한 특별생계비 및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보증금 집행잔액	687
		(기초연금지급) 지자체 집행소요 및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계감액자 수 증가 등에 따른 불용(390,441백만원)	390,4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법(24.11.1.) 시행 이후 연구용역 시행하려 하였으나, 내부 진행절차 지연으로 연구 미진행	80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 후 신규 채용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상용임금 일부 미집행	6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집행 잔액	3,918
		(노인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경상보조 집행잔액	5
보건의료	36,111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사업 집행 잔액	151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신규 1개소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167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38백만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낙찰차액(6백만원) 등	227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32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감리비 낙찰차액(151백만원) 및 공사비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56백만원)	207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 데이터플랫폼구축 및 운영비 집행잔액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운영비 집행잔액	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보전금 및 기관운영비 집행잔액	765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인건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186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
		(소록도병원관리) 집행잔액	276
		(한센환자치료) 집행잔액	155
		(소록도병원 임상연구비(R&D)) 집행잔액	1
		(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 집행잔액	13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R&D)) 연구기관 과제 중단 및 과제 선정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542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R&D)) 연구자 단가미만 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67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신규과제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800
		(임상현장수요연계형중개연구(R&D)) 집행잔액	1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과기부·STEPI, '23.8.~'24.4.)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차액 불용	20,980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집행잔액	2
		(해외환자 유치 지원) 집행잔액	52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일반용역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128
		(제약산업 육성지원) 집행잔액	7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연구비 등 집행잔액	8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운영경비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	9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공중보건장학제도 집행잔액	15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수행기관 선정 결과 집행잔액	62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사업대상자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213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연구용역 집행잔액	51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R&D)) 집행잔액	2
		(한의약의 해외진출지원) 집행잔액	14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
		(한의약산업육성) 집행잔액	2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연구용역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1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손실보상 정산액 지급 잔액	955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여비 등 사업운영경비 집행잔액	9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정현원 차이, 기준호봉 차이 집행잔액(984), 연말 원인행위 조정 및 정산 집행잔액(434), 기타 집행잔액(205)	1,623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등	6,39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진료비 시도별 배분 후 교부 잔액(50만원)	1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10
		(국가보건의료표준화) 국외여비 집행잔액	2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집행잔액(1,192백만원), 연구용역 집행잔액(88백만원)	1,280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61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면허미신고 효력정지 대상 예측 대비 하회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119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 연구용역 집행잔액 등	1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제도개선비 집행잔액 등	17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연구용역 낙찰차액(27백만원), 임차료 등 집행잔액(369백만원)	396
건강보험	215	(보험정책사업관리)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9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22백만원, 위원회 인쇄비 절감 등 46백만원 포함 69백만원 집행잔액	69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국내여비(계획변경 및 취소), 연구비(집행잔액)	47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24억 5,100만원 중 24억 4,500만원(99.8%)이 수납되고, 600만원(0.2%)은 미수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775**	**2,451**	**2,445**	**-**	**6**	**0.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0	207	207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559	1,553	-	6	0.4
융자원금회수	685	685	685	-	-	-

나)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한 것임.

<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6**	
기타경상이전수입	6	
- 기타경상이전수입	6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2) 세출 결산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은 8억 7,800만원이며, 이 중 3,100만원이 수납되고, 7억 9,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	878	31	56	791	90.1
기타경상 이전수입	-	878	31	56	791	90.1

* '01년 LPG 세율인상에 따라 '01.7월부터 LPG차량 소유 장애인(장애등급 무관)에 대해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07.1월부터 일부 장애등급(4~6급) 지원 중단하여 '10.7월부터 전면 폐지함. 지원중단 이후 보호대상자 사망, 세대분리자 등 지원중지자의 부당이득 사례가 발생하여 환수 추진 중

** 불납결손사유: 환수금액이 지급명령 제기 시 발생하는 송달료 이하 건 등 불납결손 처리

나) 세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7억 9,100만원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납부저항 등에 따른 것임.

<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791**	
기타경상이전수입	**791**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91**	체납자 재력 부족, 납부저항 등

2) 세출 결산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886억 6,300만원 중 514억 100만원(58.0%)이 수납되고, 372억 6,200만원(42.0%)은 미수납됨.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67,038**	**88,663**	**51,401**	**-**	**37,262**	**42.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29	5,234	3,323	-	1,911	36.5
기타경상 이전수입	66,109	83,429	48,078	-	35,351	42.4

가)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미수납액 372억 6,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37,26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911	
- 기타재산이자수입	1,911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기타경상이전수입	35,351	
- 기타경상이전수입	35,351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조 7,703억 4,200만원이고, 그 중 1조 7,37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9,00만원을 이월하였고, 89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770,342**	**353**	**△23,323**	**5,828 △5,828**	**1,747,371**	**1,737,423**	**994**	**8,955**
취약계층지원 (082)	**5,982**	**16**	**-**	**-**	**5,998**	**5,997**	**-**	**1**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1500)	5,982	16	-	-	5,998	5,997	-	1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1542)	5,982	16	-	-	5,998	5,997	-	1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회복지일반 (089)	**445,484**	**51**	**-**	**-**	**445,535**	**440,197**	**65**	**5,273**
사회복지기반조성 (2600)	445,484	51	-	-	445,535	440,197	65	5,273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188,926	51	-	-	188,977	188,647	65	26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35)	256,558	-	-	-	256,558	251,550	-	5,008
아동·보육 (08A)	**358,745**	**-**	**△23,323**	**-**	**335,422**	**335,186**	**189**	**47**
아동보호 및 복지강화(1300)	309,451	-	-	-	309,451	309,215	189	47
방과후 돌봄 지원 (1338)	309,451	-	-	-	309,451	309,215	189	47
보육지원강화 (3100)	49,294	-	△23,323	-	25,971	25,971	-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3134)	49,294	-	△23,323	-	25,971	25,971	-	-
노인 (08B)	**612,659**	**144**	**-**	**28 △28**	**612,803**	**610,988**	**-**	**1,815**
노인생활안정 (2100)	590,948	144	-	28 △28	591,092	590,147	-	945
노인돌봄서비스 (2134)	546,105	144	-	-	546,249	545,306	-	942
장사시설설치 (2140)	44,843	-	-	28 △28	44,843	44,840	-	3
노인의료보장 (2200)	21,711	-	-	-	21,711	20,841	-	870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	21,711	-	-	-	21,711	20,841	-	870
보건의료 (091)	**347,472**	**142**	**-**	**5,801 △5,801**	**347,614**	**345,055**	**740**	**1,819**
공공보건의료확충 (2700)	257,843	142	-	5,801 △5,801	257,985	256,135	79	1,771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46,734	-	-	-	46,734	46,734	-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732)								
지방의료원 등 육성(2743)	193,955	142	-	5,801 △5,801	194,097	193,346	79	672
의료취약지 지원(2750)	17,154	-	-	-	17,154	16,055	-	1,099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2800)	29,267	-	-	-	29,267	28,906	360	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29,267	-	-	-	29,267	28,906	360	1
보건산업육성(3000)	60,362	-	-		60,362	60,013	301	47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36)	60,362	-	-		60,362	60,013	301	47

나) 전년 이월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은 총 3억 5,3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년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353**		
취약계층지원	16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3.5.17.~'24.4.1.)에 따른 잔금 이월	16
사회복지일반	5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45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6
노인	14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계약기간 미도래	144
보건의료	142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연구용역 사업기간 미도래	142

다) 이용 명세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라) 전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은 총 58억 2,9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5,829** **△5,829**		
노인	28 △28	○ (장사시설설치) 국외연수(장사제도 선진사례조사) 추진(20), 장사제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8) 등	28 △28
보건의료	5,801 △5,801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지자체) 지원금 부족으로 동일 내역사업내 적십자병원(민간) 예산 5,800백만원 전용 등	5,801 △5,801

마) 다음연도 이월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이월은 총 9억 9,4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994**		
사회복지일반	6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 관련 각 제도들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4년도 하반기에 계약 추진·이월	65
아동보육	189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급	189
보건의료	74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공공병원 경영혁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79백만원)	7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4차사업 시행을 위한 기기 및 앱개발 지연으로 인한 장비운영비 이월	36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연구용역(2건) 계약기간 미도래	301

바) 불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불용은 총 89억 5,5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8,955**		
취약계층지원	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 낙찰차액(0.6백만원)	1
사회복지일반	5,27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보조사업 도입과 안정화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확보, 제공 인프라 구축, 이용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 지연	5,008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 (의료급여관리사) 지역간 정원 조정시 국고보조율 차이 (서울 50%, 지방 80%)로 인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인건비 일부 미교부(190백만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미집행(55백만원) 및 방문건강관리, 드림스타트 등 사업운영경비 집행잔액(20백만원)	265
아동·보육	47	(지역아동센터 지원) 집행잔액 등	47
노인	1,8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942
		(장사시설설치) 집행잔액	3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지 미선정·건축단가 상승 등 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870
보건의료	1,819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 BTL지원, 영주적십자병원 지원사업 임대료 상향 예측분 잔액(287백만원),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지원 집행잔액(124백만원), 기존 공모계획 대비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미지정(240백만원) 등	672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산부인과 신규선정지역 시설장비비 미집행의사로 인한 불용	1,09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	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7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949억 8,200만원 중 1,923억 300만원(98.6%)이 수납되고, 26억 7,900만원(1.4%)은 미수납됨.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194,344	194,982	192,303	-	2,679	**1.4**
국립재활원	61,024	62,196	61,974	-	222	0.4
국립정신건강센터	48,786	49,373	48,259	-	1,114	2.3
국립공주병원	18,639	17,714	17,577	-	137	0.8
국립나주병원	26,261	27,006	26,284	-	722	2.7
국립부곡병원	21,451	20,502	20,191	-	311	1.5
국립춘천병원	18,183	18,190	18,017	-	173	1.0

나) 불납결손액 명세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26억 7,900만원은 대부분 진료비 청구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수액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 수 납 사 유	
계	2,679		
영업수입	2,494	○ 국립재활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222
		○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929
		○ 국립공주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137
		○ 국립나주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722
		○ 국립부곡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311
		○ 국립춘천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173
영업외수입	185	○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송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 미수액 및 채권 압류 시효연장에 따른 이자발생분	185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943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원, 초과지출승인액 44억원을 더한 2,013억원이며,

이 중 1,784억원(88.6%)을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46억원(2.3%)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3억원(9.1%)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	이체	이용	전용				
계	**194,344**	**2,599**	**4,377**	**-**	**664 △644**	**1,769 △1,769**	**201,319**	**178,384**	**4,630**	**18,305**
국립재활원	61,024	821	3,147	-	255 △255	708 △708	64,992	54,662	3,049	7,281
국립정신건강센터	48,786	414	994			96 △96	50,194	47,441	397	2,357
국립공주병원	18,639	-	26	-	-	37 △37	18,665	16,323	108	2,232
국립나주병원	26,261	39	130	-	-	54 △54	26,430	23,987	174	2,269
국립부곡병원	21,451	363	80	-		810 △810	21,894	20,053	214	1,626
국립춘천병원	18,183	962	-	-	409 △409	66 △66	19,145	15,918	688	2,538

나) 전년 이월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은 총 25억 9,9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년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이 월 사 유	
계	**2,599**		
국립재활원	821	○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승강기 공사 및 연결통로 보수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	548
		○ 침대 등 자산취득 및 소아용 하지재활보조로봇 등 외신 연구장비 구매 계약기간 미도래	184
		○ 건강검진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89
국립정신건강센터	414	○ 2023년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309
		○ 의료장비 및 정보화 물품 등 계약기간 미도래	105
국립나주병원	39	○ 시스템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	39
국립부곡병원	363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3차) 건축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363
국립춘천병원	962	○ 외래진료실 리모델링공사 및 정신재활시설 증축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962

다) 초과지출 승인 명세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초과지출액은 총 43억 7,7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초과지출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초 과 사 유	
계	**4,377**		
국립재활원	3,147	○ 재활연구소 및 병원부 외부수탁연구과제 운영 등	3,147
국립정신건강센터	994	○ 외부수탁연구과제 운영	633
		○ 직업재활교육 한우리카페, 주차장 운영 등	315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46
국립공주병원	26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16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운영	10
국립나주병원	130	○ 전라권역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33
		○ 직장인 마인드 클리닉 운영	18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79
국립부곡병원	80	○ 외수수탁연구용역	80

라) 이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이용은 총 6억 6,4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이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액	이 용 사 유	
계	**664** **△664**		
국립재활원	255 △255	○ 공무원연금부담금(퇴직수당) 부족	255
국립춘천병원	409 △409	○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	409

마) 전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은 총 17억 7,1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1,771** **△1,771**		
국립재활원	708 △708	○ 병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일반연구비, 고용부담금 등)	97
		○ 수입대체경비 외부수탁과제 연구비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부족(반환금 및 손실금)	611
국립정신건강센터	96 △96	○ 공무원 인건비 부족	76
		○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추진 연구용역 수행	20
국립공주병원	37 △37	○ 기본경비(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족	18
		○ 기본경비(고용부담금) 부족	19
국립나주병원	54 △54	○ 원내 환자 직업재활훈련장 운영 재료비 부족	10
		○ 일용임금 부족	44
국립부곡병원	810 △810	○ 공무원 인건비 부족	810
국립춘천병원	66 △66	○ 입원환자 진료보조의사 단기간근로자 채용 일용임금 부족	27
		○ 중형버스(전기차)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부족	2
		○ 재활훈련시설(카페) 재료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7
		○ 관사재계약 전세보증금 인상분 집행을 위한 무형자산 부족	30

바) 다음연도 이월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6억 3,0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이 월 사 유	
계	**4,630**		
국립재활원	3,049	○ 음압격리병실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2,631
		○ 연구장비 표면처리기, 재활연구 지속수동운동장치 등 계약기간 미도래	187
		○ 옥상 방수공사 관급자재 계약기간 미도래	157
		○ 건강검진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74
국립정신건강센터	397	○ 정신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계약기간 미도래	397
국립공주병원	108	○ 본관동 알루미늄 시트패널 설치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108
국립나주병원	174	○ 직업재활훈련장 개·보수 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	174
국립부곡병원	214	○ 정신재활시설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195
		○ 병원 제초작업 계약기간 미도래	19
국립춘천병원	688	○ 정신재활시설 증축공사(장기계속공사) 관련 건축공사 일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계약기간 연장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688

(7) 불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불용액은 총 183억 500만원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8,305**		
국립재활원	7,281	○ 인건비 집행잔액	1,504
		○ 병동 축소운영 및 입원환자 주부식 구호및교정비 등 집행잔액	1,029
		○ 연구용역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축소 및 낙찰차액 등	920
		○ 본관병동 그린리모델링 24년 내 공사 완료(절대 공사기간 부족) 불가에 따른 사업 취소 등 집행잔액	3,828
국립정신건강센터	2,356	○ 인건비 집행잔액(상용, 일용임금 포함)	693
		○ 의무직 결원에 따른 조제투약비, 구호및교정비 등 집행잔액	662
		○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01
국립공주병원	2,232	○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86
		○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조제투약비, 구호및교정비 등 집행잔액	367
		○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액	1,058
		○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및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121
국립나주병원	2,269	○ 정원 대비 현원 미달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656
		○ 고용부담금,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등 집행잔액	295
		○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반수용비 의도적 절감액	293
		○ 공사 낙찰차액 등 자본계정 집행잔액	25
국립부곡병원	1,626	○ 예산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231
		○ 복리후생비 등 기관 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05
		○ 임상연구비, 재원환자 감소로 인한 구호 및 교정비 등 사업운영 집행잔액	1,037
		○ 공사 낙찰차액 등 자본계정 집행잔액	152
국립춘천병원	2,538	○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848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186
		○ 공무직 결원 및 환자 급식비 등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1,300
		○ 자본계정(공사비 정산 등) 집행잔액	204

3. 기금 결산

가. 국민연금기금

1) 개요

□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법」제101조[4]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급여지급,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금융자산 투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연금보험료 · 기금 운용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법 §101②
관리 및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자금의 대여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102②

4)「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분	내 용	비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총괄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모두 계획(166조 7,458억원) 대비 29.2% 증가한 215조 5,184억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D)	증감 (D-A)	비율 (C/B)
		당초(A)	수정계획 (B)	실적(C)			
수입 (자금 조달)	자체수입	87,897,895	87,897,895	103,594,177	95,792,208	7,894,313	117.9
	정부내부수입	11,114	11,114	11,114	11,288	174	100.0
	여유자금회수	78,836,860	78,836,860	111,913,091	81,765,955	2,929,095	142.0
합 계		**166,745,869**	**166,745,869**	**215,518,382**	**177,569,451**	**10,823,582**	**129.2**
지출 (자금 운용)	사업비	43,722,907	44,183,856	44,042,307	48,705,371	4,982,464	99.7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34,871	34,134	28,240	34,049	△822	82.7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66,459	162,983	158,509	116,650	△49,809	97.3
	국민연금 복지사업	55,461	59,674	57,553	47,089	△8,372	96.4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93,180	93,180	93,180	94,327	1,147	100.0
	국민연금급여지급	43,372,936	43,833,885	43,704,825	48,413,256	5,040,320	99.7
	기금운영비	567,849	567,849	549,508	585,074	17,225	96.8
	기금운영비	867	897	886	584	△283	98.8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	566,982	566,952	548,622	584,490	17,508	96.8
	여유자금운용	122,455,113	121,994,164	170,926,566	128,279,006	5,823,893	140.1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15조 5,542억원 중 215조 5,184억원(99.9%)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4억원 및 미수납액 354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정수입 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166,745,869	215,554,205	215,518,382	412	35,412	0.02
사회보장기여금	61,276,922	61,739,205	61,739,205	-	-	-
- 사회보장기여금	61,276,922	61,739,205	61,739,205	-	-	-
재산수입	26,528,075	41,776,387	41,755,413	-	20,973	0.05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6,528,075	41,776,387	41,755,413	-	20,973	0.05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09	54,395	54,395	-	-	-
- 잡수입	44,609	54,395	54,395	-	-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289	50,494	45,165	412	4,918	9.7
- 융자원금회수	48,289	50,494	45,165	412	4,918	9.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8,836,860	111,922,612	111,913,091	-	9,521	0.01
- 유가증권매각대	58,560,789	93,077,077	93,077,077	-	-	-
- 정부예금회수	20,276,071	18,845,535	18,836,014	-	9,521	0.0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114	11,114	11,114	-	-	-
- 전입금	11,114	11,114	11,114	-	-	-

*주: 국민연금기금 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결정액은 수납액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납입고지액은 가입자의 자격소급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 결산보고서상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채권으로 관리함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 명세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대부자 사망(유족 및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및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서 경기 불황으로 장기 연체 지속 등으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함.

□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서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연체금액(미수납)이 발생하였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자의 월연금액 변경(감소) 등이 연체로 이어져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은 수정계획액 166조 7,459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80억원 증가된 166조 7,538억원이며, 여유자금운용 등을 통해 215조 5,184억원(129.2%)을 지출하고, 160억원이 202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19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66,745,869	7,953	471,676 △471,676	166,753,822	215,518,382	15,985	151,857
공적연금	166,745,869	7,953	471,676 △471,676	166,753,822	215,518,382	15,985	151,857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67,849	88	3,255	567,937	549,508	172	18,257

단위사업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3,255				
기금운영비	867	37	148 △118	934	886	37	11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566,982	51	3,107 △3,137	567,003	548,622	135	18,246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349,971**	**7,865**	**7,472 △7,472**	**357,836**	**337,482**	**15,813**	**4,540**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34,871	512	770 △1,507	34,646	28,240	5,804	601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66,459	7,353	2,489 △5,965	170,336	158,509	8,381	3,446
국민연금 복지사업	55,461	-	4,213	59,674	57,553	1,628	493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 사업	93,180	-	-	93,180	93,180	-	-
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43,372,936**	**-**	**460,949**	**43,833,885**	**43,704,825**	**-**	**129,060**
국민연금급여지급	43,372,936	-	460,949	43,833,885	43,704,825	-	129,060
여유자금운용	**122,455,113**	**-**	**△460,949**	**121,994,164**	**170,926,566**	**-**	**-**
여유자금운용	122,455,113	-	△460,949	121,994,164	170,926,566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4,716억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계	**471,676** **△471,676**		
공적연금	471,676 △471,676	(기금관리운영비) 중장기 투자전략 검토 연구비 확보(±60), 여비 확보(±16), 기금운용위원회 등 개최 비용 확보(+30), 여비 확보(±12),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비 확보(±30)	148 △118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기금운용직 결원해소를 위한 채용방식 개선(±261), 인재개발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컬설팅 예산 확보(±250), 정부 정책에 따른 청년인턴 운영 규모 확대 예산 확보(±574),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 비용 확보(±1,989), 기금운용위원회 등 개최 비용 확보(△30)	3,074 △3,104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33)	33 △33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인재개발원 부지 매입대금 예산 확보(±412), 법 개정에 따른 인재개발원 부지 매입 부대경비 예산 확보(±1)	413 △413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인한 부족 예산 확보(△737), 자체사옥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357)	357 △1,094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100), 총사업비 조정 결과 구축비 반영(+978, △804)	1,078 △904
		(노후준비서비스)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115)	115 △115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결과 반영(△174), 노후긴급자금 대부예산 추가확보(△1,026)	△1,200
		(국민연금 조사연구) NPS포럼 개최 예산 확보(±59), 연금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연구비 예산 확보(±44),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후속 연구 예산 확보(±18)	121 △121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신규 해외사무소 설립 예산 부족분 확보(±407),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50),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211),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인한 부족 예산 확보(△2,450), 국외여비 부족분 확보(±495)	1,163 △3,613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협회비 부족분 확보(±12)	12 △12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상근전문위원실 공공요금 부족분(±5만원) 확보	5만원 △5만원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융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부족한 대부 예산 추가확보(+4,213)	4,213
		(국민연금 급여지급) 계획 대비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부족한 급여지급 예산 확보(+460,949)	460,949
		(여유자금운용) 계획 대비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부족한 급여지급 예산 확보(△460,949)	△460,949

다) 다음연도 이월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액 규모는 160억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5,985**		
공적연금	15,985	(기금관리운영비)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2개 회계연도를 걸쳐 과업 수행('24.7월~'25.6월)	37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기금운용직 채용 대행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기금운용직 채용 대행 용역('24.6월 ~ 총 4회 채용 완료시)	135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인재개발원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재개발원 착공시기가 순연되어 공사비(4,390백만원), 시설부대비(19백만원) 이월 * 인재개발원 착공시기 순연('24.8월 → '25.3월)	4,409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실시설계 추가, 설치차수 추가 등으로 공사완료 시기가 변경되어 미집행 예산 이월 * 공사완료시기 변경('24.12월 → '25.7월 예정)	1,395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법 개정 관련 SW 추가개발 물량 등을 총사업비에 반영함에 따라 완료시기 조정되어 미집행 예산 이월 * 구축사업 완료시기 조정 ('24년말 → '25.4월말 예정)	8,381
		(복지타운운영사업비) 오수처리장 개량공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동절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공정일정으로 계약체결하여 관련 예산 이월 * 계약기간 : '24.10월 ~ '25.4월 예정	1,628

라) 불용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액 규모는 701억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51,857**		
공적연금	151,857	(기금관리운영비)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11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 및 자산운용 성과급 집행잔액, 정·현원차 발생에 따른 급여 잔액	14,538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정현원차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589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119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감리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43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홍성사옥 제로에너지인증에 따른 취득세 환급 등 집행잔액 불용	258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정보화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05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상담사 자격시험장 직접 섭외에 따른 외부대행비용 절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34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지원인원 감소(605 → 564천명) 등	528
		(국민연금 조사연구) 연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82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해외사무소 현지인력 정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일부 자문·투자분석 플랫폼계약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등	1,216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	22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민간전문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44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모바일 통지 확대로 인한 우편물 제작 및 발송비용 감소 등	1,011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디지털 비대면 전자문서를 활용한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물 제작 및 발송비용 감소 등	204
		(복지타운운영사업비) 오수처리장 개량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93
		(국민연금급여지급) 수급자 수(예상 136.7만명 → 실제 135.7만명) 및 노령연금 월 평균급여액 감소(예상 536천원→ 실제 529천원) 차이에 따른 불용	129,060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1) 개요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5]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담배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6]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금연교육 및 광고,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궐련 841원/2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 기금 운용수익금	법 §22②
운용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법 §25①

5)「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6) 궐련 841원/2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2) 총괄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담배부담금 등 자체수입 3조 2,908억원, 정부내부수입 1조 1,211억원, 여유자금 회수 1,325억원 등 총 4조 5,444억원(계획대비 99.7%) 조달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D)	증감 (D-A)	비율 (C/B)
		당초(A)	수정계획(B)	실적(C)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3,104,011	3,104,011	3,290,813	3,251,684	147,673	106.0
	정부내부수입	1,209,312	1,209,312	1,121,131	1,058,497	△150,815	92.7
	여유자금회수	244,808	244,808	132,503	230,350	△14,458	54.1
합 계		**4,558,131**	**4,558,131**	**4,544,447**	**4,540,531**	**△17,600**	**99.7**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3,637,642	3,637,642	3,621,432	3,534,834	△102,808	99.6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10,144	10,144	10,144	8,884	△1,260	10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32,206	32,206	30,841	35,344	3,138	95.8
	노인의료보장	200,322	200,322	199,212	185,580	△14,742	99.4
	공공보건의료확충	145,690	145,690	145,379	176,059	30,369	99.8
	보건산업육성	6,667	6,667	6,667	7,410	743	100.0
	국민건강생활실천	362,739	362,739	361,637	359,602	△3,137	99.7
	감염병정책관리	75,239	80,740	79,924	76,957	1,718	99.0
	감염병위기대응	8,590	8,590	7,654	10,045	1,455	89.1
	감염병진단분석	11,741	11,741	11,660	11,751	10	99.3
	의료안전예방관리	801,022	795,521	785,495	601,831	△199,191	98.7
	만성질환관리	74,036	74,036	73,607	63,314	△10,722	99.4
	보건의료연구관리	7,005	7,005	6,975	9,843	2,838	99.6
	건강보험제도 운영	1,902,181	1,902,181	1,902,181	1,988,166	85,985	10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60	60	56	48	△12	93.3
	기금운영비	98	98	87	98	-	88.8
	정부내부지출	690,041	690,041	570,049	749,060	59,019	82.6
	여유자금운용	230,350	230,350	352,879	256,539	26,189	153.2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4조 5,581억원, 징수결정액 4조 7,454억원 중 4조 5,444억원(95.8%) 수납되고, 2,010억원(4.2%) 미수납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 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4,558,131**	**4,745,402**	**4,544,447**	**5**	**200,950**	**4.2**
재산수입	9,093	22,965	22,012	-	953	4.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016	22,898	21,945	-	953	4.2
- 관유물대여료	77	67	67	-	-	-
경상이전수입	3,038,173	3,468,803	3,268,801	5	199,997	5.8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4	67	3	-	64	95.4
- 변상금 및 위약금	65	8	2	-	6	76.2
- 가산금	37	5102	1	-	5101	100
- 기타경상이전수입	3,038,067	3,463,626	3,268,795	5	194,826	5.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44,808	132,503	132,503	-	-	-
- 정부예금회수	244,808	132,503	132,503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09,312	1,121,131	1,121,131	-	-	-
- 전입금(국민건강증진계정)	72,161	-	-	-	-	-
- 전입금(공공보건의료계정)	59,447	43,427	43,427	-	-	-
- 예수금	1,077,704	1,077,704	1,077,704	-	-	-
관유물매각대	56,745	-	-	-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6,745	-	-	-	-	-

나) 불납결손 및 미수납 명세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불납결손은 채권 시효완성에 따른 것으로 5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납결손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계	**5**	
경상이전수입	5	
- 기타경상이전수입	5	채권 시효 완성

다)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미수납액 2,009억 4,900만원은 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함.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납결손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200,949**	
재산수입	953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53	관련 지자체, 기관의 예산 부족 등
경상이전수입	199,996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3	소송 진행 중
- 변상금 및 위약금	6	관련 기관 예산부족 등
- 가산금	5,101	소송 진행 중
- 기타경상이전수입	194,826	ㅇ 부담금 미납금 1,724억원 - 소송 진행 중 ㅇ 국고보조금 미 반납금 224억원 - 관련 지자체, 기관의 예산 부족 등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은 수정계획액 4조 5,581에 전년도 이월액 23억원 증가된 4조 5,604억원이며, 이 중 4조 5,444억원(99.6%)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17억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68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부문별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4,558,131**	**2,254**		**4,560,385**	**4,544,447**	**1,685**	**136,781**
건강보험	1,902,181	-		1,902,181	1,902,181	-	-
노인	200,322	634		200,956	199,212	91	1,653
보건의료	2,413,120	1,593		2,414,713	2,401,926	1575	133,740
사회복지일반	158	-		158	143	-	15
아동·보육	32,206	27		32,233	30,841	19	1,373
취약계층지원	10,144	-		10,144	10,144	-	-

나) 기금운용 계획 변경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액은 62억 3,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출) 계	**6,238 △6,238**		
보건의료	6,238 △6,238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전국 14개 거점지역센터의 매개체(모기, 진드기) 발생위험 감시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용역계약에 필요한 일반연구비 필요	140 △140
		(건강증진사업관리)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의 중장기 홍보 전략 및 브랜드 개발, 음주폐해예방 가이드라인 등 매뉴얼 개발 필요	180 △180
		(건강증진사업관리) 재난 상황 시 영양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일반연구비 필요	40 △40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코호트 임상자원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	70 △70
		(노인건강관리) 신규 사업인 '24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평가 연구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일반연구비로 변경	50 △50
		(국가예방접종실시)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등에 따른 출장 소요 증가 및 조직 개편('24.4월)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	44 △4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상담전화 인입량 증가 등에 따른 상담사 급여지급(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증가) 필요	470 △470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 시 필요한 조사물품, 분과 및 조정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전문조사수행팀 국내여비 필요	162 △162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충당	5,501 △5,501

다) 다음연도 이월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월액은 17억원으로 주로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685**		
아동·보육	19	(모자보건사업)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9
노인	91	(치매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46
		(노인건강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45
보건의료	1,575	(혈액안전관리) 혈액정보연동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연장으로 인한 이월	66
		(건강증진사업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275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9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상담전화 교환기 업그레이드 사업자 선정 지연	164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9
		(국가결핵예방)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30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해외의약품 납품기한 미도래	834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외자구매 물품 납품 지연	5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운영지원과 계좌이체 누락	6

라) 불용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용액 규모는 1,368억원(3.0%)임.

<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36,781**		
사회복지일반	15	(기금관리비) 집행잔액	11
		(부담금환급금 지원) 집행잔액	4
아동·보육	1,373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생애초기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1,373
노인	1,653	(치매관리체계구축)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대한 지자체 신청 저조 및 집행잔액 등	203
		(노인건강관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지자체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1,450
보건의료	133,740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내역사업별 집행잔액 등	313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용역 정산잔액,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1
		(건강증진사업관리) 집행잔액	90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집행잔액	3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인력공백에 따른 인건비, 연구비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34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공공계정 자체수입 발생	16,02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4년 12월(연말) 공자기금 예수로 인한 이자절감 등	31,811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28
		(국가결핵예방) '24년 상반기 집행 실적 조사를 통한 지자체 집행 소요를 반영하였으나 신규자 채용기간 소요, 결핵 치료제 수요량 감소,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486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집행잔액	133
		(국가암관리) 의료현안 장기화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공모 참여기관 저조에 따른 미지정 및 미교부	150
		(국가예방접종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규모 감소, 코로나19	11,023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백신 구매비 환율변동 차액 발생,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 운영비 등 집행잔액	1
		(국민건강영양조사)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1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국립중앙의료원 토지 미 매각	72,16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4
		(만성질환 예방관리) 낙찰차액 및 암역학조사 지자체 미요구로 인한 집행잔액	268
		(만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정책연구용역사업 집행잔액	14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	33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집행잔액	168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운영비 등 집행잔액	3
		(의료관련 감염관리) 연구용역 집행잔액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지자체 교부 잔액	175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국 센터 사업비 등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487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정신건강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집행잔액	9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시약 구매 및 용역사업 낙찰차액, 기타 집행잔액 등	30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8
		(혈액안전관리) 혈액정보연동시스템 구축 사업 일반용역비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60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119
		(희귀질환자지원) 집행잔액	1

다. 응급의료기금

1) 개요

□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법」 제19조[7]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정부출연금(도로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과징금(요양기관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응급의료기관 자금 지원, 응급장비 구비 지원, 응급의료 교육·홍보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응급의료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35% ·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정부의 출연금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법 §20①
운용	·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법 §21

7) 「응급의료법 」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총괄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모두 계획(6,616억원) 대비 18.9% 증가한 7,864억원임.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D)	증감 (D-A)	비율 (C/B)
		당초(A)	수정계획 (B)	실적(C)			
수입 (자금 조달)	자체수입	314,257	314,257	333,379	318,200	3,943	106.1
	정부내부수입	337,410	337,410	337,410	301,861	△35,549	100.0
	여유자금회수	10,000	10,000	115,660	20,000	10,000	1156.6
합 계		**661,667**	**661,667**	**786,448**	**640,061**	**△21,606**	**118.9**
지출 (자금 운용)	사업비	269,840	278,809	270,350	297,312	27,472	97.0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18,793	18,793	18,765	17,591	△1,202	99.9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30,617	30,617	29,719	31,924	1,307	97.1
	응급의료기관 지원	157,236	162,452	155,607	176,012	18,776	95.8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24,074	26,988	26,883	27,270	3,196	99.6
	119구급 운영지원	33,049	33,588	33,024	38,808	5,759	98.3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2,164	2,464	2,445	1,800	△364	99.2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3,907	3,907	3,907	3,907	-	100.0
	기금운영비	227	227	170	223	△4	74.9
	정부내부지출	381,962	381,962	380,685	315,110	△66,852	99.7
	여유자금운용	9,638	669	135,243	27,416	17,778	20215.7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6,616억원이고, 징수결정액 7,929억원 중 7,864억원(99.2%)이 수납되고, 64억원(0.8%)이 미수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정수입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661,667**	**792,868**	**786,448**	**-**	**6,419**	**0.8**
재산수입	6,654	14,397	14,050	-	347	2.4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54	14,397	14,050	-	347	2.4
경상이전수입	9,692	27,277	21,205	-	6,072	22.3
- 변상금및위약금	-	31	31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9,692	27,209	21,174	-	6,035	22.2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37	-	-	37	1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7,911	298,124	298,124	-	-	-
- 융자원금회수	297,911	298,124	298,124	-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00	115,660	115,660	-	-	-
- 정부예금회수	10,000	115,660	115,660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37,410	337,410	337,410	-	-	-
- 전입금	255,824	255,824	255,824	-	-	-
- 예수금	81,586	81,586	81,586	-	-	-

나) 불납결손액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미수납액 규모는 총 64억 1,900만원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6,419**	
재산수입	34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7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반납 예산 부족 등
경상이전수입	6,072	
- 기타경상이전수입	6,035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 부족 등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7	관계기관 예산 부족 등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현액은 수정계획액 6,617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더한 6,621억원이며, 이 중 7,864억원(118.9%)을 지출하였고, 6억원이 202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6억원(1.4%)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부문별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661,667**	**395**	**10,314 △10,314**	**662,062**	**786,448**	**635**	**9,554**
보건의료	661,667	395	10,314 △10,314	662,062	786,448	635	9,554

나) 기금운용 계획 변경 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103억 1,4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출) 계	**10,314 △10,314**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보건의료	10,314 △10,314	(119구급대 지원)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부족분 증액(구급상황관리사 및 의료지도의사 한시적(1개월) 증원)	53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부족분 증액(구급상황관리사 및 의료지도의사 한시적(1개월) 증원)	△539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및 응급의료자원정보(종합상황판)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액	2,914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및 응급의료자원정보(종합상황판)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액	3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및 응급의료자원정보(종합상황판)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액	△3,214
		(119구조장비 확충)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발생(13억원) 및 대형헬기(EC225LP) 결함엔진 수리 예산 부족분 지원	1,345 △1,345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관련 중대본 회의(8.28.)에 따라 권역·지역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필요	3,68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관련 중대본 회의(8.28.)에 따라 권역·지역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필요	△3,68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환자 증가로 응급실 과부하 심화, 일부기관 단축 운영 등 사례 발생, 특히 현장 의료진 소진 등으로 응급실 유지에 어려움 지속됨에 따라, 연말까지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15.4억원) 확보 필요	1,53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환자 증가로 응급실 과부하 심화, 일부기관 단축 운영 등 사례 발생, 특히 현장 의료진 소진 등으로 응급실 유지에 어려움 지속됨에 따라, 연말까지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15.4억원) 확보 필요	△1,536

다) 다음연도 이월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500만원(0.1%)임.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635		
보건의료	63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잔금 이월	270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연구용역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모자의료 실태분석 및 전달체계 개선 연구)	70
		(응급의료 조사연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89
		(119구조장비 확충) 헬기 정기점검 기간 '24년 연말 도래 및 항공기 부품 수급지연 등	206

라) 불용명세 및 사유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불용액은 95억 5,4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9,554**		
보건의료	9,554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4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집행잔액	24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닥터헬기 신규 배치 지연,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집행잔액	859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장비구매 낙찰차액(29백만) 및 통신회선료 집행 잔액(4백만), 유지보수 집행 잔액(6백만)	39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개편 지연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집행잔액(4,195백만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연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 발생 (1,632백만원)	5,837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조금 산정 집행잔액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현안대응으로 인한 현지점검 미실시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등	52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외과계 전문의 인력 부족, 간호사 수도권 쏠림 현상등으로 권역외상센터 의료 인력 충원 어려움	650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모자의료 전달체계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보상 마련 연구)	12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연구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9백만원 불용	29
		(응급의료 조사연구) 연구용역 낙찰 차액 등	32
		(119구급대 지원) 구급사이버 교육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Heli-EMS 출동수당 조정 등	222
		(119구조장비 확충) 항공대원 교육비 및 국외여비, 헬기보험료 시뮬레이터 실적환급금, 헬기 출동감소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 등	441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집행잔액	19
		(인건비) 상용임금(19백만원), 고용부담금(1백만원) 집행잔액	20
		(기금관리비) 일반수용비(24백만원), 임차료(3백만원), 국내여비(1백만원), 국외업무여비(8백만원) 집행잔액	3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집행잔액	1,277

4.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업 현황

가. 개요

□ 기금의 경우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의 3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복권기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도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금에는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함.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타 부처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심사할 수 없으나, 「국회법」 제84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예산) 또는 결산 예비심사 의결일 전일까지 해당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타 부처 기금사업 중 보건복지부 수행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는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개 타 부처 소관 기금으로 7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회계연도 타 부처 소관 기금 6개 사업의 계획액은 1,377억 1,500만원이며, 1,556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타 부처 기금사업 중 보건복지부 수행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금명	소관	세부사업명	2024		2025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합 계 (총 6개 사업)			137,715	155,654	152,497
복권기금	기재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6352-334)	2,015	2,015	2,117
		재난적 의료비 지원 (6362-344)	68,451	85,769	76,473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20,222	20,843	21,34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365-347)	4,770	4,770	4,59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541-312)	41,697	41,697	47,401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융자지원 (4500-4531)	560	560	560

Ⅱ. 실국별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액은 3,565억 7,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709억 7,900만원이며,

이 중 3,548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 8,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9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356,572	5,323	9,000	10,603 △9,302	370,979	354,874	1,186	14,919
일반회계	356,414	5,323	9,000	10,603 △9,302	370,821	354,732	1,186	14,903
복지급여 사후관리	663	-	-	40 △40	663	634	-	29
보건복지 상담센터	8,660	48	-	24 △24	8,708	8,002	369	338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5,062	4,788	-	-	9,850	9,838	-	12
본부 인건비	196,284	-	-	3,419 △5,297	194,406	180,942	-	13,464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731	26	-	189 △62	1,884	1,826	54	5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41	5	-	5 △12	139	123	4	12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40	2	-	△4	38	36	-	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136	4	-	168 △222	85	66	4	16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4,242	63	-	508 △518	4,295	3,755	539	1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501	21	-	543 △228	837	821	16	-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1,087	3	-	1,081 △1,529	642	462	80	100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258	25	-	44 △75	253	249	-	4
본부 전산운영 경비(정보화)	3,149	-	-	73 △73	3,149	3,089	-	60
부내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790	-	-	-	2,790	2,654	-	136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운영	16,007	-	-	-	16,007	16,007	-	-
정책기반 구축	5,724	2	9,000	2,249 △2,249	14,726	14,526	66	134
정책연구개발 (R&D)	564	70	-	-	634	625	-	9
국제협력관리	1,754	32	-	259 △114	3,760	3,593	55	112
WHO사업분담금 지원(ODA)	7,263	-	-	-	7,263	7,263	-	-
WHO의무분담금 납부(ODA)	19,228	-	-	-	19,228	19,228	-	-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지원	12,170	-	-	-	12,170	12,170	-	-
개도국개발협력 사업(ODA)	52,217	-	-	-	52,217	52,217	-	-
WPRO 전략사업 추진(ODA)	1,884	-	-	-	1,884	1,884	-	-
보건복지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10,325	234	-	12 △12	10,559	10,458	-	101
행정지원인력 운영	4,534	-	-	158 △58	4,634	4,265	-	369
국민건강 증진기금	**158**	**-**	**-**	**-**	**158**	**143**	**-**	**15**
기금관리비	98	-	-	-	98	87	-	11
부담금환급금 지원	60	-	-	-	60	56	-	4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이·전용 현황

가) 이용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이용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18억 3,000만원이 이용 증액, 2억 8,800만원이 이용 감액되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개편 및 처우개선 소요예산 부족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부 인건비에서 2억 8,800만원이 이용되었으며, 국제협력관리 사업의 엘리엇 ISDS 후속조치 관련 법률비용 지급 부족분에 사용하기 위하여 18억 3,000만원을 이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용사유
계	1,830 △288	
본부 인건비	△28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개편 및 처우개선 소요예산 부족분 이용
국제협력관리	1,830	○ 엘리엇 ISDS 후속조치 관련 법률비용 지급 위한 부족분 이용

나) 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서는 전용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총 9억 5,000만원이 전용 증액되고, 11억 9,2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음.

-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에서 부정수급신고 증가 및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라 동일사업 내 일반연구비 등을 신고포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14개 사업에서 전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사유
계	950 △1,192	
복지급여 사후관리	39 △39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가 및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라 동일사업 내의 일반연구비 및 임차료를 신고포상금으로 전용, 부정수급 예방교육 교재 인쇄를 위해 동일사업 내의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자체전용
본부 인건비	135 △508	○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 135백만원 전용(세부사업 내 전용) ○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부족분 6백만원 전용 ○ 소속기관 인건비 부족분 267백만원 전용 ○ 청년인턴 인건비 부족분 100백만원 전용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27	○ 본부 국관 기본경비 필요분 재배정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8 △24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13 △3	○ 본부 국관 기본경비 필요분 재배정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55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85 △273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5 △6	○ 원활한 기본경비 운영 등을 위한 자체전용 등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3 △73	○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전용
정책기반 구축	92 △92	○ (창의변화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간담회 개최(국외여비 → 임차료 4백만원) ○ (소송수행) 소송수행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추가소요로 소송수행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13백만원 전용 ○ 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패소비용 부족으로 보건직공무원 채용 일반용역비에서 배상금으로 35백만원 전용
국제협력관리	259 △114	○ 대면 국제회의 증가로 인해 국외 여비 추가 재원 필요(196백만원) ○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연장('24.5월→'25.5월)에 따른 추가 연구용역 소요재원(35백만원) ○ 메이슨 ISDS 자문비용 지급 위한 부족분 (22백만원) 전용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11 △11	○ 정보보안 컨설팅 강화 등에 따른 여비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내여비로 11백만원 전용
행정지원인력 운영	148 △48	○ 공무직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48백만원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청년인턴 인건비 부족으로 급여지급을 위해 본부 인건비에서 100백만원 행정지원인력 운영사업 일용임금으로 전용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서는 이월이 없고, 총 9개 일반회계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등으로 총 11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사유
계	1,186	
보건복지 상담 센터	369	○ 보건복지상담센터 영상상담시스템 재구축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잔액 집행에 따른 자산취득비(369백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54	○ 기본경비 이월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4	○ 미지출 기본경비 이월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4	○ 기본경비 이월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539	○ 기본경비 이월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16	○ 미지출 기본경비 이월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80	○ 기본경비 이월
정책기반 구축	66	○ (소송수행) 소송사건 외부대리인 선임에 대한 성공보수 이월(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위임사무 종료시까지)
국제협력관리	55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일반연구비 이월(55백만원)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보건정책관 소관 18개 일반회계 사업에서 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등 149억 300만원, 2개 기금 사업에서 기금관리비 집행잔액 등 1,500만원 등 총 149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14,919	
<일반회계>	14,903	
복지급여 사후관리	29	○ 집행잔액
보건복지 상담 센터	338	○ 상담사 휴·퇴직에 따른 인건비(상용임금 101백만) ○ 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 22백만, 고용부담금 35백만), ○ 낙찰차액(관리용역비 1백만, 자산취득비 32백만) ○ 건강보험공단 파견인력 철수로 인한 전용회선 해지, 사용종료된 서비스 해지 및 전화요금 감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137백만) ○ 워크숍 취소 여비(3백만), 일반수용비(조달수수료, 7백만) 등 집행잔액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1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2백만원) 발생
본부 인건비	13,464	○ 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5	○ 집행잔액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2	○ 미지출 기본경비 불용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2	○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16	○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1	○ 집행잔액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100	○ 집행잔액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4	○ 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손실보상금 등 집행잔액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60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60백만원) 발생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136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36백만원) 발생, 보건복지 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의 경우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구축비 미반영으로 연구 효용성이 낮아 연구용역비 불용(100백만원)
정책기반 구축	134	○ (능력개발) 교육운영비(20백만원) 및 포상금 및 임차료 집행잔액(1.9백만원) ○ (통합 및 전략홍보) 홍보 집행잔액(3.7백만원), 용역 집행잔액(6백만원) ○ (창의변화관리) 여비(1백만원),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연구 낙찰 차액(25백만원) ○ (소송수행) 배상금 지급 잔액(약 73만원) ○ (정책기반 통계생산) OECD 등 국제기구 보건통계 생산 및 관리 계약 등 낙찰차액(32백만원) 및 국민보건계정 등 연구용역 집행잔액(27백만원) ○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4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정책연구개발(R&D)	9	○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등
국제협력관리	112	○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101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3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38백만원) ○ 임차료 집행잔액(6백만원) ○ 관리용역비 집행잔액(9백만원) ○ 국내여비 집행잔액(2백만원) ○ 연구용역비 집행잔액(10백만원) ○ 자산취득비 집행잔액(5백만원)
행정지원인력 운영	369	○ 공무직 휴직, 퇴직 등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161백만원) ○ 청년인턴 급여 및 여비 등 필요금액 지급 후 잔액 (208백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5**	
기금관리비	11	○ 집행잔액
부담금환급금 지원	4	○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은 정부합동감사 및 법인·시설 현지조사, 부정수급 예방 홍보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복지급여 집행·감독체계 운영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6억 6,300만원으로 이 중 6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63	663	-	36 △36	663	634	-	29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302	302	-	△36	266	237	-	29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361	361	-	36	397	397	-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편성 후 전액 전용한 문제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3억원이 편성되는데, 2024년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에도 실태조사 후속연구' 명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타 비목으로 전용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불필요한 연구용역비의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현지조사, 관련 공무원 및 법인·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3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반연구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전액 감액 전용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하였음.

< 2024년도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302	302	-	-	-	266	237	-	29
- 일반수용비 (210-01)	63	63	-	4	-	67	67	-	-
- 임차료 (220-07)	7	7	-	△7	-	-	-	-	-
- 국내여비 (220-01)	116	116	-	△3	-	113	94	-	19
- 국외여비 (220-02)	10	10	-	-	-	10	5	-	5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업추진비 (240-01)	39	39	-	-	-	39	34	-	5
- 일반연구비 (260-01)	30	30	-	△30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7	37	-	-	-	37	37	-	-

자료: 보건복지부

□ 동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는 3년마다 3억원이 편성되는데,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8]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에 제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3년 제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제3차 실태조사는 2026년 진행될 예정임.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1/10 수준으로 축소하여 편성되고 있음. 2021년의 경우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4,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보장급여 오류수급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진행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후속연구를 위하여 일반연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동 연구비를 동일 사업 내의 포상금(310-03목)으로 전용하였음.

8)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일반연구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연구제목
2020년	300	250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2021년	-	-	-
2022년	40	39	사회보장급여 오류수급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3년	300	270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2024년	30	-	*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동 사업 내에서 일반연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한 날짜는 12월 9일로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이었는데, 이는 2024년이 끝나가도록 연구과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구용역비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집행지침 상 연구용역비 공통지침 >

< 공 통 지 침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 낙찰차액은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 사용 기준을 따른다.

○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즉, 2024년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에도 구체적인 연구목적 없이 ‘실태조사 후속연구’ 명목으로 3천만원의 일반연구비를 편성하였다가 이를 연말까지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기반 구축(7033-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책기반 구축은 보건복지부 내 교육, 정책홍보, 조직관리, 법률서비스 지원, 통계구축, 보건직공무원 채용, 재정지출 지속가능성 제고,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 부내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7억 2,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0만원 및 예비비 9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7억 2,600만원으로, 이 중 6,600만원이 이월되고 1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정책기반 구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724	5,724	2	-	9,000	14,726	14,526	66	134
능력개발	360	360	-	12	-	372	350	-	22
통합 및 전략홍보	2,104	2,104	-	△73	9,000	11,031	11,021	-	10
창의변화관리	342	342	-	-	-	342	313	-	29
소송수행	1,330	1,330	-	128	-	1,458	1,392	66	1
정책기반 통계생산	1,294	1,294	2	-	-	1,296	1,237	-	59
보건직공무원 채용	67	67	-	△67	-	-	-	-	-
재정지출 지속가능성 제고	28	28	-	-	-	28	28	-	-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199	199	-	-	-	199	185	-	14

나) 예비비를 통한 정책 홍보 문제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내역사업 중 '통합 및 전략홍보'는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의 국민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부 전체차원의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위기대응 홍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시작되었음.

□ 정부는 2024년 본예산으로 2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심의·확정하였음.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준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 세부내역 >

① 정책홍보 추진 경비: 1백만원
② 보건복지 통합 및 전략홍보 : 2,103백만원
- 방송,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 481백만원
- 언론매체 관계자 워크숍(임차료) : 6백만원
- 정책홍보 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홍보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 사회이슈 주요계기 대국민 캠페인 : 200백만원
- 대국민 소통 정책홍보 및 방송 장비(자산취득비) : 60백만원
- 온라인 여론분석서비스 운영 : 350백만원
- 정책홍보 역량 강화 : 85백만원
- 뉴미디어 콘텐츠 통합 운영 홍보사업 : 490백만원
- 디지털소통팀 콘텐츠 자체 제작·확산 : 336백만원
- 보도자료 영문 번역 위탁계약 : 45백만원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예비비 90억원을 배정(2024.3.11.)받아 의료개혁 홍보를 위하여 89억 9,800만원을 사용하였음.

< 2024년도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의 예비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광고형태	집행금액
홍보 콘텐츠 제작	의료계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가짜뉴스 팩트 체크영상	-	40
	의료개혁 주요쟁점 인포그래픽		48
	의료개혁 달라지는 미래모습 영상		55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미지 등		50
	의료개혁 이슈 대응		28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9
	합계		229
홍보 집행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지면광고	7
	팩트체크 및 Q&A브로셔제작	지면광고	10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홍보	지면광고	8
	전 국민 대상 의료개혁 및 주요 현안 등 안내	온라인 광고	300
	의료개혁 일러스트 포스터 옥외광고	옥외광고	1,421
	의료개혁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모습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확산	온라인 광고	300
	의료개혁관련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방송매체광고	2,441
		옥외광고	222
		온라인 광고	2,075
		지면광고	76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홍보	온라인 광고	4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안내	지면, 온라인, 옥외광고	33
	의료개혁 및 전공의 요구사항 관련 추진사항 안내	지면광고	14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온라인 광고	90
	우리지역 좋은병원찾기	지면광고	515
	비상진료시기 응급실 이용안내	지면광고	296
		온라인 광고	10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지면광고	35
		온라인	10
		리플릿	70
	가까운 병원찾기	지면광고	15
	합계		8,769
총계			8,998

이러한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는 비상진료시기 응급실 이용안내,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등 의료공백 시기에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집행되었음.

□ 예비비는 헌법 상 예산의 국회사전의결 원칙[9]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제22조[10]는 정부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가능성),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11]

□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상황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비상진료시기의 병원 및 응급실 이용 요령 등을 안내하는 비상진료체계 홍보와 달리,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9)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0)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1)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은 2022년 출범시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그 방향이 정해져 있었으며, 2023년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같은 해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전문의 중심의 인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방향 중 일부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되어야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범위였으며,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의 실무협의, 각 의학회와의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서면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12)]

특히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에도 보건복지부가 증원을 추진하였다가 당시 전공의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라 의료대란이 발생하자 2주만에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뿐만 아니라 대국민 정책홍보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2024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는 '사회이슈 주요계기 대국민 캠페인'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해놓았음. 그러나 총 21억 400만원의 본예산 중 의료개혁 홍보에 사용한 금액은 7,100만원에 불과함.

1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2022.12.7.

< 2024년도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 본예산 집행내역 중 의료개혁항목 >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광고형태	집행금액
홍보 콘텐츠 제작	의료개혁 수혜자 인터뷰 영상	-	30
홍보 집행	의대정원확대 많은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것입니다	지면광고	36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홍보	지면광고	5
총계			71

□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한 시기에도, 예비비 배정 없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집행하였음.

< 최근 5년간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1,585	1,585	-	3,853	-	5,438	5,413	-	25
2021	2,339	2,339	-	183	-	2,552	2,487	-	87
2022	2,144	2,095	-	△81	-	2,014	2,007	-	7
2023	2,144	2,144	-	135	-	2,279	2,160	-	119
2024	2,104	2,104	-	△73	9,000	11,031	11,021	-	10

- 특히 2020년은 사실상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첫 해임에도 이전용등으로 38억 5,300만원을 마련한 점을 고려한다면, 2024년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본예산 21억 400만원의 428%에 해당하는 90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그 대부분을 계속 추진 중이

던 정책홍보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요건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정부의 이러한 예비비 집행은 국회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예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3)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WPRO 전략사업 추진은 서태평양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국가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실시하는 만성질환,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사업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8억 8,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WPRO 전략사업 추진 (ODA)	1,884	1,884	-	-	1,884	1,884	-	-

자료: 보건복지부

나) 국제부담금으로의 비목변경을 통한 통합적 분담금관리 필요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예산의 비목을 해외경상이전(340-01)이 아닌 국제부담금(340-02)으로 변경함으로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실시하는 만성질환,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강화 등 보건복지부 소관 관련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상 비목은 해외경상이전(340-01)으로 편성·집행됨.

□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을 WPRO에 통보하고, WPRO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사업분담금을 집행하며, 집행한 후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는 방식임.

<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추진 절차 >

확보 예산 통보(보건복지부) → 사업제안서 제출(WPRO) → 사업제안서 검토 및 사업분담금 지원 합의서 서명(보건복지부, WPRO) → 분담금 집행(보건복지부) → 집행결과 보고(WPRO) → 집행결과 점검(보건복지부)

□ 그런데 동 사업은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와 WPRO간 체결된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하여 지급되므로,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납부하는 경비인 동 사업 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13]상 국제기구 분담금에 해당함.

---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 또한,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4] 에 따르면 해외경상이전(340-01)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에 해당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는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하여야 함.

□ WPRO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에도 존재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사업과 질병청 소관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사업은 모두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의 다른 사업에서도 WPRO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국제부담금(340-02)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14) 기획재정부, 2023.5.

< WPRO 분담금 지급 사업 비교 >

구분	WPRO 전략사업추진(ODA)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ODA)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ODA)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지원 근거	보건복지부 - WPRO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19. 10. 갱신)	보건복지부-WPRO/WHO 양해각서('24.10/12)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공적개발원조 사업 원조 협약 ('24. 5. 갱신)	질병관리본부-WPRO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양해각서('24. 연장)
비목	해외경상이전(340-01)	국제부담금(340-02)	국제부담금(340-02)	국제부담금(340-02)
'24회계연도 예산액	1,884백만원	563백만원	1,077백만원	2,045백만원
사업 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서태평양지역 자살예방 강화 등 보건복지부 관련 11개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서 추진하는 전통의약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등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몽골·필리핀)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역량강화 지원, 6개국(5개 지원국+말레이시아) 전통의약품 규제기관 역량강화 지원	긴급대비대응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대응 프로젝트,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등 질병청 관련 12개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 국제부담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외교부장관 소속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서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다음연도 분담금 납부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거치며, 해당 심의·조정 결과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되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는 등[15] 범정부

15)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받게 됨.

□ 따라서, ‘WPRO 전략사업 추진’사업의 비목을 해외경상이전(340-01)이 아닌 국제부담금(340-02)으로 변경함으로써, WPRO에 대한 분담금 납부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전략적 관리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복지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17조 9,34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7조 9,085억 4,200만원임.

이 중 17조 2,53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51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7,934,717	17,934,717	17,908,542	17,253,284	76	655,182
<일반회계>	17,934,717	17,934,717	17,908,542	17,253,284	76	655,182
생계급여	7,541,072	7,541,072	7,514,860	7,360,434	-	154,426
해산장제급여	42,613	42,613	42,613	42,613	-	-
의료급여	8,937,713	8,937,713	8,937,713	8,437,605	66	500,042
긴급복지	358,494	358,494	358,494	358,486	-	8
자활사업	749,864	749,864	749,914	749,901	10	3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7	7	7	5	-	2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70,706	270,706	270,706	270,693	-	13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9,203	19,203	19,203	19,203	-	-
노숙인등 복지지원	4,564	4,564	4,564	3,907	-	657
사회복지사 관리	1,091	1,091	1,091	1,091	-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2,384	2,384	2,384	2,384	-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3,135	3,135	3,135	3,135	-	-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820	820	838	821	-	17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800	2,800	2,800	2,800	-	-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40	140	103	102	-	1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11	111	117	104	-	13

2) 이·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사업에서 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5억원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으로 이용(감)하였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227억 1,200만원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이용(감)하여, 총 262억 1,200만원을 이용(감)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용 사유
계	△26,212	
생계급여 (1131-300)	△3,500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부족분 확보
	△22,712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부족분 확보

□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사업에서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관리용역비에서 4,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의료급여’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임차료에서 200만원, 수용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일반연구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 사유
계	-	
생계급여 (1131-300)	40 △40	○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관리용역비에서 전용
의료급여 (1132-302)	32 △32	○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임차료에서 전용(2백만원) ○ 수용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일반연구비에서 전용(30백만원)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각각 6,600만원과 1,000만원을 이월하여, 총 7,6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 사유
계	76	
의료급여 (1132-302)	66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자활사업 (1137-300)	10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사업에서 지자체 실집행 현황을 반영한 집행잔액으로 1,544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고, ‘의료급여’ 사업에서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우선 활용으로 5,000억원과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2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총 6,551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 사유
계	655,182	
생계급여 (1131-300)	154,426	○ 지자체 실집행 현황을 반영한 집행잔액
의료급여 (1132-302)	500,042	○ 결산잉여금 우선 활용에 따른 불용(500,000)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42)
긴급복지 (1133-300)	8	○ 국내여비 집행잔액(7) ○ 수용비 집행잔액(1)
자활사업 (1137-300)	3	○ 집행잔액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137-306)	2	○ 금리하락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137-309)	13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6)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7)
노숙인등 복지지원 (1931-304)	657	○ 집행잔액 등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2631-305)	17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11)	1	○ 집행잔액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91)	13	○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생계급여(11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생계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등의 ‘기초생활보장관리’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7조 5,410억 7,200만원에 이·전용액 △262억 1,200만원을 포함한 7조 5,148억 6,000만원으로, 이 중 7조 3,60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44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생계급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기준)
	본예산	추경						
계	7,541,072	7,541,072	-	△26,212	7,514,860	7,360,434	-	154,426 (300,210)
생계급여	7,539,428	7,539,428	-	△26,212	7,513,216	7,358,910 (7,213,126)	-	154,306 (300,090)
기초생활보장관리	1,644	1,644	-	-	1,644	1,524	-	120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생계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사업임.

-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선정기준)에서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17]

□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18]하며,

2024년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3년 대비 2%p 상승하였고, 4인가구 기준은 183만 3,572원으로 2023년(162만 289원)에 비해 21만 3,283원 증가하였음.

---

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이하 생략)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7)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2024년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713,102원) - 소득인정액(2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513,102원) * 원단위 올림

1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최근 5개년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중위 32%)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자료: 보건복지부

□ 그 결과, 일반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가구 수 기준 약 37.3%, 수급자 수 기준 약 31.3% 증가하였고, 시설수급자는 13.3% 증가하였음.

<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 수 >

(단위: 가구, 명)

구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이상		
'20년	923,873	721,200	135,033	42,906	16,478	5,524	1,771	961	1,221,022	87,973
'21년	1,081,655	856,602	156,242	44,220	16,405	5,495	1,752	939	1,402,260	90,820
'22년	1,157,750	928,843	161,190	43,668	16,089	5,375	1,687	898	1,481,771	92,230
'23년	1,200,418	971,371	162,115	43,074	15,970	5,330	1,673	885	1,523,735	96,019
'24년	1,268,179	1,031,836	166,944	44,530	16,580	5,599	1,754	936	1,602,953	99,707

자료: 보건복지부

다) 예산 추계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생계급여 사업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 과정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 사업은 2024년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외 자동차 재산환산기준 완화,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음.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변경된 제도에 맞춰 행복e음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대비 1조 5,269억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4년 생계급여 사업 제도개선 >

구 분		~'23년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가구 623,368원, 4인가구 1,620,289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가구 713,102원, 4인가구 1,833,572원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청년 근로소득공제		▲ **24세 이하** * 40만원 공제+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29세 이하** * 40만원 공제+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2024회계연도 생계급여 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미교부액은 1,544억 2,600만원이고 교부된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액은 1,457억 8,400만원으로, 이·전용액 26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 3,264억 2,2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생계급여 예산은 수급자 규모와 수급단가의 추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과다편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2024년 예상 대비 실제 수급가구 및 수급단가 >

(단위: 가구, 명, 백만원)

구 분		수급가구 수			수급액		
		예산(A)	실제(B)	차이(B-A)	예상(C)	실제(D)	차이(D-C)
일반수급	1인가구	948,627	1,031,836	83,209	4,435,430	4,853,207	417,777
	2인가구	164,623	166,944	2,321	1,233,327	1,251,129	17,802
	3인가구	44,598	44,530	△68	462,267	450,882	△11,385
	4인가구	16,432	16,580	148	202,143	197,470	△4,673
	5인가구	5,489	5,599	110	76,006	73,851	△2,155
	6인가구	1,723	1,754	31	26,945	25,739	△1,206
	7인 이상 가구	917	936	19	17,061	16,478	△583
시설수급(명)		94,194	99,707	5,513	298,409	298,829	420
합계		**1,276,603**	**1,367,886**	**91,283**	**6,751,588**	**7,167,585**	**415,997**
제도개선		70,445	-	-	962,747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재정절감액		-	-	-	△174,906	-	-
합계		**1,347,048**	**1,367,886**	**20,838**	**7,539,428**	**7,167,585**	**△371,843**

* 예상(C)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 편성근거를 토대로 작성

** 실제(D)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생계급여 지급현황에 국고보조율 (82.76%)를 곱한 결과값

□ 우선 수급자 규모와 관련하여, 실제 수급가구 수는 예상보다 9만 1,283가구(명)(7.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1인가구의 경우 예상보다 8만 3,209가구(명)(8.7%)이 더 많았음.

수급가구 수의 증가를 예산 불용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생계급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수급자 규모에 대해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① 생계급여 수급 가구 증가율 검토, ② 소득인정액 예상액 검토, ③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고려한 가구별 단가 예측, ④ 제도개선 과제별 시뮬레이션 및 검토, ⑤ 타 제도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재정절감분 반영 등의 예산 추계 과정을 거치고 있음.

2024년 예상 대비 실제 수급액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7조 5,39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급액은 7조 1,675억 8,500만원으로 3,718억 4,300만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당초 예측했던 수급단가는 563,577원[19]이었으나, 실제 수급액 기준 월 평균 수급단가는 527,620원[20]으로 예측 대비 35,957원 더 적으므로 수급단가에 대한 추계 역시 정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결과적으로, 수급단가를 정확히 책정했다면 생계급여 사업 예산을 3,718억 4,300만원(행복이음 통계 기준) 줄여서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와 수급단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3,264억 2,200만원(실집행 기준)을 과다편성하였음.

---

19) 563,577원 = 7,539,428백만원 ÷ 1,347,048 ÷ 12개월 ÷ 82.76%
20) 527,620원 = 7,167,585백만원 ÷ 1,367,886 ÷ 12개월 ÷ 82.76%

□ 비록, 생계급여가 법정 의무지출로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수급가구 수 및 소득인정액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 양상의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25년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9,453억 3,600만원 증액된 8조 4,864억원 800만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574조 7,696억 1,800만원의 1.47%에 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예측과 추계 정확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계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도 생계급여 사업비 및 불용액 >

(단위: 백만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전년대비 증가율)	4,655,454 (7.3%)	5,264,772 (13.1%)	6,014,148 (14.2%)	7,541,072 (25.4%)	8,489,981 (12.5%)
본예산과 실집행 차이 (본예산 대비)	88,049 (1.9%)	△84,202 (1.6%)	105,245 (1.7%)	326,422 (4.3%)	-

* 2022년의 경우, 이·전용(증) 1,227억원을 고려하면 본예산과 실집행 차이는 본예산의 3.9% 수준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계급여 사업의 목적과 기능,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추계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11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 및 「의료급여법」[22]에 따른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조 9,377억 1,300만원으로, 이 중 8조 4,37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기준)
	본예산	추경						
계	8,937,713	8,937,713	-	-	8,937,713	8,437,605 (8,437,227)	-	500,042 (500,486)
의료급여 (1132-302)	8,937,713	8,937,713	-	-	8,937,713	8,437,605 (8,437,227)	-	500,042 (500,486)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이하 생략)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2)「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이고, 사업 예산은 수급자 진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단 보조금, 사업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구분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른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내용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의료급여의 지원 내용 및 수급권자 구분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삭제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급자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연평균 수급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수급권자 수는 154만 4,591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 연평균 수급권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권자	1,507,981	1,526,632	1,516,507	1,524,098	1,544,591
기초1종	1,026,388	1,055,297	1,067,116	1,088,831	1,117,893
기초2종	389,049	382,936	364,584	353,015	347,744
타법1종	92,544	88,399	84,807	81,431	76,451
타법2종	-	-	-	820	2,502

* '23년부터 신규 타법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지역별 의료급여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매년 의료급여 실집행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아 의료급여기금이 적립되어 왔으나, 2024년은 의료급여 실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아 의료급여기금 4,107억 5,200만원을 사용하였음.

< 연도별·지역별 의료급여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합계	7,002,121	6,898,930	7,648,691	7,332,509	7,882,254	7,689,034	8,360,015	8,222,287	8,435,505	8,846,257
서울	731,437	712,382	829,633	770,069	841,036	810,319	889,065	873,872	790,312	944,452
부산	756,506	754,429	825,604	814,978	880,995	857,419	931,791	918,470	989,042	972,040
대구	473,565	485,643	523,142	509,301	551,426	541,997	584,199	578,222	653,547	626,229
인천	491,434	449,047	546,075	487,465	535,193	516,753	517,832	566,164	563,880	626,671
광주	279,800	280,552	304,363	294,933	316,231	307,314	323,793	327,918	354,746	345,477
대전	224,031	214,838	239,382	231,805	247,167	245,732	256,604	259,594	281,532	281,797
울산	113,125	111,746	126,358	124,214	137,520	134,324	145,767	145,094	166,821	152,309
세종	20,718	20,356	21,891	21,838	24,394	23,796	23,932	24,309	26,845	25,059
경기	1,224,938	1,195,735	1,358,310	1,270,917	1,380,370	1,347,017	1,586,869	1,485,531	1,378,736	1,622,358
강원	263,726	264,929	281,457	265,345	289,150	268,151	255,943	281,734	296,460	291,890
충북	231,091	217,592	247,341	233,692	249,228	242,595	236,280	260,224	271,459	273,996
충남	286,139	279,516	308,745	289,084	313,842	307,934	310,870	328,999	342,551	352,796
전북	410,483	411,396	447,922	445,775	460,290	446,336	488,726	475,123	498,220	492,423
전남	397,476	393,105	401,045	395,462	413,775	407,824	433,770	427,814	445,429	445,375
경북	489,047	499,456	523,361	526,081	550,822	541,177	600,985	572,977	584,256	603,589
경남	522,389	523,630	572,711	565,636	598,146	599,141	682,726	600,182	690,155	689,452
제주	86,216	84,576	91,350	85,913	92,672	91,204	90,862	96,060	101,513	100,344

자료: 보건복지부

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 계획 수립 필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기금의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의료급여법」 제25조[23]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되어 국고보조금,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됨.

□ 보건복지부는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 예산 편성 당시, 기본진료비 9조 518억 5,200만원과 본인부담금 지원비 546억 4,800만원 등을 이유로 총 8조 9,37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8조 8,462억 5,7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실집행율은 98.9%로 추계 정확성은 양호한 상황이었음.

□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은 의료급여 지출 추이 및 2023년 결산 국회의 과중한 적립금 보유에 대한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결산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2024년 예산 중 5,000억원을 미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용되었음.

---

23)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3년 말 기준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규모는 7,503억 2,100만원이었음.

< 시·도 의료급여기금 적립 현황 >

(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7,002,121	7,648,691	7,882,254	8,360,015	8,435,505
지출	6,898,930	7,332,509	7,689,034	8,222,287	8,846,257
적립금	103,191	316,182	193,220	137,728	△410,752
누적 적립금	103,191	419,373	612,593	750,321	339,569

2025.4월 기준, 시도별 결산 검토 중으로, 실집행액과 실집행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기금 적립금은 긴급 및 유사 시 안정적인 의료급여 사업 운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나, 과도한 적립금 보유는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기금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정적 사업 운영 및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적정 적립금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운용계획 수립이 선행되고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기금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기금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하였음.

2025년 예산도 의료급여기금의 적정 보유 수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및 체계적인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로 의료급여기금 2,766억원 사용을 전제로 편성하였고, 결국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도 활용가능한 의료급여기금은 63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34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이와 같이, 「의료급여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규모 및 기금 운용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 및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기금 사용 등을 이유로 불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준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같이 당해연도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하는 방법[24]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의료급여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수행되는 사업이지만,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25]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각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24년 5,000억원의 의료급여기금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미배정하였음.

---

24)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5)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역시 의료급여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내지 계획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자활사업(1137-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및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복지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본예산 7,498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7,499억 1,400만원으로, 이 중 7,49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자활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749,864	749,864	50	-	749,914	749,901 (682,991)	10	3
· 자활근로	659,462	659,462	-	-	659,462	659,462 (621,567)	-	-
· 자활센터 운영지원	90,137	90,137	-	-	90,137	90,137 (89,186)	-	-
· 자활사업관리	265	265	50	-	315	302 (302)	10	3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자활사업’ 사업은 ①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별 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③ 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자활사업관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내역사업 중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됨.

< 자활근로 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의무참여: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근로능력 있다고 판정) - 희망참여: 조건부 수급자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지원내용	-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급여 수령 -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근무여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월 소득 최대 1,610천원('24년)

< 자활근로 사업 유형별 내용(2024년 기준) >

(단위: 원)

평가결과	구 분	내 용	사업유형	자활급여/일 (실비 포함)
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집수리, 청소, 세탁, 제과제빵 사업 등	61,930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간병·가사지원서비스 등	54,200
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근로유지형	현재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	31,800

자료: 보건복지부

□ 자활사업의 참여자 수는 2021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4년 60,767명으로 전년 대비 2,134명(3.6%) 증가하였음.

- 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사회서비스형이 전체 참여자의 60.8%(36,969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진입형은 28.2%(17,131명), 근로유지형은 약 11.0%(6,667명)를 차지하고 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 수 추이 >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55,436**	**60,476**	**58,902**	**58,633**	**60,767**
시장진입형	8,291	9,398	13,401	15,723	17,131
사회서비스형	35,783	39,265	34,853	35,992	36,969
근로유지형	7,889	8,013	7,021	6,918	6,667

자료: 보건복지부

□ 다음으로, 자활사업 지원조직 예산으로 '자활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 예산은 901억 3,700만원으로, 이 중 891억 8,600만원이 실집행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개소, 광역자활센터 16개소, 지역자활센터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는 복지부 지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활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 결산 내역(지원조직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주 요 기 능	개소	2024 예산현액 (실집행액)
자활센터운영지원 (내역사업)			90,137 (89,186)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운영	○경영평가, 자활기업 성장지원 ○조사·연구·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예산 예탁 관리	1	15,114 (14,766)
광역자활센터 운영	○시도 단위 자활기업 창업지원 및 수급자 차상위자의 취업·창원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 경영지도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청년저축계좌 사례관리	16	6,788 (6,717)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저소득층에 자활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교육 업무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250	68,235 (67,703)

*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자활성공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수단을 모색하여, 자활성공율 제고 등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은 자활성공율을 사업의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자활성공율은 상승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성과 목표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의 자활성공율은 전년대비 6.1%p 하락한 18.66%로서, 저조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 취업시장의 고용 둔화 지속 등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의 취·창업 등 자립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최근 5개년 자활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활성공율 (단위 %)	목표	34.2	28.5	27.1	25.5	**24.7**	'21년~'23년 3년 평균(예상) 실적치를 고려하여 24.7.%로 설정	○ (자활 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수급 유지자 중 취·창업자 수)/(엽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및 gateway 참여 수급자 수) * 사망, 전출 제외
	실적	25.87	26.24	24.3	24.76	**18.66**		
	달성도	75.6	92.1	89.7	97.1	**75.5**		

자료: 보건복지부

□ 기본적으로, 취·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역량자(자활역량평가 85점 이상)는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우선 배치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취·창업 성공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자활사업의 특성상 민간 취업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자활성공율이 낮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20년 이후 자활사업의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율이 상승하지 못한 것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사업의 확대가 주로 단가 인상 및 참여자 확대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졌고, 수급자들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임.

< 최근 5개년도 자활사업 사업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604,774 (15.4%)	○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년) 수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탄력적 사업 운영, 유급휴가 등 실시
2021	687,887 (13.7%)	○ 코로나19 고려,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연장(2개월) 추진 ○ 자활기업 인정 및 취소요건 명확화, 공공기관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1.6.29.)
2022	696,449 (1.2%)	○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자활급여 3% 추가 인상*('22.8) * ('21년) 1.5% 인상, ('22년) 3.0% + 8월부터 추가 3.0% 인상
2023	693,573 (△0.4%)	○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자활급여 2.1% 추가 인상*('23.3) * ('22년) 3.0% + 8월부터 추가 3.0% 인상, ('23년) 3.0% + 3월부터 추가 2.1% 인상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및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년) 수립('23.10)
2024	749,864 (8.1%)	○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자활급여 2.5% 인상 ○ 자활역량평가표 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비롯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자활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26]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문자 그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일정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한 수급자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심의 지원책이며,

26) (2024회계연도 기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의 경우 **2,707억 600만원 편성**되어 2,282억 9,100만원(84.6%) 실집행됨.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사업의 경우 **192억 300만원 편성**되어 191억 3,400만원(99.6%) 실집행됨.
'자활사례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25억 7,800만원 편성**되어 24억 1,000만원(93.5%) 실집행됨.

‘자활사례관리’는 자활사례관리사를 통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참여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125명 정도의 인력이 6만명에 달하는 자활사업 참가자를 지원하고 있어 개별 참가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섬세한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부터 자활근로 후 민간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자의 의지를 확대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취·창업 자체가 힘든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결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4호[27]는 자활급여의 하나로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목표는 근로빈곤층에게 단순히 근로기회를 제공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회를 통해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침내 자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기회의 제공 외에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지원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u>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원수단을 모색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u>**

2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1137-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하여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청년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707억 600만원으로, 이 중 2,706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70,706	270,706	-	-	270,706	270,693 (229,018)	-	13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69,966	269,966	-	-	269,966	269,966 (228,291)	-	-
· 일반운영비	740	740	-	-	740	727 (727)	-	13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2021년까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5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용 변화>

기존		신규 (’22년 이후)	
희망키움통장 1	생계·의료 수급자가 3년 이내에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1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매월 일정액(10～50만원) 저축 시 월 30만원 매칭·지원(탈수급 요건 충족 시 지급)
희망키움통장 2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자가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2	주거·교육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대상 매월 일정액(월10～50만원) 저축시 가입 연차별 차등 매칭·지원* * 1년차(월10만원), 2년차(월20만원), 3년차(월30만원)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 참여자가 취·창업 또는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가구의 만15～39세 청년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9～34세 청년(차상위 이하는 만15～39세)이 매월 일정액(10～50만원) 저축 시 월10～30만원 매칭·지원* * 차상위 이하자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10만원
청년저축계좌	주거·의료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만15～39세 청년이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2024년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2,962가구, 희망저축계좌2 신규 가입자 4,466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3,484명으로 나타났음.

< 최근 5개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희망키움통장1	3,436가구	2,984가구	1,716가구	724가구	40가구
희망키움통장2	25,498가구	17,826가구	10,804가구	5,297가구	295가구
내일키움통장	7,971명	9,003명	4,725명	2,104명	331명
청년희망키움통장	4,404명	3,159명	1,965명	997명	166명
청년저축계좌	7,072명	10,530명	9,840명	4,220명	814명
희망저축계좌1	-	-	3,247가구	4,417가구	6,924가구
희망저축계좌2	-	-	5,304가구	7,276가구	12,985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	-	42,301명	75,200명	120,874명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별 모집 시기별 신규 가입자 현황 >

(단위: 가구, 명)

구분		2024년				
희망저축계좌I	모집시기	1차(3월)	2차(4월)	3차(6월)	4차(8월)	5차(10월)
	가입자 수	851	355	556	583	617
희망저축계좌II	모집시기	1차(4월)		2차(7월)		3차(10월)
	가입자 수	1,599		1,470		1,397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시기	1차(5월)				
	가입자 수	43,484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기존 통장 월별 해지자 수 >

(단위: 가구,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희망키움I	-	117	82	62	88	70	54	62	43	57	88	-	724
희망키움II				1,102	-	-	1,289	-	-	1,013	-	816	5,297
내일키움	-	305	211	174	195	158	135	169	156	181	421	-	2,104
청년 희망키움	-	105	100	85	104	91	75	124	80	96	137	-	997
청년저축	-	-	-	669	-	-	955	-	-	1,596	-	1,000	4,220

자료: 보건복지부

다) 실집행율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월별 가입 유지자 규모 및 신규 가입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8]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되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총 4차례로 나누어 전액 교부하였고, 마지막 4번째 보조금 교부시에는 총 382억 5,9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동 사업의 실집행 불용액은 416억 7,500만원임.

즉,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보조금이 교부된 후 불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보조금 교부 시기 및 교부액 >

(단위: 백만원)

연번	일시	교부액
1	2024. 1. 12.	126,884
2	2024. 4. 8.	64,328
3	2024. 7. 11.	40,495
4	2024. 10. 25.	38,259

자료: 보건복지부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월별 통장 가입 유지자 및 2024년 신규 가입자 현황을 파악한 후, 모든 가입자가 저축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이 매칭·적립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집행 예상금액을 추계하여 교부금 집행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가입자에 한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예산 집행 수준 및 연내 보조금 집행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6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입자의 지급해지 및 환수해지로 인하여 통장유지자가 예상 대비 급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 교부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약 73억 9,800만원의 불용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월별 해지자 수를 고려한 예상 불용액 추정>

구분	예상 불용액
희망키움통장1	[[117명(2월 해지자 수) x 10월(남은 지원 월 수) x 36만원(단가) + 82명(3월 해지자 수) x 9월(남은 지원 월 수) x 36만원(단가) + ••• 43명(9월 해지자 수) x 3월(남은 지원 월 수) x 36만원(단가)]] x 82.76(국고보조율) = 1,217백만원
희망키움통장2	[[1,102(4월 해지자 수) x 8월(남은 지원 월 수) x 10만원(단가) + 1,289(7월 해지자 수) x 5월(남은 지원 월 수) x 10만원(단가)]] x 82.76(국고보조율) = 1,263백만원
내일키움통장	[[305명(2월 해지자 수) x 10월(남은 지원 월 수) x 9.7만원(단가) + 211명(3월 해지자 수) x 9월(남은 지원 월 수) x 9.7만원(단가) + ••• 156명(9월 해지자 수) x 3월(남은 지원 월 수) x 9.7만원(단가)]] x 82.76(국고보조율) = 840백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05명(2월 해지자 수) x 10월(남은 지원 월 수) x 37.7만원(단가) + 100명(3월 해지자 수) x 9월(남은 지원 월 수) x 37.7만원(단가) + ••• 80명(9월 해지자 수) x 3월(남은 지원 월 수) x 37.7만원(단가)]] x 82.76(국고보조율) = 1,564백만원
청년저축계좌	[[669(4월 해지자 수) x 8월(남은 지원 월 수) x 30만원(단가) + 955(7월 해지자 수) x 5월(남은 지원 월 수) x 30만원(단가)]] x 82.76(국고보조율) = 2,514백만원
합계	7,398백만원

다음으로,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48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보조금 교부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예상 대비 신규 가입자 수가 적었음을 고려하여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1억 8,500만원의 불용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수를 고려한 예상 불용액 추정>

(단위: 가구, 명, 백만원)

구분	예상	실제	가입자 추정치	예상 불용액
희망저축계좌1	3,205	2,962	2,931	408
희망저축계좌2	5,451	4,466	4,603	350
청년내일저축계좌	44,000	43,484	43,484	427
합계				1,185

* 가입자 추정치는 9월말까지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평균적인 가입자 규모를 예측한 결과임.
** 예상 불용액은 (예상 가입자 수 - 가입자 추정치) x 단가 x 6월(5월)로 계산하여 국고보조율(82.76%)를 곱한 결과임.

□ 결국, 가입자 및 해지자 수를 토대로 한 단순 계산으로 약 85억 8,3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교부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해지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에 최종적으로 예산 불용이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집행 단계에서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월별 가입 유지자 규모 및 신규 가입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2631-32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에 따른 손해(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적 유지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의 50%(1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800	2,800	-	-	2,800	2,800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800	2,800	-	-	2,800	2,800	-	-

나)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2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을 민간경상보조하는 사업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법인으로, 2024년 말 기준 자산 규모 5천억원, 정회원 5만 2천명을 달성하였음.

<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 >

상품명		내용	가입규모 (24년기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사업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국고 50% 지원)	-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50% 1만 원 정부지원, 1만 원 시설부담	약 280,000명
	일반단체상해공제 (자부담 100%)	- 국고보조사업 조기마감에 따른 대체상품 -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전액 시설자부담	약 10,300명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수의 회원들이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저축과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회원 및 사용자의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가 공공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30]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①회원의 부담금, ②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③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④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여야 함.

그런데, 동 사업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의 하나이므로 그 재원 역시 위의 네 가지 재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를 받아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법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와 지방자치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단체의 지원을 일종의 ‘수입’으로 보아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법 제7조제4호 제정 당시 논의 내용 >

제18대 국회 제294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2010.11.29.

○박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싶어도 못……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주고 싶으면,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4호가 있습니다. ‘그 밖의 수입금’ 항목으로 일단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상진 그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같은 것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예, 기타 여러 가지 수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소위원장 신상진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예, 지원받는 돈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넣어 주기는 곤란하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구할 수는 없으나 들어오는 돈을 수납할 수는 있다.**

○박은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겨 놓읍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4호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는 있다. 좋습니다.

(중략)

○소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폐지하는 게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아니고 4호에 들어간다는 얘기……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4호로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신상진 어쨌든 간에 출연금은 못 내게 하는 거잖아?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출연금 형태로……

○소위원장 신상진 운영비 지원은 된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출연금 형태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신상진 공제회 회비를 걷어서 만든 그런 기금 이런 것은 못 한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예, 기본재산으로 해라……

□ 또한,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제회의 재정 및 자본금에 정부의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유사입법례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지급할 수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 결국, 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31]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3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개인의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동 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복지행정지원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2,965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2,986억 800만원임.

이 중 2,96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296,521	296,521	298,608	296,723	621	1,264
<일반회계>	107,595	107,595	109,676	108,121	556	999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4,712	4,712	5,911	4,450	556	905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66	3,366	4,320	4,244	-	76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64,960	64,960	64,796	64,796	-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31,482	31,482	31,482	31,482 (29,985)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2,862	2,862	2,898	2,885 (2,097)	-	13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80	80	74	73	-	1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133	133	195	191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8,926	188,926	188,932	188,602	65	26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65,029	165,029	165,035	164,705	65	265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	23,429	23,429	23,429	23,429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제주)	297	297	297	297 (295)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세종)	171	171	171	171 (170)	-	-

2) 이·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사업에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에 필요한 부족분을 위하여 1억 6,400만원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용(감)하였고,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직책수행경비에서 특근매식비로 1,000만원 전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 사유
계	10 △174	
일반회계	10 △174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2640-304)	△164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관련 일반연구비 예산 마련 지원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74)	10 △10	○ 직책수행경비 대상자가 예상 편성시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직책수행경비 집행잔액을 특근매식비로 전용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및 소송 관련 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5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6,500만원을 이월하여,

총 6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 사유
계	621	
<일반회계>	55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40-300)	556	○ 정보화사업 및 소송 관련 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① 「'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177백만원)은 전년도 서비스 확대 사업 종료 일정('23.9.6.~'24.4.3.)에 따른 사업 착수 순연('24.9.~'25.4.)으로 계약기간 미도래(계약금 589백만원 중 잔금 176.7백만원 이월) ② 「'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감리」(55백만원)는 본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기간('24.11.~'25.4.) 미도래(계약금 74백만원 중 잔금 55.3백만원 이월) ③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소송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건향후 소송 일정에 따라 이월(324백만원) - 행정소송 대리 계약 3건('24.5~위임사무 종료시) 계약기간 미도래(59백만원)로 이월 - 민사소송 대리 계약('24.12~위임사무 종료시) 계약기간 미도래(232백만원)로 이월 - 법률자문 용역('24.6~'24.12) 잔금 집행(33백만원) 등 행정처리를 위한 이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65	○ 연구용역 계약기간('24.11월~'25.7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①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분석 연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24.7월), 입양체계 개편('25.7월) 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업무량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② 제도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구착수를 진행하되 내실있는 연구추진을 위해 이월하여 연구 추진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일부 과업 미추진에 따른 7억 5,360만원 불용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사업관리 집행잔액으로 7,600만원 불용 등 총 9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서 국고보조율 차이로 인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인건비 일부(1억 9,000만원)를 미교부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5,500만원 미집행 등 총 2억 6,500만원을 불용하여,

총 12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 사유
계	1,264	
<일반회계>	99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00)	905	① 「'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 낙찰차액(104백만원) 및 「'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 감리」 낙찰 차액(18.5백만원)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 과업 중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일부 과업 미추진, 이에 따른 사업예산(682백만원)과 감리(71.6백만원) 예산 미집행 * (여가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③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법률 자문, 소송대리인 선임 등 계약 낙찰차액(10백만원) 및 '24년 복지로 홍보 용역 낙찰차액(2.8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 사유
		④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관리 예산 집행잔액(16.3백만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12)	76	① 정보화 용역사업 낙찰차액(54백만원) - (일반연구비) '23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전년이월) ② 사업관리 집행잔액(22백만원) - (일반수용비) 사회서비스 공통지침 제작·배포, 기관방문, 만족도 조사 등 집행잔액(18백만원) - (임차료) 잔여과업 재추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간담회 등의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집행잔액(4백만원)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2639-302)	13	○ 일반연구비 낙찰차액(11백만원) 등 집행 잔액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01)	1	○ 집행잔액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1	○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265	① (의료급여관리사) 지역간 정원 조정시 국고보조율 차이(서울 50%, 그 외 지역 80%)로 인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인건비 일부 미교부(190백만원) ②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미집행(55백만원) 및 방문건강관리, 드림스타트 등 사업운영경비 집행잔액(20백만원)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2640-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유지관리·운영관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4억 8,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1,482	31,482	-	-	31,482	31,482 (29,985)	-	-
· 시스템 기능개선	3,401	3,401	-	-	3,401	3,401 (3,350)	-	-
· 시스템 유지관리	24,523	24,523	-	-	24,523	24,523 (23,089)	-	-
· 시스템 운영관리	3,558	3,558		-	3,558	3,558 (3,546)	-	-

나)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교부 주의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실집행 불용액을 살펴보면, ‘시스템 기능개선’은 5,100만원, ‘시스템 운영관리’는 1,200만원,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는 14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사업은 집행잔액 6,400만원과 낙찰차액 2,400만원, 유지관리 업체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인력이탈에 따른 지급액 조정 2억 1,400만원, 그리고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 과업 축소로 인한 10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사업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용역 계약을 체결한 LG CNS 컨소시엄 측이 3차 및 4차 개통을 완료하지 않고 수익성을 사유로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23년 12월 조달청은 전체 사업계약(1~3차연도) 중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2차·3차 연도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음.

□ 2024회계연도 예산은 2023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3년 12월 28일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불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불용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57억 4,100만원(1월 18일), 78억 7,050만원(4월 24일), 78억 7,050만원(7월 24일)을 사회보장정보원에 교부하여, 편성된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음.

< 보조금 교부 시기 및 교부액 >

(단위: 백만원)

연번	일시	교부액
1	2024. 1. 18.	15,741
2	2024. 4. 24.	7,870
3	2024. 7. 24.	7,870

자료: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더라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업 보조금 교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자활·아동·보건 등 분야별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단위 공공부문 사례관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 교육훈련 등의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1,650억 2,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한 1,650억 3,500만원으로, 이 중 1,64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65,029	165,029	6	1 △1	165,035	164,705 (154,802)	65	265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992	992	-	-	992	992 (945)	-	-
사회복지 교육훈련	462	462	-	-	462	462 (462)	-	-
통합사례관리	18,643	18,643	-	-	18,643	18,642 (17,582)	-	1
자활사례관리	2,578	2,578	-	-	2,578	2,578 (2,410)	-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4,686	54,686	-	1 △1	54,686	54,682 (51,873)	-	4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21,047	21,047	6	-	21,053	20,933 (17,588)	-	55
의료급여관리사	19,536	19,536	-	-	19,536	19,346 (17,939)	-	190
방문건강관리	47,085	47,085	-	-	47,085	47,070 (46,003)	-	15

□ 사례관리사란 복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원연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동 사업은 사례관리사 배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 예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수행 인력의 인건비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실시, 자활프로그램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자활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0~12세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 실시, 보호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의료급여관리사’ 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 및 건강습관 등을 관리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에 방문하여 건강행태개선 및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의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제고하는 사업임.

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불용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650억 3,500만원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여 비교적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내역사업별 실집행 불용액을 살펴보면, '통합사례관리' 사업 10억 6,000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28억 900만원,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 33억 4,500만원 등 총 99억 300만원에 달하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적정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탓에 발생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으로 보임.

< 내역사업별 실집행률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	불용액(A-B)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992	992	945 (95.3)	47
사회복지 교육훈련	462	462	462 (100)	0
통합사례관리	18,643	18,642	17,582 (94.3)	1,060
자활사례관리	2,578	2,578	2,410 (93.5)	168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54,686	54,682	51,873 (94.9)	2,809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21,047	20,933	17,588 (83.6)	3,345
의료급여관리사	19,536	19,346	17,939 (91.8)	1,407
방문건강관리	47,085	47,070	46,003 (97.7)	1,067
합계	**165,029**	**164,705**	**154,802 (93.8)**	**9,903**

자료: 보건복지부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편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와 별개로 편성된 예산을 적절히 교부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3]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총 546억 4,220만원을 10차례에 나누어 전액 교부하였고 불용액은 28억 900만원으로 약 95%의 실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마지막 10차 교부 시 교부된 금액은 21억 4,807만원으로 불용액보다 적은 수준임.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현황 조사를 통해 시·도별 불용예상액 및 추가소요 현황을 파악하고 변경내시를 통보(24.6월)하였으나, 시·도에서 제출한 집행계획보다 집행이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입장인데,

기존인력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은 채용 현황 등을 기반으로 비교적 예측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적확한 판단이 있었다면 마지막 10차는 교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교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3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시·도는 소관 시·군·구의 집행관리 및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금 교부 내역 >

(단위: 천원)

교부시기	1차(1월)	2차(3월)	3차(4월)	4차(5월)	5차(6월)	6차(7월)
교부액	21,838,630	4,842,264	2,404,164	1,487,911	4,000,000	5,000,000
교부시기	7차(8월)	8차(9월)	9차(10월)	10차(11월)		합계
교부액	4,080,000	5,183,000	3,658,157	2,148,074		**54,642,200**

자료: 보건복지부

□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총 207억 166만원을 5차례에 나누어 교부하여 편성된 예산 중 5,0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교부하였고, 마지막 5차 교부 시에는 41억 206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최종적인 불용액은 33억 4,500만원이었음.

동 내역사업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현황을 고려하여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교부된 금액의 80%가 넘는 금액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결국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체계 내 신규 도입되는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조정된 시·군·구의 사업량을 파악하여 변경내시 통보('24년 8월) 등을 통해 집행률이 전년 대비 1.8%p 상승하였으나, 시·도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시도 차원에서도 인력채용을 통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보조금 교부 내역 >

(단위: 천원)

교부시기	**1차**(1월)	**2차**(2월)	**3차**(3월)	**4차**(6월)
교부액	1,729,750	2,461,000	6,187,750	6,221,100
교부시기	**5차**(10월)	**5차**(10월)		**합계**
교부액	3,901,218 (대구시 제외)	200,842 (대구시)		**20,701,660**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국고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시·도 집행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연금정책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1) 개요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기초연금지급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0조 2,540억 8,5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17억 4,000만원)과 이용(2,013억 2,600만원 감), 전용(9,400만원 증, 12억 6,200만원 감), 세목조정(2,900만원 증·감) 및 내역변경(4,700만원 증, 3,600만원 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총 20조 533억 4,300만원으로,

이 중 19조 6,620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000만원이 이월되었고, 3,91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20,254,085	1,740	170 △202,653	20,053,343	19,662,086	80	391,178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2008-206)	39,947	-	-	39,947	39,947	-	-
연금정책사업관리 (2008-306)	1,275	-	73 △73	1,275	1,081	-	194
기초연금지급 (2131-300)	20,201,456	35	△202,486	19,999,005	19,608,485	80	390,441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76	-	16 △4	89	88	-	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217	-	81 △90	208	204	-	4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주 (7042-300)	-	1,705	-	1,705	1,167	-	538
국민연금기금 전출 (국민연금공단관리 운영비)(8420-841)	10,000	-	-	10,000	10,000	-	-
국민연금기금 전출 (출산크레딧급여) (8420-842)	1,114	-	-	1,114	1,114	-	-

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7042-300)은 2024회계연도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협력 관리(7035-300)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폐합되었음

2) 이·전용 현황

가) 이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2,013억 2,600만원이 이용 감액되었음.

-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이용 감액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사업에 1,986억 9,600만원,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 운영(3035-300) 사업에 24억원, 국제협력관리(7035-300) 사업에 2억 3,000만원이 각각 이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용 사유
계	△201,326	
기초연금지급 (2131-300)	△201,326	○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 (△198,696)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2,400) ○ 엘리엇 ISDS 후속조치 관련 법률비용 지급 부족분(△230)

나) 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9,400만원이 전용 증액되고, 총 12억 6,2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음.

-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노인단체 지원(2133-301) 사업에 경로당 부식비·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11억 6,0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총액·비총액)에서 기관운영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하여 3,400만원이 전용 증액되고, 4,2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음.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사유
계	94 △1,262	
연금정책 사업관리 (2008-306)	60 △60	○ 연금제도 인식조사 정책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 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전용
기초연금지급 (2131-300)	△1,160	○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및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1,160)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부족분 확보(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33 △42	○ 연금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금개혁 선행사례 확인 및 연금개혁 도출 논의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33, △18) ○ 국제협력관 국제회의 참석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24)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서 기초연금지급 사업의 일반연구비 8,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사유
계	80	
기초연금 지급 (2131-300)	80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연구 일정에 따라 일반연구비 이월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3,904억 4,100만원이 불용되고, 연금정책사업관리에서 홍보용역 낙찰차액 등 1억 9,4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3,91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391,178	
연금정책사업관리 (2008-306)	194	○ 홍보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기초연금지급 (2131-300)	390,441	○ 국민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연계감액자 증가 등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 집행잔액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4	○ 집행잔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538	○ 소송 진행단계 등에 따른 소송비용 미집행 (이월된 예산으로 재이월 불가)

나.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1) 수입 결산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등 총 17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회계연도 계획액은 166조 7,458억 6,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15조 5,183억 8,2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의 수납액이 계획액에 비하여 크게 초과 달성된 것은 채권·주식·대체투자에서 직접 실현된 이익으로서 '이자 및 재산수입'이 약 15조원 초과 수납되었고, 투자 이익 실현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매각대'가 약 34조원 초과 수납된 것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A)	수납액(B)
계	166,745,869	215,518,382
□ 자체수입	87,897,895	103,594,178
○ 사회보장기여금	61,276,922	61,739,205
- 고용주부담금(38-381)	26,678,994	26,971,928
- 피고용자분담금(38-382)	34,597,928	34,767,277
○ 이자 및 재산수입	26,528,075	41,755,413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54-542)	178	198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5,004	5,143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6,522,893	41,750,072
○ 잡수입	44,609	54,395
- 기타잡수입(69-691)	7,690	8,784
- 기타영업외잡수입(69-697)	36,919	45,611
○ 융자원금회수	48,289	45,165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A)	수납액(B)
-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75-752)	251	266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48,038	44,898
□ 정부내부수입	11,114	11,114
○ 전입금	11,114	11,114
- 일반회계전입금(91-911)	11,114	11,114
□ 여유자금회수	78,836,860	111,913,091
○ 유가증권매각대	58,560,789	93,077,077
- 지방채매각대(84-842)	1,958,301	2,024,473
-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843)	41,048,738	68,850,400
- 국채매각대(84-844)	15,353,750	22,132,475
- 공채매각대(84-845)	200,000	69,729
○ 정부예금회수	20,276,071	18,836,014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	2,176,071	2,478,35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3)	18,100,000	16,357,266
- 기타민간예치금회수(85-854)	-	393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국민연금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연금급여의 지급에 관련된 제비용 집행분을 제외한 자금은 적립되는데,[34)]

2024년도 기금 운용 수익금은 약 160조원으로 그 수익률은 15.32%로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총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 1,212조 8,512억 9,300만원임.

34)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2) 지출 결산

가) 개요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은 여유자금운용 부문(5개 세부사업)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급여지급 등 총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44조 2,907억 5,600만원인데, 급여지급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계획액은 44조 7,517억 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79억 5,3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44조 7,596억 5,800만원) 중 44조 5,918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9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18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참고로, 여유자금운용 부문의 경우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121조 9,941억 6,400만원인데, 기금운용수익 증가에 따라 초과지출이 발생하여 총 170조 9,265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 현황(여유자금운용 제외)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44,290,756	44,751,705	7,953	44,759,658	44,591,815	15,985	151,857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867	897	37	934	886	37	11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437,771	437,771	-	437,771	423,233	-	14,538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04,098	104,068	51	104,119	102,395	135	1,589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25,113	25,113	-	25,113	22,994	-	2,119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6,278	6,278	467	6,745	1,993	4,409	343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27,778	27,041	-	27,041	25,387	1,395	258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 (7431-456)	-	-	45	45	45	-	-
기금운용직 단기숙소 지원 (7431-457)	815	815	-	815	815	-	-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52,998	53,172	7,286	60,458	51,972	8,381	105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622	1,622	7	1,629	1,595	-	34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7432-441)	34,582	33,382	-	33,382	32,854	-	528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2,227	2,227	60	2,287	2,205	-	82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49,421	46,971	-	46,971	45,755	-	1,216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	573	573	-	573	551	-	22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7432-449)	1,280	1,280	-	1,280	1,036	-	244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	16,436	16,436	-	16,436	15,425	-	1,011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	7,320	7,320	-	7,320	7,116	-	204
복지타운 운영사업비 (7433-424)	13,278	13,278	-	13,278	11,157	1,628	49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7433-425)	42,183	46,396	-	46,396	46,396	-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7478-601)	93,180	93,180	-	93,180	93,180	-	-
국민연금급여지급 (7631-401)	43,372,936	43,833,885	-	43,833,885	43,704,825	-	129,060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운용 부문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22,455,113	121,994,164	-	121,994,164	170,926,566	-	-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9720-972)	2,176,071	1,715,122	-	1,715,122	3,705,509	-	-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9720-974)	21,646,501	21,646,501	-	21,646,501	26,552,843	-	-
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9720-976)	31,272,541	31,272,541	-	31,272,541	87,670,512	-	-
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9720-977)	37,200,000	37,200,000	-	37,200,000	22,018,124	-	-
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9720-978)	30,160,000	30,160,000	-	30,160,000	30,979,578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에서 당초 계획 대비 급여액 지출규모가 확대된 데 따라 4,60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에서 대출 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42억 1,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4개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변경액	변경사유
계	△471,676 471,676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118 148	○ 국내투자 적정 비중 및 중장기 투자전략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일반연구비로 비목 변경 ○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현안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출장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일반수용비 예산 확보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3,104 3,074	○ 기금운용직 채용규모 확대 등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 인재개발원 효율적 운영 방안 관련 전문가 컨설팅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일반연구비로 비목 변경 ○ 정부 정책에 따라 청년인턴 운영 규모 확대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 임차사무실 관련 지출 급증에 따른 임차료 추가 확보 ○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현안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예산 확보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33 33	○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및 사용자 교육 등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확보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413 413	○ 인재개발원 부지 매입대금 지급 관련 추가 예산 확보 ○ 인재개발원 신축사업의 토지 매입 부대경비 증가 관련 예산 확보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1,094 357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904 1,078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통합시험 및 현장설명회 등 증가로 국내여비 예산 확보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일정 순연에 따른 추가 출장 관련 예산 확보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15 115	○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전담인력 국내여비 추가 확보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7432-441)	△1,200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사 업 명	변경액	변경사유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121 121	○ NPS포럼 통합운영 예산 확보 ○ 제5차 종합운영계획 개혁 과제 관련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 국내여비 예산 확보 ○ 제5차 종합운영계획 관련 후속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 추가 확보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3,613 1,163	○ 샌프란시스코 해외사무소 신규 설립 관련 현지 단가상승 등 반영 ○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적극적 투자활동에 따른 운용사 미팅 및 컨퍼런스 등 각종 대외활동 활성화 관련 국내여비 예산 확보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 적극적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추가 확보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	△12 12	○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협회비 상승 반영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7433-425)	4,213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증가로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국민연금급여지급 (7631-401)	460,949	○ 당초 계획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연금액이 인상된 데 따른 급여 지급 부족 예산 확보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9720-972)	△460,949	○ 당초 계획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연금액이 인상된 데 따른 급여 지급 부족 예산 확보

다)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주요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 등에 따라 사업 완료 시기가 당초의 2024년 말에서 2025년 5월 초로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사업에서 83억 8,100만원이 이월되고,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44억 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159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사유
계	15,985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37	○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과업을 수행*하므로 선급금(146백만원) 지급 후 잔액 이월 * 국민연금기금 외부회계감사 용역('24.7.~'25.6.)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35	○ 기금운용직 채용 대행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기금운용직 채용 대행 용역 계약기간: '24.6월부터 총 4회 채용 완료 시까지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4,409	○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으로 사업기간이 순연되어 2025년 3월 착공 이후 원활한 공사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공사비 집행잔액(4,390백만원)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19백만원) 이월 * 착공시기 순연: '24.8월⇒'25.3월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1,395	○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시기 변경 * 완료시기 변경: '24.12월⇒'25.7월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8,381	○ 차세대 정보시스템 SW 추가 개발 등에 따른 완료 시기 변경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24년말⇒'25.5월
복지타운 운영사업비 (7433-424)	1,628	○ 오수처리장 개량공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동절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사업 일정 추진 * 공사 계약: '24.10월 ~ '25.4월

라)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주요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사업에서 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 B등급 판정에 따른 성과급 잔액 등 145억 3,800만원이 불용되고,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 편성 대비 수급자 수 및 1인당 월평균급여액이 감소하여 1,290억 6,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1,518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151,857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11	○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14,538	○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산운용성과급 집행잔액(3,420) * (편성) A등급 → (집행) B등급 ○ 정현원차 급여잔액(11,117)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589	○ 공무직 및 청년인턴 정현원차 등에 따른 집행잔액(757) ○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832)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2.119	○ 통합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장비 해지 및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무상유지보수기간 해당 등 집행잔액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34	○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순연에 따른 감리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 집행잔액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259	○ 신축사옥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취득세 환급 및 계획 대비 노후설비 교체공사 감소 등 집행잔액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105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시기 변경('24년말⇒'25년) 및 4대 사회보험 연계 서버 노후장비 교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34	○ 노후준비상담사 자격시험장 직접 섭외에 따른 외부대행비용 절감 등 집행잔액

<table>
<tr><th>사 업 명</th><th>금액</th><th>불용사유</th></tr>
<tr><td>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7432-441)</td><td>528</td><td>○ 지원 인원* 및 납부율 감소에 따른 기타보전금 집행잔액 및 모바일 고지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 지원인원: 추계 605천명 → 실제 564천명</td></tr>
<tr><td>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td><td>82</td><td>○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등 연구조사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td></tr>
<tr><td>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td><td>1,216</td><td>○ 해외사무소 현지채용 직원 정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등</td></tr>
<tr><td>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td><td>22</td><td>○ 세르비아 등 신규 협정 실무회담 연기에 따른 집행잔액 등</td></tr>
<tr><td>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7432-449)</td><td>244</td><td>○ 민간전문가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td></tr>
<tr><td>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td><td>1,011</td><td>○ 모바일 통지 확대로 우편물 제작 및 발송 비용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td></tr>
<tr><td>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td><td>204</td><td>○ 전자문서를 활용한 안내문 발송 비용 절감 및 전문위원(자문의사) 채용 연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td></tr>
<tr><td>복지타운 운영사업비
(7433-424)</td><td>493</td><td>○ 오수처리장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제천시 지원금 활용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td></tr>
<tr><td>국민연금 급여지급
(7631-401)</td><td>129,060</td><td>○ 편성 대비 수급자 수 감소 및 1인당 월평균급여액 감소에 따른 불용 발생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편 성</th><th>집 행</th></tr>
<tr><td rowspan="3">수급자</td><td>장애연금</td><td>81,247명</td><td>79,525명</td></tr>
<tr><td>유족연금</td><td>1,067,162명</td><td>1,063,301명</td></tr>
<tr><td>반환일시금</td><td>219,204명</td><td>214,122명</td></tr>
<tr><td colspan="2">월평균급여액
(노령연금)</td><td>536,070원</td><td>529,602원</td></tr>
</table>
</td></tr>
</table>

다.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기초연금지급(21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초연금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20조 2,014억 5,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3,500만원)과 이용(감)(△2,013억 2,600만원) 및 전용(감)(△11억 6,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9조 9,990억 500만원 중 19조 6,084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04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기초연금지급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초연금지급 (2131-300)	20,201,456	20,201,456	35	△202,486	19,999,005	19,608,485	80	390,441
· 기초연금급여	20,178,925	20,178,925	-	△202,256	19,976,669	19,586,669	-	390,000
· 제도운영비	22,531	22,531	35	△230	22,336	21,816	80	441

나) 기초연금급여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 제고 필요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부부감액을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비율의 최신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대규모 불용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과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35] **당해연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여 매년 1월 중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2025년 현재 342,510원),[36]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현재 513,760원)를 초과하면 기준연금액 일부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37]’, 부

35)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6)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5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만2천5백1십원으로 한다.

37)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38]',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를 감액하는 '**소득역전 방지감액**[39]'이 적용됨.

---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38)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9)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토대로 하여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여왔는데, 여기에는 기준연금액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의 적용을 받는 수급권자의 비율 등이 반영되고 있음.

<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산식 >

○ **기초연금급여** = $N \times [(1-\alpha) \times \{P_{n-1} \times (1+\pi_{n-1})\} + \alpha \times \{P_{n-1} \times (1+\pi_{n-1})\} \times (1-\gamma)]$
$\times [(1-\beta) + \beta \times 80\%] \times$ 국고보조율(평균) $\times$ 집행계수 $\times$ 12개월
+ 재정열악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 N: 수급자, α: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 적용 수급권자 비율,
β: 부부감액 적용 수급권자 비율, γ: 평균 감액비율, P_{n-1}: 전년도의 기준연금액,
π_{n-1}: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9월 당시 정부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3.3%로 예측하여 2024년도 기준연금액이 2023년도 기준연금액(323,180원)에 10,660원(=323,180원×3.3%)을 더한 333,84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통계청이 2023년 12월 말 공표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실제 관측치는 3.6%이었고, 2024년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323,180원×103.6%)으로 결정·고시되어 2024년도 기준연금액 단가가 예산 대비 970원 인상되어 예산액이 부족하였어야 할 상황이었음.

□ 그러나, 오히려 예산액(20조 1,789억 2,500만원)의 약 96.6%만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6,913억 5,100만원은 불용(4,890억 9,500만원)되거

나 다른 세부사업으로 이·전용(감)(2,022억 5,600만원)된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π_{n-1}) 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비율이나 부부감액 비율 등 예산안 편성 시 개별 변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30만원으로 인상한 2021년[40]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망치가 실제 관측치보다 더 낮아 예산액이 부족하였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매년 불용이나 이·전용(감)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예산액이 계속 과다편성되었다고 할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기준연금액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연금액		
	전망치	관측치	편성(A)	실제(B)	오차(B-A)
2022년	0.5	2.5	301,500	307,500	6,000
2023년	4.7	5.1	321,950	323,180	1,230
2024년	3.3	3.6	333,840	334,810	970

자료: 보건복지부·통계청

40)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최근 3년간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용·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교부액)	불용액	실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2 결산	16,091,685	16,267,158	13,261 △119,739	92,859	16,253,539	16,253,539	-	16,148,692	104,847
'23 결산	18,507,787	18,507,787	△9,752	-	18,498,035	18,167,787	330,248	18,057,728	110,059
'24 결산	20,178,925	20,178,925	△202,256	-	19,976,669	19,586,669	390,000	19,487,574	99,095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3년간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불용 및 이·전용(감)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		이·전용(감)	
	보건복지부	지자체(실집행잔액)	금액	사유
'22 결산	-	104,847	△3,568	○ 엘리엇·메이슨 관련 중재절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위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세부사업으로의 이용(감)
			△116,171	○ 코로나19 대응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부족분 등 충당을 위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으로의 이용(감)
'23 결산	330,248	110,059	△1,135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부담 등을 위한 **노인단체 지원** 세부사업으로의 전용(감)
			△8,637	○ 아동수당 부족분 부담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세부사업으로의 이용(감)
'24 결산	390,000	99,095	△198,696	○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으로의 이용(감)
			△2,400	○ 공공요금 부족분 부담을 위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세부사업으로의 이용(감)
			△1,160	○ 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및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부담을 위한 **노인단체 지원** 세부사업으로의 전용(감)

자료: 보건복지부

□ 예컨대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 비율**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로 매년 7%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5%를 적용하여오다가,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야 이를 8%로 상향·적용하였는데, 2019년 이후로는 매년 10% 이상인 점에서 **새로 수정된 8%가 최신의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부감액 비율은 2019년 이후로 매년 40%를 초과하여 꾸준히 증가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마다 40%를 적용하여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연계감액·부부감액 비율: 편성 vs. 실제 >

(단위: %)

구 분		'19	'20	'21	'22	'23	'24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 방지감액 비율(α)	편성	5.0	5.0	5.0	5.0	5.0	8.0
	실제	**12.3**	**13.0**	**9.1**	**10.0**	**10.7**	**12.7**
부부감액 비율(β)	편성	40.0	40.0	40.0	40.0	40.0	40.0
	실제	**41.7**	**42.2**	**42.8**	**43.1**	**43.4**	**43.8**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 정부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21조 7,912억 2,000만원)은 정부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2.6%로 전

망한 데 따른 것인데, 실제 관측치는 2.3%로 공표되어 2025년도 기준연금액이 당초 예상금액(343,510원)보다 1,000원 낮아진 342,510원으로 확정·고시된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926억 6,200만원(1.8%)이 감액된 21조 3,985억 5,800만원으로 조정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법정지출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증)하거나 예비비 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불가피하게 되어 원활한 예산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변수의 최근 추세 및 활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다면 보다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활용할 수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 비율의 산술평균값(10.7%)과 부부감액 비율의 산술평균값(42.7%)을 적용하면, 정부가 전망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3%), 국고보조율(82.81%) 및 집행계수(96.9%) 등을 모두 같게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19조 8,660억 6,300만원)과 2024회계연도 실집행액(19조 4,875억 7,400만원) 간 차액(3,784억 8,900만원)은 2024회계연도 예산액(20조 1,789억

2,500만원)과 실집행액 간 차액(6,913억 5,1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바, 불용이나 이·전용(감)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낮출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연계감액 비율 및 부부감액 비율의 최신 추이 반영 예시 >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 방법
2024 본예산	7,005천명 × (0.92 × 333,840원 + 0.08 × 216,996원) × (0.6 + 0.4 × 0.8) × 0.8281(평균 국가부담비율) × 0.969(집행계수) × 12개월 + 39,387백만원(재정 열악 지자체) = 20,178,925백만원 **(오차)** '24본예산(20,178,925백만원) - 실집행액(19,487,574백만원) **= 691,351백만원**
2024 조정안 (최근 3년간 평균값 반영)	7,005천명 × (0.893 × 333,840원 + 0.107 × 216,996원) × (0.573 + 0.427 × 0.8) × 0.8281(평균 국가부담비율) × 0.969(집행계수) × 12개월 + 39,387백만원(재정 열악 지자체) = 19,866,063백만원 **(오차)** '24조정안(19,866,063백만원) - 실집행액(19,487,574백만원) **= 378,489백만원 (→ '24본예산 대비 약 54.7%)**
실제 물가상승률 추가 반영 (3.3 → 3.6%)	7,005천명 × (0.893 × 334,810원 + 0.107 × 217,627원) × (0.573 + 0.427 × 0.8) × 0.8281(평균 국가부담비율) × 0.969(집행계수) × 12개월 + 39,387백만원(재정 열악 지자체) = 19,923,674백만원 **(오차)** '24물가반영조정안(19,923,674백만원) - 실집행액(19,487,574백만원) **= 436,100백만원 (→ '24본예산 대비 약 63.1%)**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비율이나 부부감액 비율 등 각 변수의 최근 추세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의 예산이 마치 정부의 여유 재원인 것처럼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불용에 따른 비효율과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은 국가가 「국민연금법」 제87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41] 2024회계연도 예산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8420-841)	10,000	10,000	-	-	10,000	10,000	-	-

41)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상적 관리 비용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는 국민연금공단 인건비(7378-605), 기타경비(7378-607) 및 정보화 운영비(7378-614) 등 3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합산하여 산출됨.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당초 계획액은 5,669억 8,200만원인데, 계획변경을 통하여 5,669억 5,2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전년도 이월액(5,1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5,670억 3,300만원 중 5,486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2억 4,600만원이 불용됨.

< 2024회계연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3개 세부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566,982	566,952	51	567,033	548,622	135	18,246	584,490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	437,771	437,771	-	437,771	423,233	-	14,538	448,790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104,098	104,068	51	104,119	102,395	135	1,589	104,098
공단관리운영 정보화 운영비(7378-614)	25,113	25,113	-	25,113	22,994	-	2,119	31,602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1992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으로 수립하되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왔는데,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38~66.7%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2009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율이 5%로 급감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100억원(정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지원율은 3%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지출액) 기준 지원율은 약 1.82%임.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지출액) 및 일반회계 지원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20결산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결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A)	517,804	526,571	536,285	543,811	548,622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387,894	405,326	412,260	419,981	423,233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07,572	97,804	99,981	101,051	102,395
공단관리운영 정보화운영비 (7378-614)	22,338	23,441	24,044	22,779	22,994
일반회계 전입금 (B)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일반회계 지원율 (B/A)	1.93	1.90	1.86	1.84	1.82

자료: 보건복지부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요건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전국민 의무가입'이 원칙인 국민연금제도는 수익자 부담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시에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부담률 상향 관련 국회 지적사항 >

○ **('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확대 필요(제도개선 요구)
○ **('24년도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률을 10% 수준으로 확대 필요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및 예·결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2071년경(연평균 기금운용수익률 5.5% 가정)으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어주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재원인 연금보험료 수입의 증대가 제한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여 지출의 급증을 야기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국가재정법」 제28조[42]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5.7%가량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전망: 2026～2030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632,105	669,723	709,729	752,373	789,580	5.7

자료: 보건복지부

42)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3)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1,040억 9,800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5차례의 계획변경(30억 7,400만원 증, 31억 400만원 감)과 전년도 이월액(5,100만원)을 반영한 계획현액은 1,041억 1,900만원이고, 이 중 1,023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104,098	104,068	51	104,119	102,395	135	1,589

나) 적정 규모 임차료 지출계획 수립으로 계획변경 최소화 필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의 최신 추이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비목 지출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1항[4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포함한 대민(對民) 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2025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2개소의 지사(종합·상담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 중 지사 101개소(90.2%)와 차세대정보화추진단(2개소) 및 연금개혁집중지원단(1개소) 등 총 104개소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월임차료는 각각 공단관리운영기타경비 중 무형자산(440목)과 임차료(210-07목) 비목으로 반영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당초 지출계획에는 무형자산 및 임차료 비목으로 각각 9억 8,400만원과 130억 3,300만원이 수립되었으나, 전년 대비 급증한 임차료 지출 등을 반영한 지출계획 변경으로 계획현액은 각각 6억 8,000만원(3억 400만원 감)과 143억 7,300만원(13억 4,000만원 증)으로 수정되었음.

---

43)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2024회계연도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사업 무형자산·임차료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무형자산(440목)	984	680	-	680	680	-	-
· 임차료(210-07목)	13,033	14,373	-	14,373	14,362	-	11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월세 비율 증가와 임차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임차료를 인상하려는 임대인의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임차보증금(무형자산) 계획액을 감액·수정하는 대신 임차료 세목의 계획액을 증액·수정하는 지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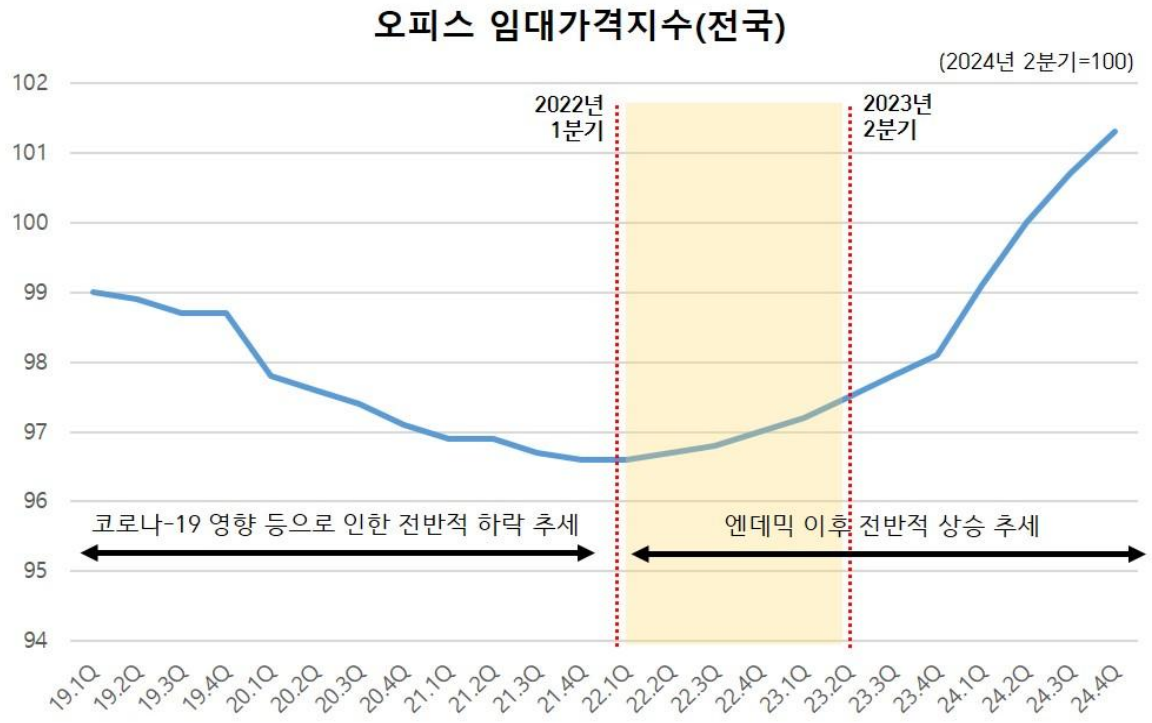
□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이 매 분기 발표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19~2021년에는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으나, 2022년 1분기 이후로는 빠르게 회복되어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전국)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상승 추세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상승세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3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2023년 7월 발표되어 2024년도 지출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전국)가 상승 전환한 2022년 1분기(96.6)부터 2023년 2분기(97.5)까지의 증가율(0.93%)은 서울특별

시(1.37%), 인천광역시(0.10%) 및 경기도(0.83%) 등 수도권 증가율에 기인함.

<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전국) 추이: 2019~2024 >



자료: 한국부동산원

< 2024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지사 현황 및 지역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

(단위: 개소, %)

구분	계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서울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지사	57	10	16	1	3	2	3	7	1	3	4	3	2	1	1
(비율)	(100)	(45.6)		(15.8)				(31.6)					(7.0)		
임대가격지수	【2022년 1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변동률】														
	0.93	1.37	0.83	0.30	△0.59	△0.69	△0.10	△0.30	△0.40	△0.99	△0.49	△0.59	△0.99	△0.20	△0.40

자료: 국민연금공단·한국부동산원

□ 임대차 계약이 2024년 연도 중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차사무실(57개소) 중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상승하는 추세였던 수도권 소재 임차사무실(26개소)의 비중은 45.6%로서 2024년도 지출계획안 작성 당시에도 임차료 지출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임차료 세목의 당초 계획액(130억 3,300만원)은 2023회계연도 임차료 세목의 당초 계획액(130억 7,0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수립된바, **2024회계연도 임차료 세목의 당초 계획액은 연중 지출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과소 수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임차료 비목 지출계획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결산	'20결산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결산	'25계획
계획액	당초	24,168	15,527	12,185	12,477	13,070	13,033	13,600
	수정	23,186	14,737	12,117	12,477	13,234	14,373	-
지출액		23,058	14,534	11,551	12,320	13,091	14,362	-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의 최신 추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지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세목 지출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사회서비스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3,204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204억 2,800만원임.

이 중 3,12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3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20,436	320,436	320,428	312,960 (282,848)	100	7,356
<일반회계>	63,878	63,878	63,870	61,411 (58,987)	100	2,348
의사상자지원	2,526	2,526	2,526	875 (875)	-	1,651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46	46	46	44 (44)	-	2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6,952	6,952	6,952	6,952 (6,952)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6,650	6,650	6,650	6,620 (6,298)	-	3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운영	2,942	2,942	2,993	2,884 (2,827)	100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5,000	5,000	5,000	5,000 (5,000)	-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3,310	13,310	13,310	13,310 (12,303)	-	-
사회복무제도지원	572	572	572	447 (447)	-	125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5,731	25,731	25,631	25,091 (24,063)	-	540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61	61	62	61 (61)	-	-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88	88	128	126 (12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6,558**	**256,558**	**256,558**	**251,550 (223,861)**	**-**	**5,00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43,266	43,266	43,266	38,258 (26,053)	-	5,00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204,629	204,629	204,629	204,629 (189,344)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제주)	7,164	7,164	7,164	7,164 (7,056)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종)	1,499	1,499	1,499	1,499 (1,408)	-	-

2) 이·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 통합돌봄법 제정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지역사회복지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용(감)하였고,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국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을 위하여 '재정운용담당관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100만원을 전용(증)하는 등,

총 1,000만원을 전용(증)하고, 1억 9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 사유
계	10 △109	
<일반회계>	10 △109	
사회복무제도지원 (2636-314)	4 △4	○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직무교육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자체 전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100	○ 통합돌봄법 제정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전용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42)	1	○ 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국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7)	5 △5	○ 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국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에서 연구용역 3건의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잔금으로 1억원을 이월하였고,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이월하여,

총 1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 사유
계	101	
<일반회계>	10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2635-303)	100	○ 연구용역 3건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잔금 이월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7)	1	○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의사상자 지원' 사업에서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16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 운영비 불용 및 연구 낙찰차액 등 5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사업에서 신규 보조사업 도입 과정에서의 지방비 매칭 확보 및 이용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50억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총 73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 사유
계	7,365	
<일반회계>	2,357	
의사상자 지원 (1932-300)	1,651	○ 의사상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 되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의사자·의상자 신청 및 인정 건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1932-301)	2	○ 국내여비 집행잔액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2631-327)	30	○ 연구용역 낙찰차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2635-303)	9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회복무제도지원 (2636-314)	125	○ 상병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나, 실제 계급별 보수 지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540	○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불용 및 연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540백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2635-305)	5,008	○ 신규 보조사업 도입과 안정화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확보, 제공 인프라 구축, 이용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 지연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6억 5,000만원으로, 이 중 6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결산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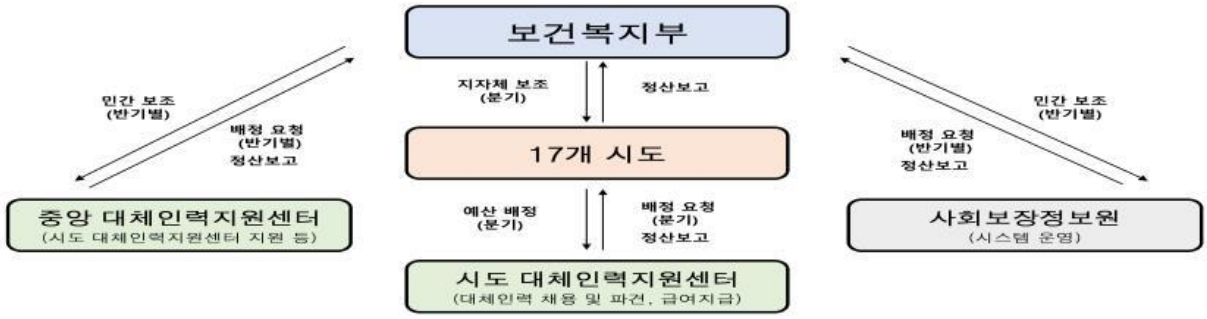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650	6,650	-	-	6,650	6,620	-	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6,650	6,650	-	-	6,650	6,620	-	30

나)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 개요

□ 보건복지부는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를 2023년까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예산 전달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종사자 교육, 의견 수렴, 대외 홍보, 성과공유회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

1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2 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종사자 교육
• **운영지원** - 시도센터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지원 - 시도센터 상시소통 창구 운영 • **실적관리** - 채용현황, 사업현황 관리 • **보험가입**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의견 수렴, 기능개선 요청 • **시도센터 간담회**(연 2회)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연 2회) 및 의견수렴(수시)	• **교육과정 운영** - 기초소양 온라인 교육 운영 - 기본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 기타교육 운영 (ex. 인사노무, 힐링, 시설정보시스템 등)

4 대외 홍보	5 시·도워크숍
• **공모전** - 대체인력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새로운 이름 공모 • **우수사례** - 시도별 추천 우수사례 취합	• **'24년 사업현황 공유** • **사회복지 유공표창 시상** • **향후 추진방향 & 질의응답** • **우수사례 공유회**

자료: 보건복지부

다)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교부 주의

불용 방지를 위한 현실적 임금 수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 인건비는 중앙관리직 1인에게 1년 간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3,20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임.

- 인건비 2,952만원(월 246만원, 기본급·교통비·4대보험·퇴직적립금 포함)에 명절휴가비 252만원(126만원씩 2회 지급)으로 구성됨.

□ 2024년,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면서 중앙관리직 1인을 새로 채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채용절차를 3회 진행하여 2024년 11월에서야 채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인건비는 2개월(11월·12월) 분만 집행되었음.

< 세부 집행내역 >

(단위: 원)

지출비목	예산현액	산출기초	자금별			지출 일자
			국고보조	자부담 등	집행잔액	
총계	**52,000,000**		**30,708,020**	-	**21,291,980**	
인건비	24,842,000	전담인력 인건비(11월) 전담인력 인건비(12월)	1,493,330 2,280,190	-	21,068,480	11.23. 12.24.
일반수용비	10,402,000	대체인력지원센터 워크숍	7,432,557	-	0	4~12월
		종사자 교육 (온오프라인)×2회	2,184,523			
		관리자 간담회×2회	114,500			
		대외홍보(공모전)	670,420			
공공요금 및 제세	5,300,00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5,300,000	-	0	7.17.
임차료	11,000,000	시도센터 워크숍 장소 임차	11,000,000	-	0	12.6.
복리후생비	456,000	4대 보험 기관부담금×1.5개월	232,500		223,500	12.24.

자료: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4]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더라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시 중앙관리직의 미채용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5,200만원을 2회에 나누어 전액 교부하였음.

< 보조금 교부 일시 및 금액 >

회차	일시	보조금액
1	2024.1.24.	18,659,000원
2	2024.6.26.	33,341,000원

□ 운영비 예산의 경우, 부재중인 중앙관리직의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담당 부서(혁신기획부) 직원 3명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수 있으나,

인건비 예산의 경우, 상반기 중앙관리직 1인이 채용되지 못하였음을 6월 26일에 이루어진 2번째 교부 시에는 알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6개월 치 인건비(1,600만원)는 교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편성된 인건비 전액을 교부하였고, 결국 2,1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4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이 사업 보조금 교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중앙관리직 기본급(월 207만원, '24년 기준)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계약직(행정다급) 기본급(월 296만원)에 비해 처우가 매우 낮아 잦은 이직, 채용 지연 등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편성 시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이 예상됨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무제도지원(2636-3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무제도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의 인력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및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7,200만원으로, 이 중 4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복무제도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72	572	-	-	572	447	-	125
사회복무제도지원	572	572	-	-	572	447	-	125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예산 집행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이·전용을 허용하고 있음.[45)]

따라서 동 사업에 편성된 5억 7,2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피복비·급식비·국내여비 그리고 관련 운영비 등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임.

< 2024년도 예산 편성근거 >

- 사회복무요원 급여 : 4억 2,000만원(35명×1,000,000원×12개월)
- 피복비 : 400만원(14명×309,840원)
- 급식비 : 5,700만원(35명×7,000원×232일)
- 국내여비 : 2,400만원(35명×3,000원×232일)
- 운영비 : 6,700만원
  (일반수용비 5,400, 특근매식비 600, 임차료 200, 사업추진비 500)

합계: 5억 7,2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45)「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과 무관한 ‘나눔국민대상’의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동 사업의 운영비 900만원을 사용하였음.

- ‘나눔국민대상’은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까지 ‘나눔문화확산’ 사업 중 ‘나눔실천자 포상’ 내역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 폐지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보건복지부는 ‘나눔국민대상’의 추진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나,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 예산을 이·전용 등 적확한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예산 집행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동 사업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편성되어, 경상북도를 제외한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 예산 257억 3,100만원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한 1억원을 제외한 256억 3,100만원으로, 이 중 250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5,731	25,731	-	△100	25,631	25,091 (24,063)	-	540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7099	1,7099	-	△100	1,7099	16,999 (16,198)	-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8,000	8,000	-	-	8,000	7,500 (7,293)	-	500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300	300	-	-	300	273 (273)	-	27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142	142	-	-	142	142 (122)	-	-
부처운영비	190	190	-	-	190	177	-	13

나) 교부 요건이 소멸된 국고 보조금의 이자 반환 필요

교부 요건이 소멸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내역사업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각 5억원씩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2월 5일 서울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26일 의결되었고, 이후 노동청 중재로 노·사간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투표가 부결되어, 결국 2024년 5월 22일 서울 사회서비스원 이사회가 해산 의결을 하고 이를 서울시가 승인함에 따라, 2024년 5월 23일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46]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도록 하고 있으며,

---

4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동 내역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상실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사업의 취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5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이자도 함께 반납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2024년 9월 12일 보조금 5억원을 전액 반납받았음.

□ 그러나, 서울시가 세 차례(1월 15일, 3월 14일, 5월 14일)로 나누어 교부받은 보조금 5억원을 9월 12일에 반납하였으므로,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까지 반납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반납기한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부 요건이 소멸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26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은 인구구조 및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및 취약 지원사업 등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32억 6,600만원으로, 이 중 38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3,266	43,266	-	-	43,266	38,258 (26,072)	-	5,008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591	3,591	-	-	3,591	3,591 (3,132)	-	-
생활사회서비스투자 사업	36,175	36,175	-	-	36,175	32,118 (20,856)	-	4,057
긴급돌봄지원사업	3,500	3,500	-	-	3,500	2,548 (2,084)	-	951

나) 보조금 교부지침에 따른 연 2회 이상 분할 교부 필요

보조금 교부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내역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되었음.

-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은 24년 종료되었으며, 전국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도입됨.

< 최근 3개년('22～'2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4,638	5,670	3,591
집행(실집행)	4,638(2,937)	6,799(5,700)	3,591(3,132)

자료: 보건복지부

□ 동 내역사업은 읍·면·동, 복지로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부는 17개 시·도에 35억 9,100만원을 나누어 교부하였음.

□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7]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4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되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연 1회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일시 및 교부금액 >

지방자치단체	교부일시	교부액 (백만원)	교부액 (백만원)	실집행액 (백만원)	실집행률(%)
서울특별시	2024.1.19.	544.1	585	505	86.3
	2024.6.17.	40.8			
부산광역시	2024.1.19.	291.3	310	273	88.1
	2024.6.17.	18.6			
대구광역시	2024.1.19.	227.4	242	206	85.2
	2024.6.17.	14.5			
인천광역시	2024.1.19.	405	405	360	89.0
광주광역시	2024.1.19.	164	164	133	81.0
대전광역시	2024.1.19.	134.3	143	119	83.2
	2024.6.17.	8.6			
울산광역시	2024.1.19.	60.1	64	63	98.0
	2024.6.17.	3.8			
세종특별자치시	2024.1.19.	30	37	30	81.1
	2024.6.17.	7			
경기도	2024.1.19	300	551	499	90.5
	2024.6.17.	251			
강원특별자치도	2024.1.19	152.2	162	125	77.0
	2024.6.17.	9.7			
충청북도	2024.1.24	165	165	140	84.9
충청남도	2024.1.19	94.9	101	87	86.6
	2024.6.17.	6			
전북특별자치도	2024.1.19	153	153	133	87.2
전라남도	2024.1.19	56.5	113	100	88.2
	2024.6.17.	56.5			
경상북도	2024.1.19	58.5	117	104	88.9
	2024.6.17.	58.5			
경상남도	2024.1.24	200	200	179	89.6
제주특별자치도	2024.1.19	79	79	77	97.2
합계		**3,590.3**	3,591	3,133	87.2

자료: 보건복지부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동 내역사업의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도입(24.7.1)에 맞추어 지역 내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연초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해야할 사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4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금 전액을 한 번에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일부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금을 최소 연 2회로 나누어 교부하라는 것은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불필요한 예산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2024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의 13%인 4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목적·취지에서 운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있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지침을 준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4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6. 인구아동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6조 1,19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및 추경으로 증·감액된 예산현액은 6조 1,185억 7,800만원이며, 이 중 6조 1,050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0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119,078	6,119,078	6,118,578	6,105,032	457	13,089
일반회계	5,777,421	5,777,421	5,776,894	5,764,976	249	11,66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9,451	309,451	309,451	309,215	189	47
국민건강증진기금	32,206	32,206	32,233	30,841	19	1,373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등 총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5조 7,77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및 추경으로 증·감액된 예산현액 5조 7,768억 9,400만원 중 5조 7,649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6억 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계)	**5,777,421**	**5,777,421**	**5,776,894**	**5,764,976**	**249**	**11,669**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38	1,038	1,038	1,038	0	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45,402	45,402	45,402	45,371	0	31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7,721	17,721	17,731	17,686	14	31
가정위탁 지원·운영	6,340	6,340	6,503	6,418	0	85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2,092	2,092	2,110	2,005	89	1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52,276	52,276	50,960	44,373	0	6,587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26,733	126,733	126,733	126,112	0	621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878	1,878	1,878	1,730	30	118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6,427	26,427	26,427	26,427	0	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8,565	48,565	48,565	44,760	0	3,805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165	165	165	165	0	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4,272	44,272	44,272	44,272	0	0
첫만남 이용권 지원	380,363	380,363	380,363	380,363	0	0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4,225	4,225	4,225	4,224	0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848	848	921	753	86	8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4,334	4,334	4,334	4,321	0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10,497	10,497	12,232	12,022	0	209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3,689	3,689	3,689	3,838	30	21
아동수당 지급	2,111,471	2,111,471	2,110,263	2,110,247	0	16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888,694	2,888,694	2,888,694	2,888,678	0	16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33	133	136	128	0	8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58	258	253	245	0	8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3,094억 5,100만원으로 3,092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계)	**309,451**	**309,451**	**309,451**	**309,215**	**189**	**4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213,666	213,666	213,666	213,666	0	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56,520	56,520	56,520	56,520	0	0
지역아동센터 지원	33,930	33,930	33,930	33,694	189	4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	3,472	3,472	3,472	3,472	0	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656	656	656	656	0	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	719	719	719	719	0	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488	488	488	488	0	0

4) 기금 결산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계획액은 322억 600만원이고, 계획현액 322억 3,300만원 중 308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 7,300만원은 불용되었음. 자체계획 변경은 없었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건강증진기금(계)	32,206	32,206	32,233	30,841	19	1,373
모자보건사업	24,450	24,450	24,477	23,085	19	1,373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756	7,756	7,756	7,756	0	0

5) 이·전용 현황

가) 이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손실보상금),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급(기타보전금)을 위한 자체 이용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에서 13억 1,600만을 이용(감)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및 전문임기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에 2억 8,800만원을 이용(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이용 사유
계		288 △1,316	
일반회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316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손실보상금),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급(기타보전금)을 위한 자체 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28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및 전문임기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이용 증액

나) 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공간 조성, 기능 강화에 따른 인건비 등 처우개선 소요예산 확보 필요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예산에서 12억 8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위기임산부 상담 제도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말 홍보 예산 부족으로 1억 5,000만원을 자체전용하는 등 총 14억 6,700만원을 전용(증)하고 14억 6,0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467 △1,460	
일반회계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1 △11	○ 기본계획 자문회의 운영 등을 위해 국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자체전용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150 △150	○ 제도시행 초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말 홍보 예산 부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1,234 △2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조직개편 확대에 따른 운영비 전용 증액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50 △50	○ 청년미래센터 전담지원 시범사업의 전담인력 교육을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연구비에서 50백만원 전용
	아동수당 지급	△1,20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공간 조성, 기능강화에 따른 인건비 등 처우개선 소요예산 확보 필요에 따라 전용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2	○ 기관 운영비 부족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0 △15	○ 기관 운영비 부족

6)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등에서 총 4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금액	이월 사유
계		457	
일반회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4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89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아동정책조정 인권증진	30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86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30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아동센터 지원	189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급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19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불용액은 총 130억 8,900만원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설치비 및 인건비 65억 8,7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감소로 발생한 설치비 및 인건비 38억 5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등임.

< 2024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3,089	
일반회계		11,66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1	○ 집행잔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31	○ 자립준비청년 자립촉진을 위한 자립수당/ 정착금 재구조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가정위탁 지원·운영	85	○ 집행잔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6,587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설치비, 인건비 등 불용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621	○ 집행잔액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18	○ 연구용역 집행잔액(68백만원) 및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개소 선정 지연으로 인한 불용(50백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3,805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감소로 인한 설치비, 운영비 등 불용액 발생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1	○ 집행잔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82	○ 집행잔액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13	○ 집행잔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209	○ 집행잔액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21	○ 집행잔액
	아동수당 지급	16	○ 집행잔액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6	○ 집행잔액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	○ 집행잔액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8	○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7	
	지역아동센터 지원	47	○ 집행잔액
국민건강 증진기금		1,373	
	모자보건사업	1,373	○ 고위험 임산부 지원(생애초기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기반으로, 위기임산부[49]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42억 2,500만원 중 42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됨.

< 2024회계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225	4,225	-	-	4,225	4,224	-	1
·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2,028	2,028	-	-	2,028	2,028	-	-
· 보호출산 산모지원	720	720	-	-	720	720	-	-
·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지원	268	268	-	-	268	268	-	-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295	295	-	-	295	294	-	1
·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914	914	-	-	914	914	-	-

4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나) 지원대상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보호출산 제도 시행의 첫 해이기는 하나 지원 보호출산 산모 예산편성 규모와 실제 지원 규모의 격차가 과다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 정확성과 합리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여금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숙려기간 동안 위기임산부가 처한 상황, 특성, 욕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 800만원(15%)에 불과함.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720	720	720	720	-	720	108	720	108	-	612	15

□ 구체적으로 2024년의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은 보호출산 산모를 300명으로 추계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각 100만원, 숙려기간 지원으로 각 14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의료비만 지원한 건수는 6건, 숙려기간 비용만 지원한 건수는 6건, 의료비·숙려기간 비용을 모두 이용한 건수는 39건으로, 총 51건에 불과함.

< 2024년 집행 실적 >

(단위: 건)

구분	총합	의료비, 숙려기간 비용 모두 지원	의료비만 지원	숙려기간 비용만 지원
지원 건수	51	39	6	6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보호출산 산모를 300명으로 추계한 것은 최근 5년간('19~'23) 유기아동은 연 평균 137명 수준이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8. 개정, 2024. 7. 19. 시행)으로 출생통보제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이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 현황 >

(단위: 명)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유기	191	218	235	285	282	321	264	261	320	237	169	117	73	88	3,061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에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가 독일과 프랑스 제도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등 외국의 사례도 감안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5년간 총 536건이 발생하였는데, 2016년 이후에는 연 발생 건수가 120건 내외이며,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에서는 매년 약 600여건의 발생 건수가 있는 실정임.

< 국가 간 제도 비교 >

구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출산 시 정보기록	친모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함	친모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함	친모에 대한 기록 남기지 않을 수 있음
정보공개	친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친모가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	친모가 기록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와 실제 지원 대상에 있어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은 **보호출산 지원 대상 산모 추계 시 2024년은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시행의 첫 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아울러 최근 유기 아동 대비해서도 다소 과도하게 추계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 정확성과 합리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사 채용 안정성 제고 등

보호출산제도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사 채용 및 고용 유지 등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12개 지역상담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5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내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내역 >

❍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내내역사업: 1,562백만원
- (인건비) 977백만원
  * (서울) 109백만원 = 2개소 × (60백만원×1명 + 42백만원×3명) × 7개월/12개월 ×50%(보조율)
    (지방) 868백만원 = 10개소× (60백만원×1명 + 42백만원×3명) × 7개월/12개월×80%(보조율)
- (운영비) 585백만원
  * (서울) 65백만원 = 65백만원 × 50% × 2개소
  * (지방) 520백만원 = 65백만원 × 80% × 10개소

□ 참고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한편, 지역에서 위기임산부에게 직접적인 상담 등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 할 것으로,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광주와 충북은 각각 100%의 실집행률을 보인 반면, 서울, 충남, 전북은 80%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고, 특히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실집행률은 각각 53%, 75.35%에 불과하였음.

<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지역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역	국고 보조율	교부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불용액	실집행률 (D/C)
서울특별시	50	128.12	128.12	104.25	24	81.4
부산광역시	80	102.42	102.42	101.35	1	99
대구광역시	80	102.42	102.42	87.98	14	85.9
인천광역시	80	102.42	102.42	100.55	2	98.2
광주광역시	80	68.28	68.28	68.28	-	100
대전광역시	80	102.42	102.42	97.54	5	92.5
울산광역시	80	68.28	68.28	63.15	5	92.5

경기도	80	204.84	204.84	154.34	51	75.35
강원특별자치도	80	102.42	102.42	92.69	10	90.5
충청북도	80	68.28	68.28	68.28	-	100
충청남도	80	102.42	102.42	81.89	21	80
전북특별자치도	80	68.28	68.28	55.35	13	81.1
전라남도	80	68.28	68.28	66.65	2	97.6
경상북도	80	102.42	102.42	93.66	9	91.4
경상남도	80	102.42	102.42	90.92	12	88.8
제주특별자치도	80	68.28	68.28	36.21	32	53
합계		1,562	1,562	1,363	199	87.3

자료: 보건복지부

□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주된 원인은 상담원의 중도 퇴사 및 3교대 전문 상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지역상담기관 상담인력의 안정적 채용 및 고용 유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그 외 상담 실적[50]이 지속적으로 낮은 지역의 경우 향후에는 지원 비용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겠음. 참고로 충남과 전북의 경우 2024년 10월에 직원이 퇴사하여 나머지 11월과 12월분 인건비가 불용되었고, 서울의 경우 3교대 전문 상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6월에서 9월치 인건비가 불용된 바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총 상담 41건 중 전화 18건 등 비대면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음.

□ 아울러, 실제 운영된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전임 인력 현황을 보면, 대부분은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충남과 전북의 경우 전임 인력의 정원이 미달되어 운영 중인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결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50) 제도 시행('24. 7. 19.) 후 '24. 12월까지 90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보호출산 신청은 63명(그 중 11명은 철회)이었음.

< 지역상담기관 인력 현황(2024. 12.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임	6 (6)	3 (3)	3 (3)	3 (3)	2 (2)	3 (3)	2 (2)	6 (6)	3 (3)	2 (2)	2 (3)	1 (2)	2 (2)	3 (3)	3 (3)	2 (2)	**46 (48)**
겸임	5	2	3	2	3	2	2	1	2	3	2	3	3	2	2	3	**40**
총계	11	5	6	5	5	5	4	7	5	5	4	4	5	5	5	5	**86**

* ( ): 정원

자료: 보건복지부

2)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행사(꿈나무 축구대회)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액 10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4회계연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38	1,038	-	-	1,038	1,038	-	-
·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200	200	-	-	200	200	-	-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838	838	-	-	838	838	-	-

나) 사업 참여 아동 확대 등 사업 활성화 필요

사업 참여 아동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노력과 함께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개개인별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집행률 편차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의 내역사업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인지학습·사회성·정서 영역 프로그램, 진로탐색·성교육·경제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학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나[51]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는 상황으로, 학령기의 경우 학급당 3명, 전국 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다만, 2024년 아동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욕구아동[52] 전수조사 결과 807개소 전체 아동(11,899명) 중 경계선지능아동은 2,173명(18.3%)으로 조사된 적이 있음[53].

□ 2024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선별비’는 단가는 동일하게 30만원으로 2023년의 경우 서울 23명, 지방 16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서울 41명, 지방 391명으로 증가한 반면,

---

51) 보통 지능지수(IQ) 71~84점 구간으로(미국 DSM-Ⅳ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기준), 지능의 정규 분포에 의하면 전체의 약 13.59%(약 607만명)로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음.

52)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장애, 경계선지능, ADHD 판정 등 특수욕구아동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체 아동생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임.

53)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지능이 의심된다는 결과(임한결(경기장애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빠진 경계선지능아동”,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 2023. 5.)도 있음.

‘사례관리비’의 경우 2023년에는 880명(서울 116명, 지방 764명)에서 2024년에는 618명(서울 83명, 지방 553명)으로 줄었고, 전년과 동일하게 1년간 50회(1회당 3.5만원)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편성되었음.

< 2023년 및 2024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2023년>	<2024년>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1,076백만원 · **(선별비) 39백만원** = (서울) **23명**×300천원×50% + (지방) **168명**×300천원×70% · **(사례관리비)** 1,037백만원 = (서울) **116명**×35천원×50회×50% + (지방) **764명**×35천원×50회×70%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838백만원 (△238백만원, △22.1%) · **(선별비) 88백만원** = (서울) **41명**×300천원×50% + (지방) **391명**×300천원×70% · **(사례관리비)** 750백만원 = (서울) **83명**×35천원×50회×50% + (지방) **553명**×35천원×50회×70%

□ 한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예산액 8억 3,800만원 대비 85.1%인 7억 1,300만원이 집행된 바, 이는 전년도 70.9%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A)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2년	1,076	1,076	1,076	-	726	67.5
2023년	1,076	1,076	1,076	-	763	70.9
2024년	838	838	838	-	713	85.1

자료: 보건복지부

□ 하지만, 이러한 실적은 2023년 예산액은 10억 7,600만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액은 2억 3,800만원 감액된 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른 효과로, 참여 아동 수나 연간 이동 건수에 있어 의미있는 변화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임.

< 최근 3년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현황 >

(단위: 명, 회)

구 분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	참여 아동수	연간 이용건수	1인당 평균 이용건수
2022년	880	811	28,568	35.2
2023년	880	802	31,168	38.9
2024년	636	782	30,468	39.0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시·도별 집행 실적을 보면 편차가 있는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의 경우 평균 85.1%보다 상당히 낮은 73.1%, 78%, 78.6%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과 주의를 유도할 필요도 있겠음.

< 2024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계	838	838	713	125	85.1
서 울	79	79	65	14	82.3
부 산	49	49	45	4	91.8
대 구	41	41	32	9	**78**
인 천	23	23	23	-	100
광 주	41	41	30	11	**73.1**
대 전	41	41	33	8	80.5
울 산	5	5	4	1	80
세 종	2	2	2	-	100
경 기	68	68	57	11	83.8
강 원	45	45	40	5	88.9
충 북	36	36	34	2	94.4
충 남	77	77	70	7	90.9
전 북	49	49	42	7	85.7
전 남	128	128	107	21	83.6
경 북	79	79	68	11	86.1
경 남	42	42	33	9	**78.6**
제 주	33	33	28	5	84.8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의 경계선지능아동이 18세가 되어 해당 시설을 퇴소하게 되었을 때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관련 사업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u>각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음</u>.

<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용	2024년도 예산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심신단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200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선별비용(종합심리검사) 및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838
장애학생 취업지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 사회성 훈련(일배움, 현장체험 등) 등 취업준비프로그램 제공 및 졸업 후 사회진출 지원	32,060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지원	·지적장애는 아니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 및 학습·심리·정서 지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및 분석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인지 및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사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가이드북 개발	500

자료: 보건복지부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어 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등[54]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454억 200만원 중 45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5,402	45,402	-	-	45,402	45,371	-	31
·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45,174	45,174	-	-	45,174	45,160	-	14
· 자립수당시스템 운영	78	78	-	-	78	78	-	-
·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150	150	-	-	150	133	-	17

54)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9) 보호종료 2년 이내 → (’20) 보호종료 3년 이내 → (’21. 8.)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됨.

나) 자립수당 지급 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등

자립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계 노력 강화와 함께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추계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30만원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5만원 및 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4년에는 생활안정 및 소득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3년보다 10만원 인상(25% 증가)된 50만원을 지급하였음.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추이 >

연도	지급대상(명)	예산액(백만원)	지급액	지원기간
2019	4,920	9,858	월 30만원	보호종료 2년이내
2020	7,820	21,823	〃	보호종료 3년이내
2021	8,035	22,240	〃	보호종료 5년이내
2022	9,982	27,467	월 35만원	〃
2023	12,000	43,745	월 40만원	〃
2024	10,000	45,402	월 5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5.8%로 일반청년(20세~29세)의 5.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 특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분야도 경제적 지원(68.2%)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자립수당 금액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이해됨.

□ 한편, 연도별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다소 증가한바, 2024년말 기준 합계는 8,586명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20~24년)
보호종료아동	2,368	2,102	1,740	1,173	1,203	8,586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의 추세는 주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보호연장아동[55] 및 조기 보호종료 아동[56]은 지원 대상의 증가 요인이 되는바, 보호연장아동은 2023년 4,607명에서 2024년 4,997명으로 증가하였고, 조기 보호종료 아동(예산 편성 당시 추정인원은 보호종료아동의 20%로, 50명으로 추계됨)은 2024년 9월 기준 지급결정자가 38명으로 집계됨.

< 보호연장아동 시·도별 2개년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3	2024
서울	431	478
부산	286	288
대구	159	178
인천	179	189
광주	191	166
대전	93	102
울산	65	77
세종	17	23
경기	781	850
강원	355	391
충북	203	229
충남	234	307
전북	373	390
전남	405	420
경북	354	355
경남	366	422
제주	115	132
합계	4,607	4,997

55) 「아동복지법」 개정(2021. 12. 21.) 및 시행(2022. 6. 21.)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함. 본 개정 전에는 대학 진학,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호 연장이 가능했음.

56) 「아동복지법」 개정(2023. 8. 8.) 및 시행(2024. 2. 9.)으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

□ 동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성 기준 인원의 정확한 추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연례적으로 편성 대비 집행 인원 수가 미달하였던바, 2024년에도 전년 대비 2,000명을 줄여[57] 10,000명을 지급대상자로 하였으나, 지급결정자는 8,5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립수당 예산상 지급인원 대비 지급결정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상 지급대상자*	7,536	7,809	9,982	12,000	10,000
지급결정자	7,332	7,268	9,121	9,935	8,501(12월)**
지급률	97.3	93.1	91.4	82.8	85.0

* 예산상 지급대상자(예산산출 위한 추정인원) : 지난 5년간 보호종료인원+「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추가수요대상자(보호기간 연장, 조기보호종료 등) 추정

** 지급결정인원은 행복e음(자립수당시스템)을 통해 추출되며, 보호종료아동으로 신규 진입 또는 지급대상 종료에 따라 매월 집계숫자가 상이함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하여 지역별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강원도는 77.5%, 경남은 81.4%로 평균 88.6%보다 각각 11%와 7%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 정확한 추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임.

< 자립수당 자치단체별 경상보조사업 실집행률(2024회계연도) >

(단위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92.6	93.3	93.0
부산	92.0	92.2	89.6
대구	92.4	94.4	92.5
인천	91.3	91.0	88.9
광주	90.8	88.5	98.2
대전	94.5	98.0	98.6

57) 2025회계연도의 경우 9,000명으로 다시 줄였음.

울산	90.1	83.5	92.1
세종	91.5	94.9	96.8
경기	91.1	91.8	91.7
강원	92.9	82.9	**77.5**
충북	86.1	90.3	86.0
충남	93.9	97.0	85.6
전북	91.8	88.2	91.9
전남	86.6	88.2	82.6
경북	93.8	87.3	84.3
경남	92.3	86.6	**81.4**
제주	89.4	85.7	89.8
합계	**91.5**	**82.1**	**88.6**

□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변동 추이와 함께, 보호연장아동 및 조기 보호종료 아동의 발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음.[58]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다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음.

□ 그 외,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서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 있으므로,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효적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8)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조기보호종료아동은 2022년부터, 보호연장아동은 2024년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점과, 개인·가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대상 규모가 변동되는 점 등 사전 추계에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는 입장임.

< 자립수당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제도 >

구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비고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❶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❷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동안 매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지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 지원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일정기간 입소 후 퇴소한 경우 지급)	**1천만원**	'24년 5백만원→ '25년 1천만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 지원수당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일정기간 입소 후 퇴소한 경우 지급)	시설퇴소 후 **5년간 월 50만원**	'25년 신설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월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생활·주거·취업·교육·건강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77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을 합한 177억 3,100만원 중 17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00만원을 불용함.

< 2024회계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7,721	17,721	10	-	17,731	17,686	14	31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6,577	6,577	-	-	6,577	6,577	-	-
· 자립지원 사업비	9,623	9,623	-	-	9,623	9,623	-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1,350	1,350	-	-	1,350	1,306	14	30
· 자립지원 운영비	171	171	10	-	181	180	-	1

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 필요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48.6명에 이르는 등 실질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인력 운영도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기관[59]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인력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을 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타 기관 의뢰 및 초기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상담, 지원 연계, 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주요 지원내용 >

구분	지원 내용
자립상담	- 대상자별 최소 월 1회 상담 진행하되, 대상자 의사 고려해 상담주기 조정 -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점검 - 대면상담 원칙(대상자 의사·여건 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 대체 가능)
자원연계	- (복지제도 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민간 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학교·기업 실시 사업 및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 - (의료자원 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건소 보건사업 등 ※ 공공, 민간 자립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체계 구축
사례관리비 지원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지원 ※ 사례관리비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59) **「아동복지법」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보호종료아동 간 상시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2024년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단가를 2023년 311만원에서 328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정원도 기존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60]하였고, 신규 인력 50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 2023년~2024년도 자립지원전담인력 예산 편성 근거 >

2023년도 자립지원전담인력 예산편성 근거	2024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예산편성 근거
('23) 5,288백만원	('24) 6,102백만원(+15.4%)
· (서울) 423백만원 = (16명 × 311만원 × 12개월 × 50%) + (8명 × 311만원 × 10개월 × 50%)	· (서울) 590백만원 = (24명 × 328만원 × 12개월 × 50%) + (12명 × 328만원 × 6개월 × 50%)
· (지방) 4,402백만원 = (104명 × 311만원 × 12개월 × 80%) + (52명 × 311만원 × 10개월 × 80%)	· (지방) 5,511백만원 = (156명 × 328만원 × 12개월 × 80%) + (38명 × 328만원 × 6개월 × 80%)

□ 하지만,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보면, 평균적으로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48.6명에 이르고, 특히 전북은 154.0명, 경남은 98.6명, 강원은 97.1명에 이르는 등 자립준비청년과의 상시적·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실질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 등(2024. 12.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자립지원전담인력 총인원(현원)	자립준비청년 수	1인당 담당 청년 수
총계	**205***	**9,970**	**48.6**
서울	36	1,234	34.3
부산	18	787	43.7
대구	9	340	37.8
인천	13	412	31.7
광주	11	356	32.4
대전	10	275	27.5

60) 다만, 지방 신규 인력은 2023년 52명에서 2024년 38명으로, 14명 줄여서 편성하였음.

울산	2	122	61.0
세종	2	12	6.0
경기	42	1,594	38.0
강원	7	680	97.1
충북	7	416	59.4
충남	10	464	46.4
전북	4	616	154.0
전남	13	990	76.2
경북	10	683	68.3
경남	8	789	98.6
제주	3	200	66.7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퇴직자 수가 정원(180명) 대비 28.9% 수준의 52명이었던 데 이어 2024년에도 퇴직자 수가 61명으로 정원(230명) 대비 26.5% 수준에 이르고, 월별 근무인원도 서울의 월별 인력 현황은 23명에서 36명까지, 경기는 29명에서 42명까지 달라지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퇴직자 현황]

(단위: 명)

2022년						
정원	기준인원(A)	채용인원(B)		퇴직자(C)		기준 현원 (A+B-C)
		신규채용	인사이동	퇴사	인사이동	
120	-	126	19	37	5	103
2023년						
정원	기준인원(A)	채용인원(B)		퇴직자(C)		기준 현원 (A+B-C)
		신규채용	인사이동	퇴사	인사이동	
180	103	103	5	52	3	156
2024년						
정원	기준인원(A)	채용인원(B)		퇴직자(C)		기준 현원 (A+B-C)
		신규채용	인사이동	퇴사	인사이동	
230	156	109	12	61	11	205

주: 1. 현원은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임
2. 퇴직자 수는 당해 연도의 누적 퇴직 및 자립지원 외 업무로 직무 변경 인원의 총합
3. 2022년에 전국 17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자립지원 전담인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자료 : 보건복지부

< 2024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월별 현황 >

(단위: 명)

시도	2023년		2024년													
	정원	12월	정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퇴직자
계	180	156	230	163	162	164	175	174	175	186	191	204	209	208	205	72
서울	24	23	36	23	23	24	24	24	24	24	28	32	34	35	36	2
부산	16	13	20	13	13	14	16	15	16	17	17	16	17	17	18	10
대구	8	6	9	6	7	7	8	8	8	9	9	9	9	9	9	2
인천	10	10	13	10	10	10	10	10	10	11	12	13	13	13	13	2
광주	10	11	11	11	11	11	10	11	11	11	10	11	11	11	11	2
대전	7	6	10	7	7	6	6	7	7	7	6	8	7	9	10	3
울산	2	2	3	2	2	2	2	2	2	2	2	2	2	2	2	0
세종	2	2	2	2	2	2	2	1	1	2	2	2	2	2	2	1
경기	32	28	45	30	27	28	32	29	30	34	35	37	41	39	42	15
강원	10	7	11	7	5	8	8	8	7	7	7	7	7	6	7	4
충북	7	6	9	6	6	5	6	7	7	7	7	6	6	7	7	3
충남	8	7	11	7	7	7	9	9	9	10	11	11	11	10	10	2
전북	9	5	11	6	8	7	8	9	8	8	6	11	11	10	4	12
전남	11	8	13	9	9	8	9	9	11	11	13	13	13	13	13	1
경북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9	9	10	6
경남	12	9	13	11	12	12	12	12	11	13	13	13	13	13	8	7
제주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0

주. 월말 기준 현원, 육아휴직 대체 채용인원은 현원 포함, 퇴사자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변동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자격에 기대되는 처우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 채용 인력의 이·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2024년도의 경우 유사업무를 행하고 있는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의 월 단가는 396만원인 반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월 단가는 328만원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겠음**[61].

< 탈고립·은둔 전담인력 및 자립지원전담인력 비교 >

	탈고립·은둔 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인력
역할	• 대상자 신청 • 전수조사·수시발굴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위험도 측정 및 대상자 선정·평가 • 사례회의 기반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개인별 지원 서비스 운영·연계 • (사후관리) 정기면담,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원 효과의 지속성 확인, 재개입 필요성 판단 및 재고립·은둔 예방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등 •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업무 •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업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업무 • 비품 및 회계관리 등 자립지원 관련 행정업무
자격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사례관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 종사 경력이 총 7년 이상인 사람 1.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외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건비	('24년) 월단가 396만원 → ('25년) 월단가 408만원(3.03% 인상)	('24년) 월단가 328만원→ ('25년) 월단가 336.8만원(2.68% 인상)

자료: 보건복지부

61)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은 최소 7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전담인력과 최대 5호봉 이상의 경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호봉에 따른 인력 간 단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사례관리 지원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사례관리 지원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4년의 경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중 사례관리비 지원대상을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사례관리비 월 지원단가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4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자립지원 사례관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대상	2,000명	2,750명
지원단가	월 40만원	월 40만원

□ 2023년 및 2024년 사례관리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23.9%에 이어 2024년에도 126.9%로 실적치가 목표를 초과하였으나, 울산 및 강원도의 경우 각각 66.7%, 79.9%로 비교적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및 2024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목표 대비 실시 현황 >

(단위: 명, %)

시도	수행기관 (시·도 위탁)	2023년			2024년		
		목표	실적	실시율	목표	실적	실시율
계		2,000	2,477	123.9	2,750	3,491	126.9
서울	서울아동복지협회	310	454	146.5	447	844	188.8
부산	부산아동복지협회	175	229	130.9	239	279	116.7
대구	대구YWCA	85	153	180.0	124	252	203.2
인천	한국아동복지협회	105	150	142.9	146	205	140.4
광주	광주아동복지협회	105	126	120.0	155	183	118.1
대전	대전아동복지협회	80	84	105.0	118	122	103.4
울산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25	8	32.0	33	22	66.7
세종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5	8	160.0	7	12	171.4
경기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365	369	101.1	515	520	101.0

시도	수행기관 (시·도 위탁)	2023년			2024년		
		목표	실적	실시율	목표	실적	실시율
강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110	70	63.6	139	111	**79.9**
충북	한국아동복지협회	75	95	126.7	101	110	108.9
충남	충남아동복지협회	85	101	118.8	114	121	106.1
전북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100	119	119.0	120	139	115.8
전남	전남아동복지협회	115	192	167.0	151	192	127.2
경북	경북아동복지협회	100	131	131.0	132	154	116.7
경남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125	141	112.8	162	173	106.8
제주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35	47	134.3	47	52	110.6

주1 사례관리 목표 : 자립지원 사업비(사례관리비) 지원 예산 기준 : ('23) 월 40만원 단가 x 2,000명 → ('24년) 월 40만원 단가 x 2,750명
주2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1회 이상 사례관리비 지원 받은 인원으로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 지자체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 실집행률은 75.2%, 2024년 실집행률은 79.4%로서, 2024년도 예산액 91억 600만원 중 불용액은 18억 7,300만원에 이르는 등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사례관리 실적이 예산상 목표를 초과하였음에도 불용액이 상당함.

< 2023년 및 2024년 자립지원 사례관리비 지자체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3년	7,635	7,152	5,742	1,410	75.2
2024년	9,106	9,106	7,233	1,873	79.4

□ 이러한 불용액 발생은 사례관리 실시율이 목표 인원 대비 사례관리를 받은 인원의 비율로서 사례관리를 1회만 지원받아도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데 비해, 사례관리비 실집행 내역의 경우 실제 사례관리비 집행 결과이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보호종료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연간 한도(480만원[62])

62) 월 단가 40만원 × 12개월

내에서 보호종료아동별로 자립에 필요한 사례관리 횟수, 지원 내용이 달라 1인당 지원된 사례관리비에서 차이가 있는바, 연간 한도액을 모두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 한도액 중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례관리 실시율이 상당히 낮은 울산시(66.7%), 강원도(79.9%)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적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사례관리 지원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이와 함께 예산상 편성 사례관리 대상자는 2,750명이었으나, 실제 사례관리 대상자는 3,491명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자 및 실제 사례관리 지원인원 >

(단위: 명, %)

구분	보호종료아동 (A)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자 (B)	실제 사례관리 지원인원 (C)	사례관리대상자 비율	
				예산대비	실제대비
계	9,970*	2,750	3,491	27.6	35.0

* 보호종료아동('19~'23 종료아동임) ※2025년 기준 8,586명임.

자료: 보건복지부

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 필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 저조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여야겠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8,000명 지원을 대상으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2억 7,700만원(실집행률 21.3%)에 불과함. 다만, 시스템 운영비 1억원을 제외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12억원으로, 이 중 1억 7,700만원(실집행률 14.8%)이 집행됨.

< 2024년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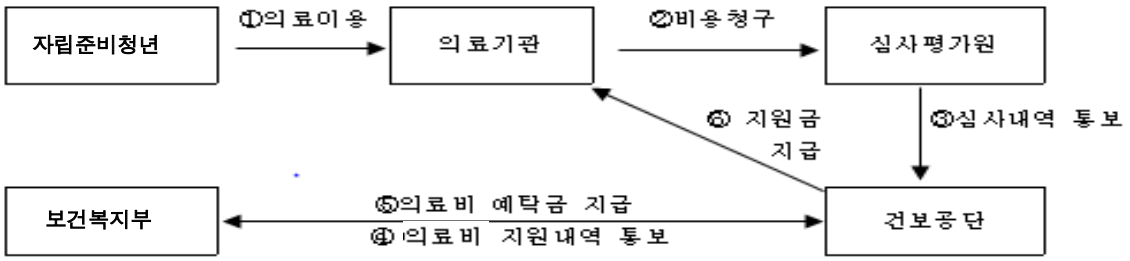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300	1,300	1,300	1,300	-	1,300	277	1,300	277	-	1,023	21.3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63]만 납부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63)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 적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이용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므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감도가 높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내역 관리를 통하여 타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 시 8,000명 이용을 예상하였으나 실인원 수는 5,328명에 그치고, 월 15만원의 단가로 편성하였으나 실인원 1인당 평균 33,200원[64] 지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2024년 예산 편성 기준 >

- **'24년 예산액 편성 기준: 8,000명 × 월 150천원**
  (인원) '17~'21년 보호종료된 대상자(약 12,300명) × 자립준비청년 중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약 65%) 기준('22년)
  (단가)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9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평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5.5만원)('22년)

64) 집행액 1억 7,700만원을 실제 지원자 수인 5,328명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임.

< 2024년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

'24. 12. 31. 기준 (단위: 건, 천 원)

합계		'23.12월		'24.1차수 (1,2,3월)		'24.2차수 (4,5,6월)		'24.3차수 (7,8,9월)		'24.4차수 (10,11월)	
지급 결정 건수	금액	지급 결정 건수	금액	지급 결정 건수	금액	지급 결정 건수	금액	지급 결정 건수	금액	지급 결정 건수	금액
22,672	176,875	27	179	5,007	35,486	5,384	42,466	7,259	58,324	4,995	40,420

* 1건당 평균 지원액은 7,807원(집행액 1억 7,700만원/ 지원건수 22,672건)
1인당 평균 지원 건수는 4.3건(22,672건/5,328명)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지원 사업 이용 인원 수,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대한 모니터링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동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5)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은 가정위탁·입양 아동 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해보험료, 심리치료 및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63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5억 300만원 중 64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8,500만원이 불용됨.

< 2024회계연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340	6,340	163	-	6,503	6,418	-	85
·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455	455	-	-	455	454	-	1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79	479	-	-	479	479	-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927	2,927	-	-	2,927	2,927	-	-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95	95	-	-	95	95	-	-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184	2,184	-	-	2,184	2,184	-	-
· 가정위탁 사업운영비	200	200	-	-	200	128	-	72
·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	-	163	-	163	151	-	12

나)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집행 실적이 낮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의 대상 아동 수 추계의 정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원래 일시보호를 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65]에 최초 1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으나,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이 매우 적어 2024년부터 전문가정위탁[66]과 통합 관리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 아동 보호·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최초 100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편됨.

< 2024년 위기아동 보호가정 및 전문가정위탁 보호 아동 현황 >

(단위: 가정, 명)

구분	위기아동 보호가정		전문가정위탁	
보호 가정 및 아동	가정	아동	가정	아동
2023년말	5	5	279	313
2024년				
1월	3	3	271	309
2월	4	4	274	312
3월	4	4	273	310
4월	4	4	272	309
5월	-	-	278	316
6월	-	-	278	316

65)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66)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가정위탁보호조치(장기보호)임.

7월	2	2	282	321
8월	4	4	290	331
9월	4	4	398	343
10월	3	3	304	353
11월	2	2	308	360
12월	3	3	306	361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실집행률은 44.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은 78.6%, 인천은 72.7%인 반면 전남은 13.8%, 경기는 22.5%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임.

< 2024년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95	95	95	95	-	95	42	95	42	-	53	44.4

자료: 보건복지부

< 지자체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서울	2,800	2,200	**78.6**
부산	7,400	1,750	23.6
대구	7,350	2,100	28.6
인천	3,850	2,800	**72.7**
광주	3,850	1,750	45.5
대전	4,450	1,400	31.5
울산	5,250	2,100	40.0
세종	2,100	1,400	66.7
경기	10,900	2,450	**22.5**
강원	2,500	700	28.0
충북	8,400	4,900	58.3
충남	9,450	5,250	55.6

전북	9,450	4,900	51.9
전남	3,300	455	**13.8**
경북	7,000	4,550	65.0
경남	2,500	-	-
제주	4,200	3,500	83.3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집행 실적이 낮은 근본적 원인[67]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음.**

□ 다음, 가정위탁 지원·운영의 내역사업인 입양대상아동[68] 보호비 지원 사업은 위탁가정 등에 보호 중인 입양 전 아동에 대한 보호비(월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60명의 입양대상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액 21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 입양대상보호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세사업 명	편성 근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 2,184백만원 - 260명×1,000천원×12개월×70%(보조율)

□ 예산 편성 보호대상아동 260명은 최근 3년간 입양대상 아동수(292명)에 가정위탁보호비율(67%)을 적용한 것이나, **입양대상아동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 수의 감소 추세 등이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지원 인원은 2024년 12월 기준 131명에 그침.**

67) 보건복지부는 아동용품구입비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지역별 전문위탁 책정 편차, 위탁가정 양육비용 수요 대비 아동용품구입비 사용 목적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함.

68)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중 입양이 적합하다고 결정된 아동으로, 입양기관 소속의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거나, 종래에 보호 중이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양 전까지 보호되기도 함.

< 최근 5년간 입양대상아동 현황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아동 수	541	433	343	332	210

* 연도말 기준, 입양기관 취합

자료: 보건복지부

< 2023~2024년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수 >

(단위 : 명)

구분	2023.12월말	2024.5월말	2024.12월말
가정위탁 입양대상아동 수	210	179	131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예산액 21억 8,400만원 중 73.2%인 15억 9,900만원만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사업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184	1,599	73.2

□ 예산 편성 기준이 26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수는 2024년 12월 말 기준 131명으로 편성 기준의 50% 수준에 불과한바, 아동 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입양대상아동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131명) 외에 아동복지시설(77명) 및 병원(2명)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도 있는바, 입양에 관한 법적 절차 진행 및 후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아동복지시설이 위탁가정보다 편의 제공 측면 등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입양 전 충분한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없는지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2024년 말 기준 입양대상 아동 보호 현황 >

계	가정위탁	시설	병원
210명	131명	77명	2명

자료: 보건복지부

6)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1333-301)[6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내역사업으로 (1) 국내·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한 안정적 사회생활 영위 도모를 위해 통합서비스 및 자조모임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및 (2)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법령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을 수행하는 입양정책지원으로 나뉘고,

2024회계연도 예산액 20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1억 1,000만원 중 2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092	2,092	18	-	2,110	2,005	89	17
· 입양인사후서비스지원	1,850	1,850	-	-	1,850	1,850	-	-
· 입양정책지원	242	242	18	-	260	155	89	17

69) 2025회계연도부터는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나) 국외입양인 지원 사업 관련 재외동포청 사업과의 협력·연계 강화 필요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입양동포 네트워크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협력·연계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내역사업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2024년 예산 18억 5,000만원)은 세부적으로 1) 국내 입양가정별 맞춤형 사후서비스 및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11억 3,340만원) 2) 국외 입양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모국 방문, 시민권 취득 지원 캠페인, 현지 적응 지원 사업(6억 5,463만원)으로 나뉨.

□ 그 중 국외 입양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외(현지) 단체 지원과 국내 단체 지원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음.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내용	운영방법	주요실적	집행액
국외입양인	국외(현지) 단체 지원	시민권 취득지원, 국외입양인 권익 신장, 심리정서 지원,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공모	[공모사업] (지원사업) 9개국 25개 단체 26개 사업 (참여인원) 5,405명(연간 누적인원) [사업운영] (사업설명회) 국내 1회, 국외 2회 (모니터링) 국내 3회, 국외 2회 (간담회) 14개 단체 156명 방문	347 백만원
	국내 단체지원	모국방문, 모국생활지원	공모	(지원사업) 3개 단체 6개 사업 (참여인원) 946명(연간누적인원)	155 백만원
		모국어연수(국외입양인 대상 한국어교육) * (1학기) 직접운영 (2학기) 지정공모	지정공모	(1학기) 9개과정 39명 수강 (2학기) 6개과정 33명 수강 (참여인원) 72명	27 백만원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한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는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5034-302]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610**
-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입양동포단체지원)	884.5 (75)
-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468.5
- 재외동포 청년인턴	257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재외동포청은 모국 초청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 유대 강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 등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2024년도 예산 16억 1,000만원) 사업을 수행하는바, 그 내역사업인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입양동포단체 지원(2024년도 예산 7,5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중 현지단체 지원사업과 대상이 동일하고, 사업 추진 체계도 유사함.

< 국외입양인 지원 사업 추진 체계 >

공모사업 시행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선정 (서류 및 면접심사)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24. 1월	‘24. 1.15.~2.8.	‘24. 2월 3주	‘24. 3월 1주
선정단체 사업비 교부	중간 모니터링 간담회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단체→**재외공관**)	결과보고서 수령 (**재외공관**→보장원)
‘24. 3월	‘24. 8월~9월	‘24. 11. 29.	‘24. 12. 13.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에 개최한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연계하여 친족 찾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모국 방문, 역사문화 체험 등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에서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음.

□ **보건복지부의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외 입양인의 심리지원 등이 포함되어 재외동포청의 해외입양동포 지원 사업보다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과 내용, 추진 체계가 유사하므로, 국외 입양인 단체와의 효율적 소통 및 네트워크 활용의 장점이 있는 재외동포청과 연계·협력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70].**

□ 그 외, 국외입양인을 지원하는 국내단체는 2025년 2개[7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데, 국외입양인의 요구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선별적 공모를 실시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단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겠음.

70)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부터 사업 이관에 대하여 재외동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이관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71) 공익법인 해외입양인연대, 사단법인 둥지

다) 연례적 연구비 이월 지양 필요

입양정책지원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이러한 반복적 이월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입양정책지원'은 입양의 전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편된 입양 체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 연구,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법령 마련, 해외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하는 내역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4,2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8,900만원은 이월, 1,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입양정책지원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242	242	18	-	-	260	155	242	137	89	17

□ 이러한 이월은 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입양실태조사 추진 연구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임.

< 2024년 입양실태조사 연구 계약 >

수행기관	연구기간	소요예산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10.~'25.6.	134백만원	공적 입양체계 전면 개편('25. 7.)을 앞두고 입양 현황·실태, 입양에 대한 인식 등 실증 자료 파악을 위한 입양실태조사 추진

□ 보건복지부는 2025년 공적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2024년 9월 구체적인 세부방안[72]을 마련한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연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월했다고 설명하나, **가급적 일반연구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하고[73]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계약 체결을 앞당기는 등 연구비 이월은 지양될 필요가 있겠음**. 특히 일반연구비의 이월은 2021년, 2023년에도 발생하는 등 연례적인 것으로 보임.

< 일반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현황 >

구분	연구내용	연구기간	이월액(백만원)
2021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보호 매뉴얼 연구	2021. 12. 7. ~ 2022. 5. 6.	7
202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2023. 10. 30. ~ 2024. 02. 29.	18
2024	2024년 입양실태조사 연구	2024. 10. 11. ~ 2025. 6. 8.	89

자료: 보건복지부

72) 조사대상자 중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예비양부모 대상 조사에 입양체계 개편 전후 실제 입양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73)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재발위험이 높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522억 7,600만원에 이·전용 감 13억 1,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509억 6,000만원 중 443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65억 8,700만원이 불용됨.

< 2024회계연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2,276	52,276	-	△1,316	50,960	44,373	-	6,587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8,202	28,202	-	-	28,202	27,436	-	766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24,074	24,074	-	△1,316	22,758	16,937	-	5,821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노력 필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영유아나 고위험입소아동 돌봄을 위한 쉼터 설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1)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 등으로부터 분리·보호하여 치료 및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240억 7,400만원으로 이 중 169억 3,700만원이 교부되어 15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13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4,074	24,074	16,937	16,937	457	17,934	15,241	16,937	15,037	820	1,333	62.5

자료: 보건복지부

□ 구체적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 124억 5,200만원, 운영비 8억 2,800만원, 사업비 19억 3,700만원, 설치비 17억 2,100만원 등임.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예산편성기준과 집행 내역 비교 >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 내역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1) 인건비 : 14,568백만원** - (기존) **161개소** × 6명 × 33,910천원 × 보조율 40% - (신규) **36개소** × 6명 × 33,910천원 × 보조율 40% × 6/12개월	**(1) 인건비 : 12,452백만원** - (기존) **151개소** × 6명 × 33,910천원 × 보조율 40% - (신규) **4개소** × 6명 × 33,910천원 × 보조율 40% × 6/12개월
	(2) 운영비 : 915백만원 - (기존) **161개소**× 12,787천원× 보조율 40% - (신규) **36개소**× 12,787천원× 보조율 40%× 6/12개월	**(2) 운영비 : 828백만원** - (기존) **151개소** × 12,787천원× 보조율 40% - (신규) 4개소× 12,787천원× 보조율 40%× 6/12개월 - (난방비) 141개소× 600천원× 보조율 40% - (냉방비) 147개소× 200천원× 보조율 40% *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3) 사업비 : 2,266백만원 - (기존) **161개소** × 31,647천원× 보조율 40% - (신규) **36개소**× 31,647천원× 보조율 40%× 6/12개월	**(3) 사업비 : 1,937백만원** - (기존) **151개소** × 31,647천원× 보조율 40% - (신규) 4개소× 31,647천원× 보조율 40%× 6/12개월
	(4) 설치비 : 6,325백만원 - (신규) **36개소** × 439,203천원× 보조율 40%	**(4) 설치비 : 1,721백만원** - (신규) **11개소**× 439,203천원×보조율 40% * 경기3, 강원1, 충북3, 전북2, 경북1, 경남1 * 부동산 평균매매가격에 따른 지역(급지)에 따라 설치단가 차이 - 서울(1급지, 631백만원), 인천/경기(2급지, 552백만원), 광역시(3급지, 446백만원), 그 외 지역(4급지, 363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4년 기준 총 15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에 240개소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각 시·도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51	8	5	3	7	5	6	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5	11	14	7	11	6	8	4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쉼터는 학대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주로 일반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며,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함. 종사자로는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두며, 1개소당 정원은 6명임.

□ 2024년에는 36개소의 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6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74], 2024년말 기준 신규 설치 쉼터는 8개소에 불과하는 등 설치 목표와 실제 설치 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 및 실제 설치 현황(년 월 기준) >

(단위: 개소, 수)

구분	'20	'21	'22	'23	'24
설치목표	76	105(+29)	141(+36)	177(+36)	213(+36)
실제설치	74	98(+24)	125(+28-1*) * 폐소 1개소	144(+19)	151(+8-1*) * 폐소 1개소

주 ( )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개소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은 이처럼 6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7억 2,100만원만 교부하였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9억 4,8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15.0%에 불과한바, 2023년 43.1%에 이어 연례적인 집행 부진 속에 실집행률은 계속 감소 추세임.

74) <2024회계연도 쉼터 설치 예산 편성 근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 6,325백만원 (36개 × 439,203천원 × 보조율 40%)

□ 보건복지부는 쉼터의 정원 대비 낮은 입소 현원, 주택 매입비에 비해 낮은 쉼터 설치 지원단가 및 인근 주민 민원 제기로 적정장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쉼터 신규 설치 신청에 소극적인 사정으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 최근 3년간 쉼터 설치 및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년	6,324	6,324	6,222	6,222	-	6,222	4,471	799	952	70.7
2023년	6,324	6,324	3,367	3,367	799	4,166	2,287	457	986	43.1
2024년	6,325	6,325	1,721	1,721	457	2,178	948	820	410	15.0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영유아나 고위험 입소아동 돌봄을 위한 쉼터 설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영유아쉼터 등 신규 설치를 위해 64억 4,100만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음.**

□ 그 외, 전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지역별 감소 추세에는 편차가 있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는 2022년 대비 2023년 아동학대가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대구·대전·울산·경기·충남·경북·제주는 2022년 대비 2023년 쉼터 보호아동 수가 증가한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쉼터 설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음.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최종 학대 판단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최근 3년간 시·도별 아동학대 및 시·도별 쉼터 보호 아동 현황 >

시·도	아동학대 현황			쉼터 보호아동 현황*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계	37,605	27,971	25,739	1,162	935	909
서울특별시	3,165	2,899	2,766	34	61	63
부산광역시	2,022	1,726	1,309	71	46	49
대구광역시	1,507	1,223	1,133	35	25	42
인천광역시	2,761	2,216	1,875	25	22	16
광주광역시	827	519	470	50	49	32
대전광역시	1,147	637	731	56	35	41
울산광역시	2,669	1,708	1,369	25	18	19
세종특별자치시	216	169	190	7	4	2
경기도	10,207	7,845	7,612	236	193	201
강원특별자치도	1,160	982	919	49	38	28
충청북도	825	690	764	73	79	66
충청남도	2,011	1,209	1,363	88	66	67
전북특별자치도	1,937	1,356	1,035	112	79	77
전라남도	1,942	1,444	1,254	116	75	37
경상북도	2,068	1,414	1,099	58	50	59
경상남도	1,944	1,510	1,351	45	51	64
제주특별자치도	747	424	499	82	44	46

자료출처: 연도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통계 기준(보건복지부 제공)

8)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취약계층 아동[75]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5만원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267억 3,300만원 중 1,261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26,733	126,733	-	-	126,733	126,112	-	621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26,733	126,733	-	-	126,733	126,112	-	621

75)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 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아동 포함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나) 대상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액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의 가입율 및 저축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함께, 열악한 가정은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대상아동 및 지원금과 매칭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부터 그 대상에 기존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외에도 차상위계층 아동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

< 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비율 확대	아동적립급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급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령 (만 12세~17세) 소득기준 중위 40%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중위 50%(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2025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 차상위계층아동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경우 가입률은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하락 추세이고 적립률도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호대상아동에 비하여 약 10%p 가량 낮은 상태임.

<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 >

연도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대상아동	가입아동	가입률	적립률	대상아동	가입아동	가입률	적립률
2020	26,505명	24,830명	93.7%	95.4%	56,837명	49,855명	87.7%	79.5%
2021	24,985명	24,669명	98.7%	95.7%	55,744명	43,812명	78.6%	81.5%
2022	27,952명	23,887명	85.5%	93.7%	52,530명	40,904명	77.9%	83.1%
2023	27,159명	23,334명	85.9%	91.0%	60,688명	39,866명	65.7%	82.1%
2024	22,802명	22,669명	99.4%	94.8%	182,875명	136,984명	74.9%	83.6%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실집행률은 주로 80% 중반을 유지하다가[76]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대상아동의 급격한 증가[77] 및 예산[78] 확대로 66.5%로 하락하였음.

<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지자체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실집행률(B/A)
2020	24,744	24,744	21,244	85.9
2021	25,038	25,038	20,863	83.3
2022	55,445	55,445	41,165	74.2
2023	49,900	47,600	42,341	84.9
2024	126,733	126,112	84,326	66.5

자료: 보건복지부

76) 2022년에는 정부 매칭비율 2배 확대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74.8%로 하락하였음.
77) 전년도 대비 대상아동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2024년 신규선정대상자가 종전 만 12세~만 18세 미만이었던 것이 만 0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교육 급여 추가 요인도 있음).
78)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가입연령이 만 0~17세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아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신규가입자가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저축을 시작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낮은 가입률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가 되면 자립 용도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하고, 24세가 되어야 용도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여 장기 저축이 강제되는 특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아동 저축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보임.

< 아동발달지원계좌 해지 >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	만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아동 사망, 이민 등	○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에서는 만기 지급·만기 해지 시 만 17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부분과, 조기 인출이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을 요건으로 아동 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변경됨)

□ 실제로, 연도별 적립 및 미적립 아동 현황을 보면, 아동이 저축을 하지 못하여 1년에 한번도 매칭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아동은 2020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전년(443명) 대비 약 40% 증가한 734명,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48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 중 97.4%에 해당하는 2,416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임.

< 연도별 적립 및 미적립 아동 현황(해당연도 1년간 미적립 아동) >

(단위: 명)

연도	계	적립아동			미적립아동		
		소계	요보호	기초수급	소계	요보호	기초수급
2020년	74,685	72,477	24,485	47,992	2,208	345	1,863
2021년	68,481	67,009	23,787	43,222	1,472	590	882
2022년	64,791	64,348	23,752	40,596	443	135	308
2023년	63,200	62,466	23,257	39,209	734	77	657
2024년	159,653	157,172	22,604	134,568	2,481	65	2,416

주1: 적립아동은 당해연도에 국가매칭금이 매칭된 사례가 있는 아동을 의미
주2: 미적립 아동은 당해연도에 1회도 국가매칭금이 매칭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
주3: 미적립 아동의 경우 지원중지 아동 및 12월 계좌개설(다음년도 1월에 12월로 소급) 아동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보호대상아동·기초수급아동의 2024년 보호유형별 가입 및 적립 현황을 보면,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 아동의 가입률은 67.3%로 보호대상아동·기초수급아동 전체 가입률 평균인 76%[79]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보호유형별 가입 및 적립 현황 >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대상아동 인원(A)	가입		적립	
			인원(B)	비율(B/A)	인원(C)	비율(C/B)
계		210,034	159,653	(76.0)	135,940	(85.1)
기초수급		182,875	136,984	(74.9)	114,455	(83.6)
보호대상	소계	27,159	22,669	(83.5)	21,485	(94.8)
	양육시설	11,250	10,281	(91.4)	9,815	(95.5)
	공동생활	2,748	2,608	(94.9)	2,484	(95.2)
	가정위탁	9,163	6,170	**(67.3)**	5,935	(96.2)
	장애인	1,505	870	(57.8)	802	(92.2)
	기타	2,493	2,740	(109.9)	2,449	(89.4)

주. 기타: 가정복귀, 소년소녀가정, 일시보호시설, 입양대상아동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 아동의 가입률 및 적립률이 저조한 것은 조부모 등 친인척 가정위탁이 전체 가정위탁 세대의 85.8%에 해당하는바, 기초생

79) 2024년 보호대상아동 가입률 평균: 83.5%, 기초수급아동 가입률 평균: 74.9%

활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위탁가정 유형(2024년말 기준) >

구분	계	중장기 보호				일시 가정위탁
		소계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 위탁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7,637	7,627	6,553	771	303	10
아동수	9,408	9,396	8,167	875	354	12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시설장이 대상 아동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가입하는 데 비해, 가정위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를 발굴하여야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및 발급 절차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따라서 <u>보건복지부는 특히 가정위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들의 가입률 및 적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액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아동, 차</u>

상위계층 아동이 꾸준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거나, 열악한 가정은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한편, 가입률 및 적립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칭을 제공하는 저축액(현재 월 5만원) 인상 및 적립금 자유 사용 연령(현재 만 24세)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80]이 제기된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1:3의 매칭율을 제공하고 있고, 희망저축계좌 Ⅱ[81]의 경우도 2025년부터 1년차에는 1:1, 2년차에는 1:2, 3년차에는 1:3의 매칭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아동(가구) 저축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직접 적립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바[82],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현행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적립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는 개정안(강선우의원안·이수진의원안) 및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존치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자산형성지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임광현의원안·최은석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바, 어떤 방식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인지에 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80)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방안 연구」, 2024. 12.
81)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 Ⅱ: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대상
82) 조윤경(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주요 국가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김상희의원실 소규모연구용역(정책연구) 자료, 2020. 2.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체안 >

구분	강선우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사업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현행 사업과의 관계	현행 대체	
정부적립금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무)	월 20만원(임의)
보호자적립금	일정 금액 추가 적립 가능(한도 없음)	-
인출 가능 시점	18세 이후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의료비 등 중도인출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아동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인출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아동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취약계층 아동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가족을 돌보는 아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 가능	-

<별도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안 >

구분	임광현의원안	본 개정안(최은석의원안)
사업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현행 사업과의 관계	현행 존치	현행 존치
정부적립금	월 10만원(의무)	월 20만원(임의)
보호자적립금	정부적립금 적립된 달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금액(임의)
인출 가능 시점	18세 이후	19세 이후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임광현의원안과 동일
정부적립금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난민인정	임광현의원안과 동일

구분	임광현의원안	본 개정안(최은석의원안)
지급 중지 및 환수	취소 및 결정 철회, 생사 불명 등	
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체신관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등록취소 및 가입자보호조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83]에 따른 신탁업자등
정부의 책무	사업자 평가,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지원, 아동 대상 교육 등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지원, 아동 대상 교육 실시 등
기타	-	서류 미제출,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 그 외, 최근 3년간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별도 사업 관리 예산 및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력 증원 등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음.

* 대상자: (2023년) 7.2만명(보호대상아동, 12～17세)→ (2024년) 20만명(보호+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0～17세)→ (2025년) 27만명(보호+기초+차상위가구 아동, 0～17세)
* 예산: (2023년) 500억원→ (2024년) 1,200억원→ (2025년) 1,500억원
* 현 관리인력: 보건복지부 1.5명(1명당 178,864명 담당), 아동권리보장원 2명(아동권리보장원 직원 1명당 아동 45,893명 담당)

83)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5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부진 예상을 이유로 299억 9,800만원이 감액된 바 있음. 이는 2025년의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을 신규 사업대상자에 추가하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이 연초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1분기 기준 차상위계층의 계좌 가입률이 25.3%[84]로 실집행률 저조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 감액으로 대상자 수는 기초생활수급아동 34,500명, 차상위계층 아동 15,000명이 감소함.

< 2025회계연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추가경정예산 >

(단위: 명, %)

사업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			증감	
		본예산	제1회추경 (A)	제2회추경 (B)	(B-A)	%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126,733	151,041	151,041	121,043	△29,998	△19.9

84) 2025년 4월말 기준임.

9)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1337-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미접종 등 정보를 활용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며, 아동 양육·생활 환경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아동정책조정 업무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노후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 18억 7,800만원 중 1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878	1,878	-	-	1,878	1,730	30	118
·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400	400	-	-	400	302	30	68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사업	1,050	1,050	-	-	1,050	1,000	-	50
· 아동학대 대응체계 활성화	100	100	-	-	100	100	-	-
· 아동학대방지 인프라기능보강사업	300	300	-	-	300	300	-	-
· 출생통보시스템 운영	28	28	-	-	28	28	-	-

나)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 주의 필요

당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심층분석연구에 대체 활용한 것은 주의가 필요함.

□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내역사업에 포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4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된바,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근거하여 당사국이 비준 2년차와, 그 이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내용을 분류하여 묶은 ‘권리 클러스터’ 기준[85]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함[86].

□ 우리나라는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대하여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 등[87]이 포함된 최종 견해를 전달받은 바 있고, 2024년에 제7차 국가 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다루게 하는[88] ‘약식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SPR)를 표준 보고 절차로 결정하면서,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존 절차를 유

85)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아동은 결코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 시 아동의 견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아동권리와 환경,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난민 아동 등)

86)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icef.or.kr)

87)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는 비차별,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 성착취 및 학대,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소년사법 운영 분야임.

88) 기존 절차에서는 국가보고서 제출부터 최종견해 이행까지 2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약식 보고 절차에서는 이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지하고자 하는 국가는 2023년 9월까지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한바, 우리나라는 약식 보고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음.

< 기존 절차와 약식 보고 절차의 비교 >

기존 절차	약식 보고 절차
① 정부 보고서 제출 ② NGO 보고서& 아동 보고서 제출 ③ 사전회의&아동회의 ④ 위원회가 정부로 쟁점목록(LOIPR) 전달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⑤ 정부 답변 제출 ⑥ 본심의 ⑦ 위원회가 국가에게 최종견해(권고사항) 전달 ⑧ 최종견해 이행 및 NGO와 아동의 지속적인 아동권리 옹호	① 쟁점목록에 대한 NGO, 유니세프 등의 준비 ② ①을 토대로 아동권리위원회가 쟁점목록(LOIPR) 작성 ③ LOIPR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 보고서 ④ 보고서에 대한 건설적 심의를 의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⑤ 아동권리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사전심의 ⑥ 본심의 ⑦ 위원회는 국가에게 최종견해(권고사항) 전달 ⑧ 최종견해 이행 및 NGO와 아동의 지속적인 아동권리 옹호

출처: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org) 약식보고절차 번역본 소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서는 기존 절차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는 '정부 보고서' 작성을 전제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나아가 **당초 예산 편성과 상이한 사업으로서 2024년 10월에 2023년도에 수행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계약기간 6개월)하여 대체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시정이 요구됨**[89].

89)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 예산은 기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보고서 제출 일정에 맞춰 '정부 보고서' 작성을 전제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국가 보고 심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달리 2024년 10월에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입장임.

1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신규설치를 지원하고, 거점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485억 6,500만원 중 44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5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8,565	48,565	-	-	48,565	44,760	-	3,805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3,331	43,331	-	-	43,331	40,526	-	2,805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2,400	2,400	-	-	2,400	1,400	-	1,000
·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1,248	1,248	-	-	1,248	1,248	-	-
·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운영	682	682	-	-	682	682	-	-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	904	904	-	-	904	904	-	-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단가 현실화, 지자체의 설치 유인 제고 등을 통해 연례적인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부족한 거점심리지원센터 근무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겠음.

□ 내역사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은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운영비·사업비와 신규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피해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임[90].

□ 2024년말 기준 전국에 9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91]으로 1,697명(상근직원 기준 정원 대비 106.9% 충원)이 종사하고 있고, 각 기관당 17.1명[92]이 근무하고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34.4건의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바, 적정수준의 사례 건수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1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90)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91) 직영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 5개소임(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92) 관장 1, 상담원 14.1,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 사무원 1.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4. 12. 기준) >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8	11	5	3	6	2	3	2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5	4	4	7	5	4	8	2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변화 추이 >

'20년('18~'20년)	'21년('19~'21년)	'22년('20~'22년)	'23년('21~'23년)
57.8건	44.9건	36.7건	34.4건

주: 3개년 아동학대사례건수 평균 / 해당연도 사례관리 상담원 수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신규 10개소를 더한 11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98개소만 설치되어 연례적으로 아동호보전문기간 신규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 >

(단위: 개소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예산상 설치목표	71	81(+10)	95(+14)	105(+10)	115(+10)	120
실제설치	69	77(+8)	85(+9-1)	92(+7)	98(+6)	100(+2)
목표 및 설치 간 차이	2	4	10	13	17	20

주1. 개소수는 누적 개소수임
주2. ( )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개소수를 의미함. 2022년은 9개소 설치 및 1개소 폐쇄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는 실제 설치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36.0%, 37.5%, 66.4%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월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

연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022년	4,200	4,200	3,190	3,190		3,190	1,509	1,607	372	36.0
2023년	2,400	2,400	2,100	2,100	1,607	3,707	2,079	1,470	158	37.5
2024년	2,400	2,400	1,400	1,400	1,470	2,870	1,906	575	300	66.4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지자체별 실집행 내역을 보면, 충남의 경우 단가에 맞는 장소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고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불용 처리하기까지 하였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	설치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계	1,400	1,470	2,870	1,906	1,400	911	575	300	66.4
서울	200	600	800	504	200	-	286	-	63.0
인천	300	-	300	300	300	300	-	-	100.0
경기	600	300	900	532	600	311	289	-	59.1
충남	**-**	**300**	**300**	**-**	**-**		**-**	**300**	**-**
경남	-	270	270	270	-		-	-	100.0
부산	300	-	300	300	300	300	-	-	100.0

□ 이러한 설치 지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신규 설치 단가(6억원)가 인상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에서 입지조건[93]에 맞는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규 설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부지 선정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신규설치에 대한 반발과 민원 등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공사시기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9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2권 p.225:).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상 목표 및 실제 계획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기준
예산상 목표	10	10	4
지자체 신청을 반영한 실제 계획	7	5	4
실제 설치 수	7	5	설치 중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최근 3년간 재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학대 건수 및 아동수는 감소 추세이나,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15~16%를 유지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층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단가 현실화 및 지자체 설치 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최근 3년간 재학대 사례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20	5,517	4,176	14.7
2021	4,475	3,469	16.0
2022	4,048	3,121	15.7

자료: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한편, 내역사업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사업은 시·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리 문제를 가진 고난도·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직접적인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거점 심리치료팀의 역할 >

○ (고난도 사례) 긴급한 개입을 요하지만, 지역 아보전 및 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등에 대해 직접 심리서비스 제공
○ (심리치료인력 역량강화 지원) 컨설팅*, 교육, 전문가 사례회의** 등으로 시·도 내 지역 아보전 및 쉼터 심리치료인력 역량 제고
* 거점 심리치료인력이 지역 아보전 인력대상 1:1로 심리치료 적절성 등 업무수행 고도화 지원
** 심리학·정신의학 전문위원 위촉, 심리학·정신의학적 사례 분석 등 논의
○ (지역 심리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시·도 내 기관 심리서비스 제공현황 조사를 통하여 심리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 시도 내 심리검사 제공현황, 심리치료 유형(인지행동, 미술·놀이치료 등) 조사
○ (전담의료기관 등과 연계) 정신학·병리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전담의료기관(정신의학, 소아정신의학) 등과 연계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시도 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아동 대상 심리서비스 제공도 검토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의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전문인력 3명(팀장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팀원 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명)씩 배치하여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94]이었으나, 2024년 12월말 기준 대전·울산·강원·충북·전남·경북은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부족하고, 전북·제주에는 근무인력이 1명도 배치되지 못하였음.

<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인력 근무 현황(2024년 말 기준) >

지역	정원	현원	
계	51	40	
서울	3	3	팀장1, 팀원2
부산	3	3	팀장1, 팀원2
대구	3	3	팀장1, 팀원2
인천	3	3	팀장1, 팀원2
광주	3	3	팀장1, 팀원2
대전	**3**	**2**	**팀장1, 팀원1**
울산	**3**	**2**	**팀장1, 팀원1**
세종	3	3	팀장1, 팀원2
경기	4	4	팀장1, 팀원3
강원	**3**	**1**	**팀원1**
충북	**3**	**2**	**팀장1, 팀원1**
충남	3	3	팀장1, 팀원2
전북	3	-	-

94) 다만, 서울시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거점심리지원팀을 운영하여 인건비는 국비 보조하지 않음

지역	정원	현원	
전남	**3**	**2**	**팀장1, 팀원1**
경북	**3**	**2**	**팀장1, 팀원1**
경남	3	3	팀장1, 팀원2
제주	2	-	-

<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	교부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계	1,248	1,248	1,001	-	247	80.2
서울	5	5	5	-	-	100.0
부산	77.7	77.7	77.6	-	0.1	99.9
대구	77.7	77.7	75.0	-	2.7	96.5
인천	77.7	77.7	76.7	-	1.0	98.7
광주	77.7	77.7	73.6	-	34.1	94.7
대전	77.7	77.7	74.9	-	2.8	96.4
울산	**77.7**	**77.7**	**57.2**	**-**	**20.0**	**73.6**
세종	77.7	77.7	73.9	-	3.8	95.2
경기	101.9	101.9	84.8	-	17.1	83.2
강원	**77.7**	**77.7**	**46.7**	**-**	**31.0**	**60.2**
충북	77.7	77.7	62.7	-	15.0	80.7
충남	77.7	77.7	62.0	-	15.7	79.8
전북	**77.7**	**77.7**	**14.7**	**-**	**63.0**	**18.9**
전남	**77.7**	**77.7**	**42.5**	**-**	**35.2**	**54.7**
경북	77.7	77.7	67.0	-	10.7	87.0
경남	77.7	77.7	77.7	-	-	100.0
제주	**53.4**	**53.4**	**29.8**	**-**	**23.6**	**55.8**

□ 이는 거점 심리치료센터 근무 인력의 처우가 민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 임상심리 관련 자격 비교('24.12월 기준) >

자격증	자격취득요건	연봉비교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복지부,국가자격)	※ 수련(3년)+자격시험+자격심사 종합병원(수련인증기관) 이상 3년 수련 + 석사학위 소지자 + 시험(필기-기초,심화, 면접)	68백만원 이상	55백만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복지부,국가자격)	※ 수련(1년)+자격시험+자격심사 종합병원(수련인증기관) 이상 1년 수련 + 학사학위 소지자 + 시험(필기, 면접)	52백만원 이상	37백만원
임상심리사 1급 (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	※ 자격시험 시험통과 시 자격 취득 (필기+실기(임상실무))	41백만원 이상	31백만원
임상심리사 2급 (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	시험통과 시 자격 취득 (필기+실기(고급 임상실무))	34백만원 이상	31백만원
임상심리전문가 (발급 : 한국심리학회 시행 : 한국임상심리학회, 민간자격증)	종합병원(수련인증기관) 이상 수련(수련위원회 등록,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3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1년 이상) + 필기(기초, 심화) + 면접 및 자격심사(전문가 윤리, 심리평가 사례수, 심리치료 사례수 등)	68백만원 이상	55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종사자 배치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시·도 심리치료센터 정원이 3명으로 대부분 동일하나, **안정적인 심리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도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사례 건수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겠음**.

□ 구체적으로,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살펴 보면 지역별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라 시·도별로 심리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심리지원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 >

(단위: 명, 건수, %)

시·도	추계아동인구 (명)	아동학대 사례(건)	시·도 아동학대 사례 /전국 아동학대 사례 (%)
서울특별시	**1,069,644**	**2,766**	**10.7**
부산광역시	402,108	1,309	5.1
대구광역시	319,865	1,133	4.4
인천광역시	423,655	1,875	7.3
광주광역시	220,954	470	1.8
대전광역시	206,588	731	2.8
울산광역시	169,901	1,369	5.3
세종특별자치시	85,565	190	0.7
경기도	**2,059,291**	**7,612**	**29.6**
강원특별자치도	193,577	919	3.6
충청북도	221,164	764	3.0
충청남도	312,412	1,363	5.3
전북특별자치도	234,526	1,035	4.0
전라남도	234,998	1,254	4.9
경상북도	331,860	1,099	4.3
경상남도	473,199	1,351	5.2
제주특별자치도	109,989	499	1.9
계	7,069,296	25,739	100%

자료: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재구성

1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2537-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개발 및 관리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 후속과제 및 정책 환류 등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 예산 8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 2,100만원이고, 이 중 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6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8,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848	848	73	-	921	753	86	82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전문가 회의체 운영	328	328	-	-	328	308	-	20
·정책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비	520	520	73	-	593	445	86	62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구와 정책간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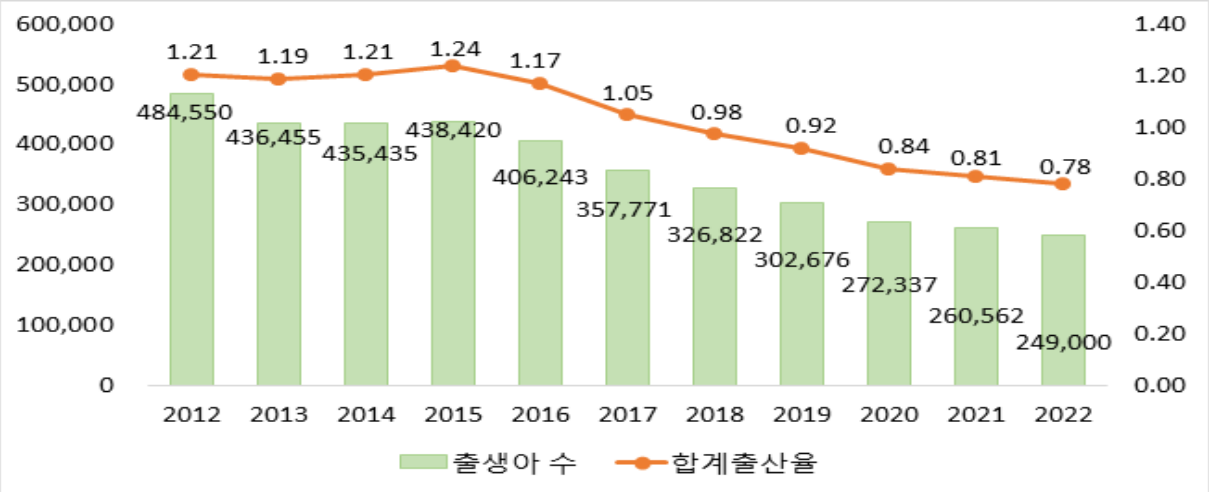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일반연구비의 집행에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과 연구활동이 정량적인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연계가 성립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더 혁신적인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느 나라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을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이라고 하고, 그 값은 2.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계속 줄어들었고[95], 그 결과로서 출생아 수도 같은 기간 48만 4,000여명에서 24만 9,000여명으로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인구 수준 및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2년~2022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러한 추세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96], 사회보장 정책

95) 참고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마지막으로 2.1명 이상이었던 시기는 1982년으로 파악되고 있고, 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2023년은 합계출산율이 0.72명, 출생아 수는 23만 28명이며, 2024년은 합계출산율이 0.75명(잠정),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잠정)임.

96) "15~64세 생산가능인구, 20년 후엔 약 1000만명 감소"(2024.5.6.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반도미래인구연구

및 연금 재정의 압박, 지역 소멸 및 농어촌 붕괴, 내수시장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보임.

□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동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저출산 정책 연구 정책연계 실적'으로 하고 2024년 목표를 13.3건으로 설정하였으나, 내역사업 '정책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비'에서는 9개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9건 모두를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21~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저출산 정책 연구 정책연계 실적 (단위: 건)	목표	10.3	11.3	12.3	13.3	13.3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 증가(최근 3년치의 평균수준* 반영) *(최근 3년 실적)
	실적	15	10	14	9	-	
	달성도	145.6	88.4	113.8	67.7	-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의 연구 용역 목록>

연번	과제명	예산 (백만원)	기간 (월)	수행 기관	연구내용
1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홍보 전략 연구	19.9	'24.1.~3.	에스코토스 컨설팅	홍보대상 설정 및 대상별 맞춤 홍보콘텐츠 제작 등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4년 홍보계획 수립
2	저출생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장기요양 재정 개선방안 연구	50	'24.5.~1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
3	학교자율시간 연계	50	'24.6.~12.	한국교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과

원은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엔 2,717만 명으로 감소하고, 전체 인구의 경우 2023년 5,171만 명에서 약 40년 후인 2065년에는 4,000만 명이 무너져 3,96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연번	과제명	예산 (백만원)	기간 (월)	수행 기관	연구내용
	초등학교 3·4학년 인구교육 컨텐츠 개발 정책 연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하여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교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4	**13세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	49.5	'24.7.~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 및 특성 분석, 지원 방향 제시
5	**인구변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및 재정립 방안 연구**	40	'24.7.~'2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및 향후 인구변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 사례관리 서비스 관련 해외사례 분석
6	**기업경영인 인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연구**	30	'24.8.~1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미래전략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기업경영인 인구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7	**공공·민간종사자 인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수립 및 표준교재 개발 연구**	72.3	'24.8.~1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구정책 및 교육현황 자료 분석, 인구역량 도출 및 교육체계 수립, 대상별 맞춤교육을 위한 인구역량 강화과정 표준교재 개발 및 인구역량교육 지원 관리체계 제안
8	**저출생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과제 발굴 연구**	79.5	'24.9.~1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저출생추세 반전 대책('24.6.)」 이후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9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80	'24.10.~'25.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구변화가 지역 노동수급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노인 돌봄 인력 전망과 정책 대응, 인구변화로 인한 교육 부문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연구된 과제가 장기요양 재정 개선 방안, 초등학생용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가족돌봄아동 현황과 지원 방안, 기업경영인의 인구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성과지표가 연구와 정책의 연계 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성과지표가 요구하는 연계로 인정받을지는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의 것일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은 구체적인 정책과 독립적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를 장려하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어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건들[97]을 모두 정책연계 실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성과 달성도를 측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측정 방식에 따르면, 한정된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소규모 액수 단위의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그 질적인 평가는 배제된 채 높은 성과 달성도를 보일 수 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크거나 거대 담론을 다루는 연구과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구조가 됨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연구가 정책과 연계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양적 단계를 넘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과제에 대하여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음.**

97) 2021년은 '제3차 세계고령화총회 유치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 '아동기본법 제정안 마련 연구' 등 15건, 2022년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등 10건, 2023년은 '세종시 출산율 연구', '지역사회 양육친화 문화조성 연구' 등 14건' 등으로 매년 목표치와 일치함.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2537-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 예산 104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3,900만원과 이·전용등 14억 9,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2억 3,200만원이고, 이 중 120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497	10,497	239	1,496	12,232	12,023	-	209
·사무처 운영비	3,383	3,383	239	1,496	5,118	4,912	-	206
·정책소통 및 기본계획 홍보	7,114	7,114	-	-	7,114	7,111	-	3

나)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 사업의 중복 지양 및 적극적인 인구 문제 해결 지향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추상적인 인식개선 수준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책소통 및 기본계획 홍보’ 내역사업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인식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광고 송출,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2024년도에 70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같은 목적으로 2023년에는 23억 5,400만원을 집행한 것과 비교할 때 인식개선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됨.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비 집행 내역>

	2024년 집행내역		2023년 집행내역	
구 분	집행액	세부 추진 내용 및 성과	집행액	세부 추진 내용 및 성과
대국민 캠페인 및 광고 송출	5,859	- 캠페인 슬로건 제작 - 캠페인 영상 총 3종 제작 - 대국민 캠페인 TV광고 송출(SBS, KBS, tvN, JTBC, MBC 등) - 저출생 대책 언론사 온라인 배너광고 등 - 대국민 캠페인 온라인 광고 송출(유튜브, 네이버, SMR 등) - 일·가정양립 문화조성 라디오 광고 송출(CBS, MBC, SBS, KBS 등) - 저출생 대책 홍보브로슈어 제작 및 전국 배포(10만부) - 기관소개 브로슈어 제작· 배포 등 - 저출생 대책 및 결혼·출산·육아 긍정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총 8개	2,123	- 캠페인 영상제작 (2종) - 대국민 영상공모전(692건) - 라디오 광고 제작(2종) :아이행복 대국민 캠페인 TV광고 (SBS, KBS, tvN, JTBC, MBC) - 가족친화문화조성 캠페인 라디오 광고 (SBS, KBS, MBC, CBS 등 5개 채널) - 가족친화문화조성 대국민 캠페인, 아이행복 대국민 캠페인 온라인 광고(유튜브, 인스타그램, SMR, 네이버, 어드레서블TV 등)

	2024년 집행내역		2023년 집행내역	
구 분	집행액	세부 추진 내용 및 성과	집행액	세부 추진 내용 및 성과
		방송국 39편)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	1,013	- 인구비상대책회의 1,3차 행사영상 - 대국민 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구축·홍보(온라인 영상 14편 등) - 대국민 정책공모전(2,196개) - 양육부모 인터뷰 영상제작(47편) - '저출산고령화' 관련 언론스크랩 및 매주 언론동향 보고서	91	- 양육부모 인터뷰 영상제작(15편) - 저출산 인식과 미디어 역할 간담회 매주 언론모니터링(총 17회)
SNS 및 채널운영	140	- 위원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4개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유튜브 채널용 정책 소개 영상(10편), 각종 언론 및 행사영상, 인플루언서 협업(5편 영상, 15편 기사), 대국민 이벤트(2회) - 인포그라픽·카드뉴스, 뉴스레터 제작·배포, TMB뉴스 등 SNS용 홍보콘텐츠 제작·게시	140	- 위원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4개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유튜브 채널용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10편), 정책소개영상 및 포럼 영상 등 - 인포그라픽·카드뉴스, 뉴스레터 제작·배포, TMB뉴스 등 SNS용 홍보콘텐츠 제작·게시
합계	7,012		2,354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다만, 동 내역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2537-301)[98]' 사업과 그 목적 및 사업 수행 방식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통하여 2012년부터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99] 행사를 개최하고, 2016년부터 새로운 가족문화

98)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3억 3,400만원이고, 집행액은 43억 2,100만원이며, 이 중 대국민 정책홍보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8억원이고, 집행액은 17억 9,100만원임.

99)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Five Billion Day'를 계기로, 1989년 UN의 개발계획(UNDP)이 이를 기념하여 지정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만들기 캠페인인 ‘가나다 캠페인[100]’을 수행하며, 2019년부터 새로운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함께 육아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영상인 ‘아이와 함께, 감탄생활[101]’ 광고는 대표적 사례임.

□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별개의 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양쪽에서 추진하는 개별 캠페인이나 홍보 콘텐츠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2024년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영상인 ‘아이와 함께, 감탄생활’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작한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은 모두 육아하는 부모의 보람과 기쁨, 영유아의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므로 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1982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하강하기 시작한 이후 4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뚜렷한 반등을 보인 해가 없이 2024년 0.75명까지 하락해 왔고, 같은 기간 동안 일시적 반등을 보인 해는 있었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없었으며 그 수준조차도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의 반등이었다는 점[102],

---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0)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의 약자임.

101) 아이와 함께 감탄생활「1탄-아빠의 탄생」, 「2탄-엄마의 탄생」 등이 있음.

102) 예컨대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9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06년 1.13명으로 반등하여 2007년에는 1.26명까지 상승하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2017년 1.05명 이후에는 계속 1.0명 이하로 내려가서 2024년에는 0.75명까지 하락한 상황임.

<1982년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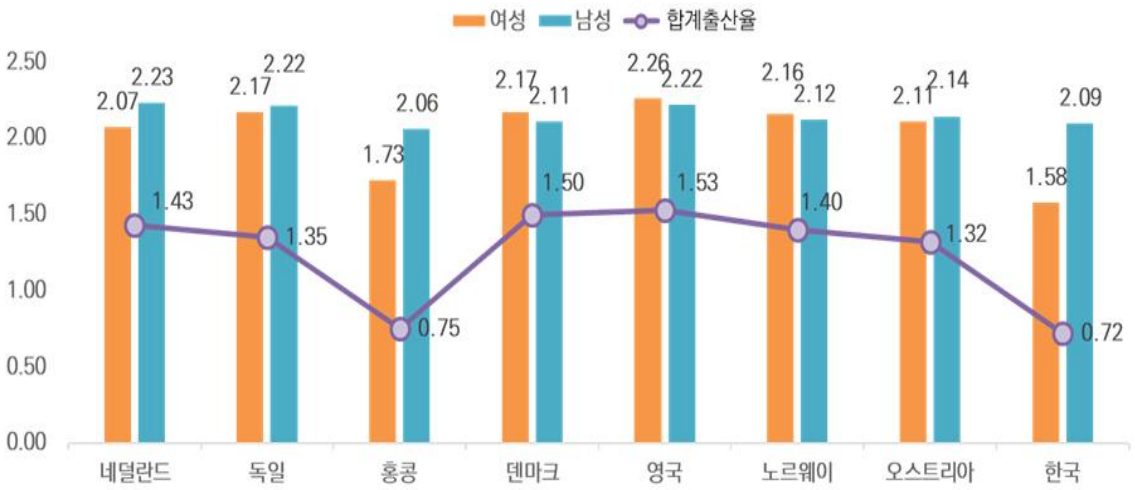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1982	2.39	2004	1.16
1983	2.06	2005	1.09
1984	1.74	2006	1.13
1985	1.66	2007	1.26
1986	1.58	2008	1.19
1987	1.53	2009	1.15
1988	1.55	2010	1.23
1989	1.56	2011	1.24
1990	1.57	2012	1.30
1991	1.71	2013	1.19
1992	1.76	2014	1.21
1993	1.65	2015	1.24
1994	1.66	2016	1.17
1995	1.63	2017	1.05
1996	1.57	2018	0.98
1997	1.54	2019	0.92
1998	1.46	2020	0.84
1999	1.43	2021	0.81
2000	1.48	2022	0.78
2001	1.31	2023	0.72
2002	1.18	2024	0.75
2003	1.1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데이터 수집

정부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저출산 대응 캠페인이 청년에게 정책에 대해 호감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조사도 있고[103], 또한 어느 연구결과[104]에 따르면 향후 3년 이내 출산 의향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성의 경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향후 3년 이내 출산의향(평균)과 합계출산율 비교 >



주: 1. 5점 척도: 전혀 없음=1 - 확실히 있음=5; 평균=가중치 부여 후; 파트너가 있는 만 19~49세 응답자
2.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출처: OECD Family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동 사업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의 목표[105]가 단순히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출산율 반등

103) 예컨대 '10명 중 9명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캠페인, 오히려 반감"(세계일보, 2024.5.2.) 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는데, 응답자의 90.8%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 응답자 중 89.6%가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과거 저출산 대응 캠페인에 대한 청년세대의 느낌을 조사한 결과, "청년세대를 동원하려는 정책이라는 생각에 반감이 든다"는 응답이 48%로 높았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6)

1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5년 7월 17일(목) 에 개최한 제140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공개된 「저출생·가족패널조사」예비조사의 일부 주요 결과임.

105)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2537-302)의 성과지표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2024년의 경우 목표는 8회, 실적은 13회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지에 대한 효과는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까지 목표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업의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결혼·출산·육아를 하겠다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린 문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의 영속과 성장을 위하여 결혼·출산·육아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그 자율권의 영역에 개입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세심하게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가 향후 어느 특정 시점에 결혼·출산·육아 관련 인식의 개선에 성공하더라도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이나 고령사회 대비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조차 인구 문제가 더 심화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다각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홍보 관련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추상적인 인식개선 수준을 넘어 출산율 반등이나 고령사회 대비에 도움이 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음.**

13)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취약청년을 위한 신규 복지정책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6억 8,900만원이었고, 이 중 3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2,1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689	3,689	-	66 △66	3,689	3,638	30	21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2,094	2,094	-	-	2,094	2,094	-	-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1,309	1,309	-	-	1,309	1,309	-	-
·청년정책개발연구	200	200	-	50 △50	200	149	30	21
·2030 자문단 운영	67	67	-	△16	51	51	-	-
·청년정책팀 사업비	19	19	-	16	35	35	-	-

나)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집단으로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라는 두 집단을 설정[106]하고 있는데,

가족돌봄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고, 고립·은둔청년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4개 광역시·도[107]에 전담 지원체계로서 '청년미래센터'를 사회서비스원 또는 기업진흥원에 설치하여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시범사업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106)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26일부터는 지원대상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으로 보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107) 인천, 울산, 전북, 충북임.

<청년미래센터의 지원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주요 내용>

◯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역** 내 **중고교**·병원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청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 전담인력이 현금지원과 연계해 자기발전계획 함께 작성, 아픈 가족을 위한 복지·돌봄서비스 외에도 교육장학금·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자기돌봄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960명), 우리카드 **先포인트** 지급(**자기돌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후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자조모임,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소통기술 습득, 간단한 일 경험 등

*자료: 보건복지부

다) 가족돌봄비 지원 관련,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과 비교 검토 필요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의 실집행률이 2024년말 기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연 200만원의 지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여 이월과 정산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수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요건[108]을 충족하는 청년은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아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동 내역사업 2024회계연도 예산 20억 9,400만원 중 13억 4,400만원을 차지함. 자기돌봄비는 2024년 12월 기준 실집행액은 1억 4,400만원(10.7%)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의 기간 내에 자기돌봄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2025년 5월 기준 실집행액은 그보다 높은 8억 6,000만원(64.0%)임.

<2024회계연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실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24.12. 기준	2025.5. 기준*
예산현액(A)	1,344	1,344
실집행액(지자체, B)	144	860
실집행률(B/A)	10.7	64.0

※ '24년 이월된 자기돌봄비는 2025년 6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으로, 정산에 따라 실집행액 증가 예상

*자료: 보건복지부

108)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① 돌봄필요가족과 동거하고 있을 것 ② 돌봄을 전담하고 있을 것 ③ 가구의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일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집행 방식은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2024년에 자기돌봄비를 신청하고 그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가재정법」에서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부측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실집행률이 올라가는 구조임[109].

□ 다만, 청년정책의 다른 사업인 '자립준비청년[110] 자립수당 지급[111] (1331-303)' 사업의 경우와 지원금액 및 지원 방식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매월 50만원을 계좌 입금 형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실집행 예산의 이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방식은 수혜자 입장에서도 사용처의 제한 없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소비 또는 저축할 수 있어서 바우처 포인트 차감 방식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자기돌봄비 지급의 목적이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청년 본인의 미래준비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처를 제한하고,

---

10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110)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111)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그 확인을 위하여 바우처 포인트 차감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돌봄비와 자립수당은 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목적이 다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비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요건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 ○돌봄필요가족과의 동거 및 돌봄전담 ○가구의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112]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연간 200만원	매월 50만원
지원 방식	바우처 포인트 차감	계좌 입금
사용처 제한	○유흥업소 등 당사자의 미래준비와 무관한 업종 등은 사용제한, 매월 우리카드사로부터 지출내역 확인	○제한 없음

□ 또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가 연간 2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청년 가구의 소비지출 분석 결과[113]에 기반한 것인데, 그 내용은

112) 단, 아동복지시설은「아동복지법」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뜻하며,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113) 2022.3.10.~2022.11.30.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내용임.

일반적인 청년이 가족돌봄청년에 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 문화비, 통신비 부문에서 연 200만원(월 17만원) 정도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 청년 가구의 소비지출 현황 >

(2020년 기준, 단위: 만원/월)

	청년(13~34세)가구			
	전체	일반 (A)	가족돌봄청년 (B)	(A) - (B)
- 교육비(A)	16.46	16.57	6.87	9.70
- 문화비(B)	12.83	12.90	7.27	5.63
- 통신비(C)	10.10	10.12	8.45	1.68
(A+B+C)	39.40	39.59	22.59	**17.01**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상기의 조사 결과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이나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평균적인 삶의 질의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연간 600만원(월 50만원[114]*12개월)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처를 불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정책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형평성의 문제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이슈나 실집행액의 과도한 이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적정한 지원금액 규모과 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4) 참고로 자립수당 금액은 2019년 월 30만원으로 시작하여 2022년 8월부터 월 35만원, 2023년 1월부터 월 40만원, 2024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증액되어 왔음.

라) 고립·은둔청년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고립·은둔청년은 가족돌봄청년보다 수가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2024년 사업 추진의 결과로는 오히려 발굴된 청년 수가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구성되는데, 보건복지부가 2024년 8월부터 전국 4개소에서 우선 수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총 1,242명이 발굴되어 818명[115]을 밀착 사례관리 중이며,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2,900명 이상의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하여 발굴된 지원대상자는 668명임.

< 청년미래센터별 가족돌봄청년 발굴 현황 >

(2025. 3. 31. 기준, 단위: 명)

	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가족돌봄청년	**1,242**	427	275	126	414

*자료: 보건복지부

< 청년미래센터별 고립·은둔청년 발굴 현황 >

(2025. 3. 31. 기준, 단위: 명)

	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고립·은둔청년	**668**	323	89	112	144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을 위하여는 자기돌봄비 지급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거 중인 돌봄필요

115) 이 중 자기돌봄비 지급 대상자는 627명임.

가족에게는 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받게 되며,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둔[116]청년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은둔청년 공동생활 프로그램 >

- **(개요)** 혼자서는 은둔 공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청년 대상 또래와의 공동생활(숙식) 등을 통한 일상회복 지원
- **(프로그램 내용)** 공동생활 규칙 마련, 일상생활 관리, 상시 교류 등
  * 공동생활프로그램 참여자도 주간에는 청년미래센터 프로그램 함께 참여 권장
  - **(공동생활규칙)** 입소자들이 합의하여 스스로 생활 규칙 마련
  - **(일상생활기술)**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옷 정리하기, 집 관리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기술 습득
  - **(자기보호기술)**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약물중독교육 등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 습득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117]에 따르면, 전국에 가족돌봄청년은 9만 2,000여명, 고립·은둔청년은 전국에 53만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발굴 현황은 가족돌봄청년은 1,242명, 고립·은둔청년은 668명에 불과하여 인원 수가 약 6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청년의 발굴 실적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118].

116) 보통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은둔'은 고립의 개념을 충족시키면서 물리적 공간 안에 자아를 가두어 놓는 상태까지를 가리킴.

117)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분석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23. 보건사회연구원),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 ('23, 보건사회연구원)임.

118)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에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의 경우 2,400명, 그 중 자기돌봄비 지급은 960명을 목표로 하였고,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는 320명을 목표로 하였는데, 고립·은둔청년의 심리적인 특수성상 발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있어서 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현황>

(단위: 명)

		가족돌봄청년*(13~34세)	고립은둔청년**(19~34세)
광역시	서울	13,954	108,763
	부산	6,130	30,465
	대구	4,243	16,837
	인천	5,492	34,932
	광주	2,899	8,523
	대전	2,829	18,210
	울산	1,726	16,959
	세종	409	6,905
광역도	경기	20,191	162,380
	강원	3,412	17,028
	충북	3,502	13,495
	충남	4,284	15,607
	전북	4,885	9,313
	전남	5,138	14,745
	경북	5,345	24,398
	경남	6,102	28,863
	제주	1,552	5,148
계		92,093	532,571

* 가족돌봄청년 규모: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분석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23. 보건사회연구원)

** 고립은둔청년 규모: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 ('23, 보건사회연구원)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접촉과 개입을 회피하는 고립·은둔청년이 갖는 특성상, 자발적 접근 유도를 위해서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가 필수적이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며[119],

2024년 11월 어느 요식업체 앱을 통해 2주간 홍보를 진행한 결과, 고립·은둔청년 1,653명이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청년미래센터 탈고립·은둔 프로그램 참여로 연계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 홍보의 실효성은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참고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7년 3월 26일부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을 위하여 실업급여 이력, 학교생활기록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20].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청년의 발굴에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지원대상자들의 심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소통수단을 찾아내어 활용하고, 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119) 다만, 고립·은둔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절실했다면, 예산조정을 통하여서라도 시행하는 편이 바람직함.

12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제24조(위기아동·청년 데이터 제공·활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3. 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전담조직 개소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4개소는 당초에는 2024년 3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같은 해 8월 14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8년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개소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은 2024년 8월 14일에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곳에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원 또는 기업진흥원에 설치되어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전담조직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금원 중 상당 금액이 불용되는 등 실집행률이 낮게 측정되고 있는데, 특히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실집행률은 24.3%로 저조함.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2024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인천광역시	523.5	108.8	403.7	11.0	20.8
울산광역시	523.5	146.4	331.5	45.6	28.0
충청북도	523.5	87.5	249.8	186.2	16.7
전북특별자치도	523.5	166.1	355.5	1.9	31.7
합계	2,094	508.8	1,340.5	244.7	**24.3**

*자료: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2024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인천광역시	327.3	196.3	62.8	68.2	60.0
울산광역시	327.3	145.0	27.9	154.4	44.3
충청북도	327.3	146.6	61.1	119.6	44.8
전북특별자치도	327.3	135.1	69.9	122.3	41.3
합계	1,309.2	623	221.7	464.5	**47.6**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불용액이 큰 것은 동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재원 마련 및 청년미래센터 공간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3월로 예정했던 개소일이 8월 14일로 미뤄졌고, 전담조직의 인력 채용이 지연되거나 결원인 채로 운영된 영향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음.

특히, 전담조직의 인력 결원에 관하여는 유사 직종에 비하여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 수준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예컨대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청년 전담인력의 경우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39명으로 자립준비전담기관 전담인력의 1인당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대상자 수인 17명과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수준임에도 월 인건비는 289만원으로 자립준비전담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37만원의 85.7% 수준임.

<청년미래센터 및 유사 직종 간의 사례관리 대상자 수 및 인건비 비교>

(단위 : 명, 만원)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21] (고립은둔청소년 사례관리)	자립준비전담기관[122]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 (가족돌봄) 39 ('25.5) (고립은둔) 11 ('25.5)	(고립은둔) 10 ('25.5)	- (자립준비) 17 ('24.12) (고립은둔) 10 ('24.12)
월 인건비('25)	- (가족돌봄) 289 (고립은둔) 305	(고립은둔) 340	- (자립준비) 337 (고립은둔) 408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전담인력의 채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까닭에 사업이 시작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 청년미래센터 정원 대비 평균 현원은 82%(=46명/56명) 수준에 그쳤고, 전북의 경우는 57%(=8명/14명)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12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122)「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년 청년미래센터 지역별 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4개 시·도	정원	현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56	39	45	51	49	48	46
울산	정원	현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4	12	14	14	14	13	13
충북	정원	현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4	8	12	13	11	13	11
전북	정원	현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4	5	5	10	10	8	8
인천	정원	현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4	14	14	14	14	14	14

*자료: 보건복지부

□ 전담인력의 결원이 발생할수록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고, 동 사업이 지원대상자와 밀착형 사례관리 형식인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서비스 제공 인력이 상시로 근무해야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4개소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우수한 전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는 문제는 향후에 신규로 설치될 청년미래센터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될 문제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전담조직 인력의 채용이 부진했던 이유가 파악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향후 전국적 전담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아동수당 지급(25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123]에 따라 만 8세 미만(0~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조 1,114억 7,100만원이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공간 조성, 기능 강화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을 위하여 12억 800만원이 2차례 전용(2024. 3. 20. 및 2024. 10. 22.)되어 예산현액은 2조 1,102억 6,300만원으로 2조 1,102억 4,700만원 집행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아동수당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2,111,471	2,111,471	-	△1,208	2,110,263	2,110,247	-	16
· 아동수당 급여	2,111,371	2,111,371	-	△1,208	2,110,163	2,110,163	-	-
· 제도운영사업비	100	100	-	-	100	84	-	16

123) **「아동수당법」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오지급액 환수 철저 및 부적정한 전용 지양 필요

아동수당 오지급액에 대한 환수를 철저히 하고, 부적정한 전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급연령의 경우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동일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조 7,946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동수당과 관련한 업무 흐름도를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접수 처리를 하고,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및 지급을 하게 되는바, 이후 시·군·구는 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사실이나 지급 정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고발 및 환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수행함.

< 사후관리 및 급여액 환수 >

◎ 사후관리(시·군·구)
· 아동수당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관리
  - 인적 사항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
· 신고 기관: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 확인 방법: 행복e음을 통한 공적 자료 확인
  - 본인 신고 시,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 변경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서면 원칙)
  * 필요한 경우 전화, 구두안내, sms, 전자우편 통지를 병행할 수 있음.
· 서류, 자료 제출 거부, 거짓 서류(자료) 제출, 조사·질문 거부·방해, 기피, 거짓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 변경, 수급권 상실, 주요 변경사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급여액 환수(시·군·구 사업 담당)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고발(부정수급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

· 서면통지 원칙

·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납부 고지→ 납부 독촉→ 압류(촉탁)→ 공경매 처분→ 징수금액 처리→ 종결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 위반행위 여부 확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과태료 부과 통지→ 압류(촉탁)→ 공경매 처분→ 징수금액 처리→ 종결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환수 대상은 ① 수급권 상실[124]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지급정지[125] 기간 중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임.

□ **최근 3년간 오지급 발생 및 이로 인한 환수 현황을 보면 매년 오지급 규모는 확대(2022년 9억 3,236만원, 2024년 27억 3,202만원)되고 있는 가운데, 오지급을 최소화하면서[126] 철저한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124) **「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5)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6) 보건복지부는 오지급 최소화를 위해 출국 후 90일이 경과한 아동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팝업 알림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해외체류 아동의 명단을 매 분기 지자체에 통보·정비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최근 3년간 오지급 현황 >

('25년 4월 기준(누적))

환수대상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율(금액기준)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율(금액기준)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율(금액기준)
부정수급보장비용징수	3건	350만원	68.9%	18건	1,915만원	58.4%	4건	572만원	47.8%
반환명령	2,761건	9억 2,886만원		6,155건	22억 1,280만원		4,600건	27억 2,630만원	
합계	2,764건	9억 3,236만원		6,173건	22억 3,195만원		4,604건	27억 3,202만원	

※ 부정수급보장비용징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반환명령(부적정·과오지급)
* 환수사유의 대부분은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지급 정지이며, 이 경우 환수는 차감상계로 진행

□ 한편, 2024회계연도에는 '아동수당 지급' 사업 예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 예산으로 연초('24. 3. 20.)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2억 800만원의 전용이 이루어졌음.

< 이·전용 세부 내역 >

구분	세부사업명(~에서)	금액	세부사업명(~으로)	사유
전용 ('24. 3. 20.)	아동수당 지급	△99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 3. 26.)에 따른 인건비, 사무공간 조성 등 처우개선 소요예산 확보 필요
전용 ('24. 10. 22.)	아동수당 지급	△2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 전용 발생 사유는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 3.

26.)에 따른 인건비, 사무공간 조성 등 처우 개선 소요 예산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나, 이러한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에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이고, **특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의무적 법정 경비인 아동수당에서 경직성 경비 충당을 위해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

15) 아동복지시설 등 인건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24년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인건비 예산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312억 3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45억 6,800만원, 공동생활가정 27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8억 3,000만원 집행되고 23억 7,300만원 불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24억 5,100만원 집행되고 21억 1,700만원 불용, 공동생활가정은 261억 2,900만원 집행되고 8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일반회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아동보호전문기관	31,203	31,203	-	-	31,203	28,830	-	2,373
· 학대피해아동쉼터	14,568	14,568	-	-	14,568	12,451	-	2,117
·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27,013	27,013	-	-	27,013	26,129	-	884

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뿐만 아니라,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요보호아동그룹홈 등 국고지원 3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인구아동정책관실 소관 국고지원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12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준수율 현황을 보면 매년 개선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들 3개 시설은 모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2023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92.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1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② (생 략)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 인구아동정책관실 소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가율 ('20~'24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84.3	87.2	92.5	93.2	95.4	11.1
학대피해 아동쉼터	84.3	87.2	91.1	91.2	92.7	8.4
아동보호 전문기관	87.4	90.5	94.2	95.0	96.2	8.8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뿐만 아니라,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요보호아동그룹홈 등 3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128])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2024. 11.)에 따르면, 근로여건 개선 희망과 관련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51.3%로 가장 높았고,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이 11.7%,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이 11.6%로 조사되었음.

< 근로여건 개선 희망 >

개선 시급 과제	'20년 조사	'23년 조사
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45.3%	51.3%
②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15.8%	11.7%
③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으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11.4%	11.6%
④ 기타(승진연한 및 경력인정 개선, 수당 신설, 대체인력 확대 등 9종)	27.7%	25.4%

1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 지역아동센터 지원(1338-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39억 3,000만원 중 336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3,930	33,930	-	-	33,930	33,694	189	47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192	4,192	-	-	4,192	4,192	-	-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8,286	28,286	-	-	28,286	28,097	189	-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979	979	-	-	979	979	-	-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353	353	-	-	353	350	-	3
· 경상경비	120	120	-	-	120	76	-	44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129]된 것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4,206개소가 운영 중으로 약 11만명의 아동이 이용 중임.

129)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2024. 12. 기준) >

(단위: 개소,명)

센터 수	운영 주체 현황 (개소)				이용 아동 수		종사자 수
	개인	법인	단체	공립	정원	현원	
4,206	1,811 (43.1%)	2,195 (52.2%)	169 (4.0%)	31 (0.7%)	119,875 (센터별 28.5)	110,838 (센터별 26.3)	12,717 (센터당 3.0)

자료: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이나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등)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함. 다만,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은 70%까지 일반아동을 등록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

구분	우선돌봄아동	일반아동
연령	○ 18세 미만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등	
소득 및 가구 특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의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자료: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서 발췌

나) 아동복지교사의 안정적 관리 및 지역아동센터 외 파견 확대 필요

시·도별 아동복지교사 배정교사 중 특히 단시간(12시간) 근무자의 퇴사율이 높은바, 처우 개선 등을 통하여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상담·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및 파견하는 사업임.

- 채용 기준은 만 19세 이상으로 분야별 학습지도가 가능한 사람이며, 특화분야(주 40시간 근무)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과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함.

< 아동복지교사 활동분야 >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기본분야 (주12시간, 주25시간)	기초학습	- 기초학습교육(학습코칭・수준별 학습지도・학습부진아 지도)
	외국어지도	- 외국어기초지도・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독서지도	- 독서・그룹독서・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예체능지도	- 예체능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
	다문화・장애아동 지도	- 다문화아동 / 장애아동 지도
	기타	- 시군구청장이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특화분야(주40시간)		- 지역사회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연계 등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배정 교사 대비 11.6%의 인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퇴사하였고, 특히 단시간(12시간) 교사의 퇴사율(14.4%)이 전일제(25시간) 교사의 퇴사율(10.6%)보다 높은 편임.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내역사업 최근 5년간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예산액	27,208	29,966	30,581	29,967	28,286
	실집행액	23,694	25,182	25,573	26,961	25,844
	실집행률	87.1	84.0	83.6	89.9	91.4

자료: 보건복지부

< 시·도별 아동복지교사 근무현황(2024. 12.) 기준 >

시도	배정 교사 수	근무 아동복지교사 현황 (2024. 12. 기준)				근무 아동복지교사 누적 퇴사 현황(2024. 1.~12. 기준)			
		계	기본분야		특화분야 (40시간)	계	기본분야		특화분야 (40시간)
			단시간 (12시간)	전일제 (25시간)			단시간 (12시간)	전일제 (25시간)	
합계	3,472	3,690	687	2,789	214	403	99	297	7
서울	429	450	94	331	25	85	29	52	4
부산	215	241	60	164	17	44	8	34	2
대구	151	152	35	108	9	2	1	1	-
인천	157	165	22	133	10	9	1	8	-
광주	177	185	-	179	6	2	-	2	-
대전	126	132	-	127	5	25	-	25	-
울산	56	60	5	50	5	29	2	27	-
세종	6	7	-	6	1	-	-	-	-
경기	622	650	171	446	33	48	23	25	-
강원	146	154	2	145	7	8	1	7	-
충북	153	157	73	73	11	13	4	9	-
충남	188	198	53	132	13	14	2	12	-
전북	278	313	21	281	11	43	4	39	-
전남	299	321	22	276	23	27	4	22	1
경북	200	232	75	138	19	23	8	15	-
경남	214	211	54	140	17	26	12	14	-
제주	55	62	-	60	2	5	-	5	-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지역아동센터 외에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도 가능하나, 시설별 파견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외에 다른

시설에 파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130], 아동복지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시설별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생활가정 등에도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 시설별 아동복지교사 파견 현황(2024. 12. 기준) >

(단위: 명)

시도	계	시설 유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기타* (시설 유형 기재 필요)
합계	3364	3206	86	3	69
서울	402	393	-	-	9(구청)
부산	204	192	12	-	-
대구	145	145 (40시간 9명 제외)	-	-	-
인천	153	141	3	2	7 (군·구청 지역사회복지사)
광주	174	174	-	-	-
대전	139	139	-	-	-
울산	51	47	4	-	-
세종	6	6	-	-	-
경기	632	583	35	-	14 (시・군청 지역사회복지사)
강원	138	130	4	-	4 (드림스타트 3, 홍천군(특화) 1)
충북	132	123	9	-	-
충남	172	156	2	–	14 (아동양육시설 1, 특화분야 13)
전북	259	258	-	-	1(드림스타트)
전남	297	292	4	-	1(특화분야)
경북	195	181	1	-	13(시군 지역사회복지사)
경남	197	185	7	1	4 (아동양육시설)
제주	68	61	5	-	2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학교돌봄터 등

130)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하여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가 타 시설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국민건강증진기금>

17) 모자보건사업(2535-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성·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 계획액 244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은 244억 7,700만원이고, 이 중 23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13억 7,3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모자보건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24.450	24.450	27	24.477	23.085	19	1,373
· 산전·산후건강관리 강화	510	510	-	510	510	-	-
· 난임부부 지원	3,576	3,576	-	3,576	3,576	-	-
·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및 배려 캠페인	78	78	-	78	78	-	-
· 성·생식건강 증진	6,997	6,997	-	6,997	6,997	-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228	228	-	228	228	-	-
· 고위험임산부 지원	12,171	12,171	-	12,171	10,822	-	1,349
· 산후조리원 평가 및 관리	643	643	-	643	619	-	24
· 모자보건사업 운영	247	247	27	274	255	19	-

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과 지방이양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검토 필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내내역사업은 난임진단 없는 부부에게는 냉동난자 해동부터 신선배아 시술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난임진단이 있는 부부에게는 냉동난자 해동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과정은 지방이양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도록 이원화된 구조인데, 이러한 구분의 실익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난임부부 지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내내역사업들로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131]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132] 설치·운영 지원 등이 있는데, 2024회계연도 실집행 현황을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의 실집행액이 계획현액 5억 5,000만원의 4.1%인 2,300만원으로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난임부부 지원 자치단체보조 실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계획현액	실집행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550	23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1,071	996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1,036	1,009
합계	2,657	2,028

*자료: 보건복지부

131)「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132) 중앙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 대하여는 5억 8,900만원을 국비 100%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업 부진의 이유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550명을 지원 대상자를 기준[133]으로 하였으나, 실집행에 있어서는 115명이 지원하여 수요가 높지 않았던 점을 들고 있음.

□ 한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내역사업의 하나지만,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사업안내에 따르면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구체적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는 냉동난자의 해동 뿐 아니라 배아이식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이 지원되고,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는 냉동난자 해동까지만 지원하고 이후의 시술 과정은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134]'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133) 550명*100만원*2회*50%=5억 5,000만원

134)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그 재원을 100%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서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28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Case Ⅰ :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필요(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①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② 관련 시술비용을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③ 시술비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Case 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 ①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진행), ②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③ 시술비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출처: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p. 17.

□ 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이후 진행에 있어서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동 내내역사업을 통하여 냉동난자 해동 이후의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로서, 재원적인 관점에서는 이원화된 체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용자 편의적 관점에서 이와같은 체계는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도 넓은 의미에서는 실수요자가 난임부부임을 고려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가능해 보이고, 향후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가능해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사업과 전액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난임진단 여부에 따라 냉동난자 해동 이후의 지원 절차를 이원화하는 현재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사업구조에 대하여 편성상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비의 합리적 배분 방식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 심리상담 건수 및 1인당 상담 건수의 편차가 작지 않음에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계획액의 합리적 배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센터 설치를 확충하여 지역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중앙 및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135]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기존 7개소 외에 2024년도에 서울 서남권역과 경북 서부권역 2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총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 중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 대하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사업으로서 연간 5억 8,900만원이,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에 있는 9개소에 각 1억 1,9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135)「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별 지원 체계 >

(단위: 백만원, %)

	지원 금액	개소 당 지원 금액	국고 보조율	예산과목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1개소)	589	589	1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9개소)	1,071	119	서울 30~50 그 외 50	자치단체보조 (330-01)

*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각 개소별 2024년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중간에 설치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센터 기준으로 최다인 인천권역센터는 7,052건에 이르는 반면, 최소인 전남권역센터는 4,335건을 나타내고 있음.

< 2024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연간 상담 실적 >

(단위: 건)

센터		연간 상담 건수	개소 시기
중앙	중앙상담센터(국립중앙의료원)	4,938	2018.06
권역	전남권역센터(현대여성아동병원)	4,335	2018.12
	인천권역센터(아인병원)	7,052	2019.01
	대구권역센터(경북대학교병원)	5,946	2019.02
	경기권역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지회)	5,630	2021.02
	경북권역센터(경상북도안동의료원)	5,290	2021.10
	서울권역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5,490	2023.07
	경기북부권역센터(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4,758	2023.10
	경북서부권역센터(경상북도김천의료원)	458	2024.09
	서울서남권역센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454	2024.09
합계		44,351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2024년부터 2025년 5월말까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별 상담 인력 1인당 총 상담 건수를 비교해 보아도, 2024회계연도 중간에 설치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센터 기준으로 총 상담 건수에 있어서는 최다인 곳이 3,644건, 최소인 곳이 1,641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등록상담 건 수에 있어서는 최다인 곳이 577건, 최소인 곳이 136건을 나타내는 등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별 상담 인력 및 1인당 상담 건수 현황 >

(2024년 1월~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운영기관	상담 인력 (상시근로)	1인당 상담건수	
			총 상담 건수[136]	등록상담 건수[137]
중앙	중앙상담센터(국립중앙의료원)	3	2164.3	577.7
권역	전남권역센터(현대여성아동병원)	3	1995.0	168.0
	인천권역센터(아인병원)	3	3644.3	529.0
	대구권역센터(경북대학교병원)	3	2630.3	136.3
	경기남부권역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지회)	3	2539.3	399.3
	경북권역센터(경상북도안동의료원)	3	2481.7	376.0
	서울권역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5	1641.6	474.0
	경기북부권역센터(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3 (24.1.1~25.3.31) 4 (25.4.1~)	2112.3	277.0
	경북서부권역센터(경상북도김천의료원)	3	444.7	14.0[138]
	서울서남권역센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	1033.7	334.7

* 자료: 보건복지부

136) 등록이 필요한 등록상담 뿐 아니라 등록 작업 없이 일반상담, 기타상담, 선별검사, 심리검사, 기타검사를 제공한 실적임.
137) 센터에 등록 후 정규 상담을 하는 실적임.
138) 2025년 2월부터 등록상담을 시작함.

□ 현재는 각 센터별로 연간 상담 실적, 소속 상담 인력의 1인당 상담 건수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경우 개소당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상담의 수요량과 관계없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하여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되 나머지 계획액에 대하여는 전년도 심리상담 수요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센터별 상담 건수의 실적 차이는 아직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의 수요가 심리상담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과도 연계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현재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경남권, 충청권, 강원권, 전북권 등으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139].

□ 참고로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연간 총 상담 건수 현황은 2021년 3만 278건, 2022년 3만 6,862건, 2023년 3만 9,003건, 2024년 4만 4,351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1년에 비하여 2024년 실적은 46.4% 증가하였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고, 향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139)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경남도 권역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매년 2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임.

라) 생애초기 건강관리 내내역사업의 실집행율 부진에 대한 대응 필요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영아 발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실집행율이 부진하므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생애초기 건강관리 내내역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내역사업의 하나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임산부는 출산 후 보건소에 등록하면,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 점수가 2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방문, 2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방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위험요인 점수 기준표 >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 만19세 이하**(2점)** - 한부모/조손가정**(2점)** - 만 20~23세 - 다문화 산모 - 고졸미만 - 장애 산모	- 우울(EDS≥10) 또는 자해사고 (≥1) - 불안(GAD-2≥3) - 심각한 스트레스, 변화, 상실 -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지부족 - 정서적 문제 치료경험
건강 및 의료요인	**트라우마 관련 경험**
- 산전관리 20주 이후 시작 - 임신 중 흡연 또는 음주 - (산전) 다태아 산모 또는(산후) 저체중아(2.5kg미만) 또는 (산후) 조산아(37주 미만)	- 아동기 학대 또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 배우자 폭력(HITS≥7) 또는 가정폭력 관련 도움 필요

※ 위험요인 점수 기준: 상단 표에서 2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인은 해당하는 경우 각 1점 부여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2024년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액은 34억 5,100만원으로서 계획현액 50억 7,200만원의 68%만이 실집행 되었는데, 이는 2023년 실집행율 60.3%에 비해 향상된 결과이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임[140].

< 2023년 및 20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 현황 >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A-B)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3년	5,080	5,080	3,238	3,238	-	3,238	3,062	-	2,018	60.3
2024년	5,072	5,072	3,723	3,723	-	3,723	3,451	-	1,621	68.0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내내역사업을 위하여 보건소별로 필요한 최소 인력을 간호사 2명 이상[141]으로 보고 있고, 보건소 1개소당 평균 3.5명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에도 현실적으로는 평균 2.9명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 편차는 동 내내역사업의 간호사 인건비 단가가 2017년 공공의료기관 간호사(30대) 월평균 임금(2,716천원) 기준으로 반영된 이후 계속 동결[142]되어 간호사의 채용이 쉽지 않은 것이 주요 사유이며,

140)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상의 시정요구사항이기도 하였음.
141) 보건소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사 1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함.
142) 참고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약 347만원에서 2024년 374만원으로 같은 기간 7.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그 밖의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 부서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도 소속 공무원의 총정원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인력운용 부서에서 이에 필요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있음[143].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했던 기준인 75개소 대비 신규 참여 보건소의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2024년에는 68개소에서만 사업이 수행되었음.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경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	50	50	75	75
실제 참여	21	29	39	59	68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수혜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144]를 보이고 있고 2020년 이후 개소 수의 증가를 볼 때 사업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전국 240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24년 기준 68개 보건소에서만 사업이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을 활성화하여 전국 단위로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부진의 원인이 간호사 채용 부진과 그에 따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소의 부족에 있음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43)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인력 수 만큼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든지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임.

144)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에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사업의 수혜자 중 95% 이상이 영유아 아동의 성장과 부모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국민연금기금>

18)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45]

2024회계연도 계획액 16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00만원으로 계획현액은 16억 2,900만원이고, 이 중 15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622	1,622	7	1,629	1,595	-	34

145)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일반회계 편성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 이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4월부터 노후준비서비스(舊 노후설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듬해인 2009년 1월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갖춘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에 반영되어왔음.

법률 제938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 >

□ 당초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는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146]를 법제화한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 6월 제정되면서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도 함께 개정되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되었음.

146)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336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

□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의 제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대상이 종전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동 사업비는 계속해서 국민연금기금에 반영**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된 **국민연금기금**[147]**을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 설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이 전 국민 대상 국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147)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148]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26회계연도 예산요구서’에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5년 7월 현재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편성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회신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함.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여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목적[149]과 직접 관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148)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9)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민간위탁사업비)으로 편성 필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동 사업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기금에 반영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인력 운영 및 관리’, ‘상담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등 총 3개 내역사업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등이 편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내역사업·세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서비스 제공인력 운영 및 관리	225	204	-	204	204	-	-
- 일반수용비 (210-01)	61	58	-	58	58	-	-
- 임차료 (210-07)	15	8	-	8	8	-	-
- 일반용역비 (210-14)	116	111	-	111	111	-	-
- 국내여비 (220-01)	33	27	-	27	27	-	-
· 상담서비스	467	455	7	462	455	-	7
- 일반수용비 (210-01)	288	220	-	220	219	-	1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0	1	-	1	-	-	1
- 일반용역비 (210-14)	26	26	7	33	33	-	-
- 국내여비 (220-01)	83	167	-	167	164	-	3
- 사업추진비 (240-01)	10	10	-	10	9	-	1
- 일반연구비 (260-01)	50	31	-	31	30	-	1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교육서비스	930	963	-	963	936	-	27
- 일반수용비 (210-01)	714	710	-	710	710	-	-
- 일반용역비 (210-14)	46	46	-	46	23	-	23
- 국내여비 (220-01)	160	197	-	197	193	-	4
- 사업추진비 (240-01)	10	10	-	10	10	-	-

□ 그런데,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150]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사업을 열거한 「국민연금법」 제46조의3 각 호의 사항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150)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앙센터

지정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151]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동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서 정부수탁사업으로 전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수행 관련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46조의3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조항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법률 제13365호 「노후준비 지원법」 부칙 제2조[152]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하는 공단 분사무소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의제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9조제1항제2호 ○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법 제9조제1항제4호 ○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법 제9조제1항제1호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6조제3호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주: “법”과 “영”은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의미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동 사업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51)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52) **법률 제13365호「노후준비 지원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

참고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전달체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국가</th><th colspan="3">수행기관</th></tr>
<tr><th>중앙노후준비
지원센터
(제9조·제10조의2)</th><th>광역노후준비
지원센터
(제9조의2)</th><th>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
(제10조)</th></tr>
<tr><td>시행
주체</td><td>보건복지부장관</td><td>국민연금공단
(직접)</td><td>시·도지사
(직접 또는 지정)</td><td>시장·군수·구청장
(직접 또는 지정)</td></tr>
<tr><td rowspan="9">노후
준비

지원
사업
(제6조)</td><td>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td><td>-</td><td colspan="2">○ 노후준비 인식 제고</td></tr>
<tr><td>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td><td>○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
○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td><td rowspan="2">○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td><td colspan="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td></tr>
<tr><td>○ 지역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td><td>-</td></tr>
<tr><td>4. 중앙노후준비 지원센터의 지정</td><td colspan="3">-</td></tr>
<tr><td>5.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td><td>○ 광역·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적정성 평가</td><td colspan="2">-</td></tr>
<tr><td>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관리</td><td>○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관리</td><td colspan="2">-</td></tr>
<tr><td>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td><td>○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td><td colspan="2">-</td></tr>
<tr><td>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국제협력</td><td>○ 노후준비서비스 홍보·국제협력</td><td colspan="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td></tr>
<tr><td>노후
준비
지표
(제7조)</td><td>○ 전반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점검할 평가기준 개발·보급</td><td>○ 노후준비지표 개발</td><td colspan="2">-</td></tr>
</table>

7. 노인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액은 5조 4,828억 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5조 4,834억 7,600만원이며, 이 중 5조 4,74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2,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482,808	5,482,808	5,483,476	5,474,512	739	8,223
일반회계	4,640,560	4,640,560	4,640,450	4,635,406	288	4,75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1,926	641,926	642,070	639,894	360	1,815
국민건강증진기금	200,322	200,322	200,956	199,212	91	1,653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현액은 4조 6,404억 5,000만원으로 이 중 4조 6,354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 5,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640,560	4,640,560	4,640,450	4,635,406	288	4,755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6,880	6,880	7,144	6,811	288	44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8,122	8,122	8,122	7,435	-	687
노인보호전문기관	12,354	12,354	12,354	12,349	-	5
노인단체 지원	88,418	88,418	94,778	94,775	-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026,370	2,026,370	2,021,184	2,021,104	-	8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497,648	2,497,648	2,496,048	2,492,130	-	3,918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484	484	-	-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04	104	105	104	-	1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80	180	231	214	-	17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총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현액은 6,420억 7,000만원으로 이 중 6,398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 1,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41,926	641,926	642,070	639,894	360	1,8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46,105	546,105	546,249	545,306		942
장사시설설치	44,843	44,843	44,843	44,840	-	3
노인요양시설 확충	21,711	21,711	21,711	20,841	-	87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267	29,267	29,267	28,907	360	-

4) 기금 결산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총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은 2,009억 5,600만원으로, 이 중 1,992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200,322	200,322	200,956	199,212	91	1,653
치매관리체계 구축	191,989	191,989	192,305	192,056	46	203
노인건강관리	8,333	8,333	8,651	7,156	45	1,450

5) 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노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52억원을 전용하는 등 총 67억 5,900만원 전용증, 52억 9,0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469	
일반회계	소 계	6,759 △5,290	
	노인단체 지원	6,360	경로당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자체 전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200	경로당 식사확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전용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354 △90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에 따른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비 반영(264백만원 증) 등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	원활한 사업추진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44	원활한 사업추진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소 계	28 △28	
	장사시설설치	28 △28	국외 출장(20) 및 국내 출장(8) 예산 부족

6) 이월 및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구축' 사업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ISP 연구 원인행위로 2억 8,8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총 4개 세부사업에서 7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739	
일반회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구축	288	전산시스템 구축 ISP 연구 원인행위 완료(계약)로 '25년 지출 예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60	4차 사업의 장비 및 앱개발 지연등으로 인한 장비운영비 이월
국민건강증진기금	소 계	91	
	관리체계구축	46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연구용역)
	노인건강관리	45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연구용역)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할린한인 신규입국자 입국지연으로 특별생계비 등 6억 8,700만원 불용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82억 2,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8,223	
일반회계	소계	4,755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68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2024년도 귀국예정자 연내 귀국 제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44	연구용역 낙찰차액(43백만원) 및 소액의 집행잔액(1백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5	집행잔액
	노인단체 지원	3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0	노인일자리법(24.11.1.) 시행 이후 연구용역 추진하려 하였으나, 내부 진행절차 지연으로 연구 미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3,918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집행 잔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	집행잔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7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1,8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42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교부 후 집행잔액
	장사시설설치	3	집행잔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870	부지 미선정·건축단가 상승 등 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계	1,653	
	치매관리체계 구축	203	관서운영경비,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노인건강관리	1,450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1,,440백만원) 등 집행잔액

7) 예비비 지출 현황

□ 2024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

나. 총괄적 검토

<일반회계>

1)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 재편성 필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재편성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집행액은 30억 2,200만원이었으며, 2024년도 예산부터 미반영되었음.

□ 특히, 예산 미반영으로 2024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자체 출연금으로 우수제품 지정(73건) 업무만 수행했을 뿐,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혁신형 기업 지원 등은 중단된 상태임.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 지원 성과(2019～2024) >

(단위 : 개, 백만원, 건,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기업	11	9	20	20	20	-
지원금액	260	160	600	600	520	-
매출(판매)*	61,958	67,617	79,334	98,188	124,230	-
제품·서비스개발	11	9	20	20	18	-
특허출원 및 인증(국내)	1	-	15	31	17	-
특허출원 및 인증(해외)	3	1	3	8	1	-
디자인출원(국내)	1	-	2	4	2	-
우수제품 지정	71	98	81	79	76	-
우수제품 표준(누적)	2(33)	2(35)	3(38)	3(41)	- (41)	73
사용성평가 지표개발	-	18	21	39	39**	-
비학위과정 이수	-	98	141	137	122	-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이수	30	36	23	-	-	-

* 자료 : 보건복지부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5. 18. 제정)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153]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2006.12.28. 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편성되었고 2023회계연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 집행내역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근거규정	집행내역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 고령친화산업 정책기반 강화: 676백만원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520백만원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통계분석: 92백만원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개발: 20백만원 - 소비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24백만원 - 고령친화산업 연구 통합관리 지원: 20백만원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표시)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280백만원 -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지정(4회): 50백만원 - 사후관리·표준개발 등(우수제품표준 3건): 120백만원 -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 110백만원 (고령친화우수제품 상설 전시·체험관)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 사용성평가 시스템 운영: 720백만원 -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5개소): 500백만원 - 사용성평가지표개발, 기술컨설팅: 50백만원 - DB구축 및 임상성능검사 기술지원 등: 170백만원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국내외 수요기반 확충 및 시장활성화: 326백만원 - 이동형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49백만원 - 유통상담회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113백만원 - 박람회 참가 및 컨설팅 지원: 164백만원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 친고령연구·산업 전문인력 양성: 600백만원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지원: 600백만원

1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2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000명으로, 고령사회(2017년)에서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 2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전망(2050년)>



* 자료: 「고령화 사회 에이지테크 기술 및 정책 현황」(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고령친화산업(실버경제[154])의 부가가치도 2015년 4.2조 유로(약 5,774조원, 유럽 GDP의 28.8%)에서 2025년 6.4조 유로(약 8,800조원, 유럽 GDP의 31.5%)로 전망되고 있고[155],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도 2012년 37조 6,900억원에서 2022년 82조 7,000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43조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156].

154) 실버경제라는 개념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의미함(「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성장 현황 및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155) 「2023 보건산업백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156) 「2022년 고령친화산업 제조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 2022년도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자료:「실버시장과 에이지테크(AgeTech)」(국회도서관, 2024)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이 2024년부터 미반영된 채 보건산업진흥원 자체 출연금으로 일부사업만 진행하고 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157]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 대응이나 기술 발굴에도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의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재편성될 필요가 있음.**

157)「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이유(2006. 12. 28.)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은 강제징용으로 고통 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81억 2,200만원으로 74억 3,500만원이 집행되어 6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8,122	8,122	-	-	8,122	7,435	-	687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정착비지원	6,686	6,686	-	-	6,686	5,999	-	687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지원	1,436	1,436	-	-	1,436	1,436	-	-

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필요

2013년 이후 단가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예산 81억 2,200만원의 8.5%인 6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그 주된 사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2.24.) 장기화로 항공편이 중단되어 귀국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4년 영주귀국 대상자(270명)가 연내에 모두 입국하지 못하여 항공료, 집기·비품비 등 불용이 발생하였음[158].

□ 참고로, 2023년 12월말 기준 영주귀국 인원수는 총 5,340명이며, 사망 및 역귀국자 제외 시 현재 국내 체류인원은 3,200명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인원 현황(1990～2024) >

(단위: 명)

입국 년도	'9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영주귀국 인원	4,116	74	103	83	11	9	3	9	0	334	344	254	5,340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2013년 이후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사할린동포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할 것임. 2013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하고 주택·수도·전기·

15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선정 및 정착비 지급절차(자료: 보건복지부)

-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연료 부문 물가는 47% 상승했음에도, 특별생계비(월 7만 5,000원), 임대보증금(1,770만원) 등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는 실정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단가 추이(2013~2025) >

(단위: 천원,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특별생계비 (월)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항공료 (신규입국자)	895	895	895	895	500	500	500	500	450	450	450	450	450
집기·비품비 (신규입국자)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임대보증금 (신규입국자, 2인1가구)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을 보면 법의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향후에는 신규입국자의 항공료 예산 등 입국경비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 주요 변경사항 >

현행법률	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 외,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이 재외동포청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6년부터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될 예정임.

2)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은 노인학대 신고·접수 판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민국 대상 노인학대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노인전문기관 사업과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법률지원·전문상담 등을 서비스하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23억 5,400만원으로, 이 중 123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2,354	12,354	-	-	12,354	12,349	-	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277	1,277	-	-	1,277	1,277	-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8,730	8,730	-	-	8,730	8,730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2,347	2,347	-	-	2,347	2,342	-	5

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중요성이 더해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뿐만 아니라,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요구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159])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으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매년 인건비 수준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거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가 ('20~'2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82.4%	83.8%	88.6%	93.4%	95.5%	13.1%p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83.3%	84.6%	89.5%	90.8%	92.6%	11.2%p

* 자료: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4.11.)

15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뿐만 아니라,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160])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2024.11.)에 따르면, 근로여건 개선 희망과 관련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51.3%로 가장 높았고,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이 11.7%,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이 11.6%로 조사되었음.

< 근로여건 개선 희망 >

(단위 : %)

개선 시급 과제	'20년 조사	'23년 조사
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45.3%	51.3%
②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15.8%	11.7%
③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으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11.4%	11.6%
④ 기타 (승진연한 및 경력인정 개선, 수당 신설, 대체인력 확대 등 9종)	27.7%	25.4%

* 자료: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4.11.)

16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의 전임제 전환 검토 필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겸임 인력을 전임제로 하여 노인학대 신고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39조의19[161])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국가 설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시·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국가와 지자체) 등 3가지 유형이 있음.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개소가 운영 중임.

<2024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기준: 2024. 12. 31.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노보	38	4	3	2	2	1	1	1	5	3	2	2	2	2	4	2	2
쉼터	20	1	1	1	1	1	1	1	3**	1	1	1	1	2	2	1	1

* 자료: 보건복지부

** 경기 1개소 지방비 100% 운영 중

□ 아울러, 그 업무를 보면 각각 노인학대 대응 및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임.

---

161)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 기관별 주요 업무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및 연구 -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노인학대예방 교육 - 노인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피해노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 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인력기준을 보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5 [별표 1의2])은 각각 장 1명, 상근 상담원 6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3항 [별표 14])의 경우 장 1명,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요양보호사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쉼터의 장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예산상 제약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겸임 보다는 전임제로 하여 노인학대 신고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2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야간근무자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는데, 적은 전임 인력으로 야간근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음.

<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2020～2024) >

(단위: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건수	16,973	19,391	19,552	21,936	22,746
학대판정	6,259	6,774	6,807	7,025	7,167

* 자료: 보건복지부

3) 노인단체 지원(2133-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단체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사회참여를 위한 대한노인회운영지원 사업, 경로당중앙지원본부 운영 사업,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노인정책수립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예산액 884억 1,800만원, 63억 6,000만원 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47억 7,800만원으로 947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단체 지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88,418	88,418	-	6,360	94,778	94,775	-	3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900	900	-	-	900	900	-	-
· 대한노인회운영지원	4,408	4,408	-	-	4,408	4,408	-	-
· 경로당중앙지원본부 운영	421	421	-	-	421	421	-	-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385	2,385	-	-	2,385	2,385	-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0,003	80,003	-	6,360	86,363	86,363 (81,344)	-	-
· 노인정책수립 지원	301	301	-	-	301	298	-	3

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문제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정확한 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부식비 지원 예산도 2026년 예산안에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음.

□ '경로당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되어 국고 지급이 제외되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난방비·양곡비·냉방비 등 국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1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63]이 개정되어, 2019년도부터 정부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내역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 2025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 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 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200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62.8만원 정부양곡 20㎏ (52,340원) 12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 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식사제공 확대(8포⇒12포)('24.10.7.)
* 자료: 보건복지부

162) 난방비 지원: 2008년, 2010년~ / 양곡비 지원: 2012년~ / 냉방비 지원: 2013년~
1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018. 11. 27. 개정)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 첫째, 냉방비 등 경로당 추가지원을 위해 63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억 1,900만원이 불용된 바,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향후에는 **보조사업 예산을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내역사업 결산내역(2022～2024)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추경					실집행액	불용액
2022	68,396	68,396	-	4,041	72,437	72,437	67,145	5,292
2023	71,508	71,508	-	4,815	76,323	76,323	70,362	5,961
2024	80,003	80,003	-	6,360	86,363	86,363	81,344	5,019

□ 둘째, 부식비와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20일에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추가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임[164].

□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경로당 부식비 지원액(959억원)을 토대로 추계한 소요액은 495억원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내역사업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음.**

164)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4. 12. 2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시행일: 2026. 1. 1.] 제37조의2

□ 그 외, 경로당의 42%에 해당하는 28,933개소가 개설된 지 2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로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로당 시설보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임**.

< 경로당 노후화 현황 >

(기준: 2025. 6. 31. / 단위: 개소, %)

구 분	25년 이상	15~24년	5~14년	4년 이하	합 계
경로당 수	28,933 (42.0%)	20,189 (29.3%)	17,158 (24.9%)	2,656 (3.9%)	68,936

* 자료: 보건복지부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2조 263억 7,000만원, 이·전용(△) 5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211억 8,400만원으로 2조 211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026,370	2,026,370	-	△5,200	2,021,184	2,021,104	-	80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995,745	1,995,745	-	△5,200	1,990,545	1,990,545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	21,746	21,746	-	-	21,746	21,746	-	-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8,742	8,742	-	-	8,742	8,742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	137	137	14	-	151	71	-	80

나)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 지양 필요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은 지양하고 동사업의 목적과 자체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내역사업은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구분되고,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인 선도모델을 포함하고, 민간형은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으로 구분되어 추진 중임.

<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내용 >

(단위 : 천개, 만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1,03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54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만65세 이상 (일부60세)	141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만60세 이상	10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만60세 이상	58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청소·경비 등)		95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안전·전기 등)		70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우수 기업을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노인 채용 기업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4년도에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65만 4,000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4만 1,000개 등 총 103만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서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 충당 등을 위해 52억원이 전용(△)되었는바, 동사업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사업의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향이 보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세부사업 집행현황(2020～2024)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이월	불용
	본예산	추경(A)							
2020	1,201,501	1,329,649	△30,000	1,299,649	1,299,565 (1,151,750)	97.7	100.0	-	84
2021	1,315,156	1,330,679	-	1,330,679	1,330,633 (1,284,907)	100.0	100.0	-	46
2022	1,442,195	1,442,195	△4,041	1,438,154	1,438,070 (1,410,722)	99.7	100.0	-	84
2023	1,540,016	1,540,016	△3,700	1,536,316	1,536,278 (1,488,798)	99.8	100.0	14	23
2024	1,995,745	1,995,745	△5,200	1,990,545	1,990,545 (1,941,084)	99.7	100.0	-	-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에서도 같은 지적사항이 있은 바,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대기수요(2024년도 25만 1,000명)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은 지양하고 동사업의 목적과 자체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별 대기수요(2024) >

(단위 : 명)

구분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합계
일자리(A)	661,000	140,000	10,000	56,000	95,000	70,000	1,032,000
지원자(B)	828,000	210,000	-	70,000	-	-	1,108,000
대기자 (B-A)	167,000	70,000	-	14,000	-	-	251,000

* 주)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및 시니어 인턴십, 취업알선형은 기업에서 채용·선발하여 대기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 자료 : 보건복지부

다) 중도포기율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공익활동형 등 노인 일자리 중도포기 사유를 고려한 노인일자리 사업설계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 현황을 보면 매년 11~12%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중도포기율이 전년 대비 2.5%p 높아졌음.

< 노인일자리 사업별 중도포기율 현황(2020~2024) >

(단위 : %)

구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계
2020	11.1	9.0	11.3	11.0
2021	13.3	10.8	10.2	12.8
2022	12.6	10.8	11.8	12.3
2023	9.6	11.4	12.2	12.1
2024	12.1	9.0	11.2	11.5

* 주)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및 시니어 인턴십, 취업알선형은 기업에서 채용·선발하여 대기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4년도 중도포기 사유로 개인적인 사정(건강·취업·전출·사망 등)이 대부분이나, 적성·노동강도 등 불일치, 부적격 참여, 인적갈등도 12.2%를 차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설계(보수단가 인상, 사업기간 연장, 직무설계 등) 및 운영 등에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해 보임.

<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별 중도포기 사유 현황 >

(단위 : %)

구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계
부적격 참여	7,954	163	127	8,244 (6.7%)
인적갈등	1,480	339	131	1,950 (1.6%)
적성·노동강도 등 불일치	2,264	1,116	1,360	4,740 (3.9%)
건강악화	51,654	6,326	4,209	62,189 (50.8%)
취업	7,552	1,989	3,587	13,128 (10.7%)
전출(이사)	2,011	288	149	2,448 (2.0%)
사망	2,527	128	76	2,731 (2.2%)
기타	16,898	5,630	4,354	26,882 (22.0%)
계	92,340	15,979	13,993	122,312

* 기타 : 교정시설 입소, 교통 불편, 낮은 임금, 기타 개인적 사유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빈곤노인의 소득보전 측면이 강함에도 연례적으로 지원단가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5년의 경우에도 보수단가는 시간당 9,667원인 반면 최저임금은 10,030원임.

< 공익활동형 보수단가와 최저임금 추이 >

(단위: 원/시간당)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익활동형	6,667	6,667	6,667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667	9,667
최저임금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10,030

* 자료: 보건복지부
* 음영 :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단가(시간당)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4. 12. 20.)이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공익활동형 등 노인 일자리 보수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165]

□ 아울러,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사업기간이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소득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

□ 다음,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능력지표 개발,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수행기관 법률지원 등 안전관리 등 참여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사유별 현황(2020～2024) >

(단위 : %)

구분	사고건수	사망	골절	열상	염좌	인대손상	자상	절상	찰과상	타박상	혈관질환	화상	기타
2020	2,048	18	1,247	78	117	65	51	16	137	249	50	15	5
2021	2,985	25	1,752	58	166	142	53	25	143	346	37	25	213
2022	3,240	25	1,907	81	134	119	42	27	166	402	18	39	280
2023	3,629	29	2,124	102	175	136	52	35	188	469	35	41	243
2024	4,036	23	2,289	149	219	163	48	34	187	497	33	56	338

* 자료 : 보건복지부

16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 12. 20.>

5)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68억 8,000만원, 이·전용 2억 6,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억 4,400만원으로 68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880	6,880	-	264	7,144	6,811	288	44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6,480	6,480	-	△60	6,420	6,420	-	-
· 전문 인력 양성·교육	300	300	-	-	300	299	-	1
· 모니터링 및 평가 등	100	100	-	-	100	93	-	7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	-	324	324	-	288	36

나) 기술지원형사업 지원 강화 필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에 따라 본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기술지원형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2개 지자체(대전 유성구, 부천시, 안산시, 여수시, 김해시 등)를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우선대상자로 하고 있음.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 (목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 정립
○ (기간·규모) 2023.7～2025.12, 12개 시군구
○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전담조직 등)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지원현황) 2023년 7월～2024년 7월 기준, 약자 노인 8,505명에게 총 21,029건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2차년도)」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12개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형 사업’ 외에도, 202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인력 배치 등 비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술지원형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기술지원형 사업(20개 지역)이 예산지원형 사업(12개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예산지원, 유사사업 경험의 차이 등으로 지역별 대상자 수는 기술지원형 사업이 예산지원형 사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차년도) 대상자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 명, 누적)

예산지원형 (12개) (1.1.~12.31.)		기술지원형 (20개) (9.1.~12.31.)	
지역	대상자(신청자)	지역	대상자(신청자)
총 계	11,084	총 계	1,585
광주 서구	1,027	부산 수영구	78
광주 북구	1,272	대구 달서구	-
대전 대덕구	747	대구 수성구	-
대전 유성구	838	인천 부평구	136
김해	914	광주 광산구	167
부천	1,563	경기 성남시	79
안산	1,022	경기 안성시	108
여수	803	강원 춘천시	41
의성	907	강원 횡성군	113
전주	534	충북 증평군	41
진천	667	충북 음성군	72
천안	790	충북 괴산군	20
—	—	충북 청양군	359
—	—	전북 정읍	44
—	—	전북 담양	96
—	—	전남 목포시	-
—	—	전남 영광군	156
—	—	경북 포항시	16
—	—	경북 상주시	6
—	—	제주	53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부터 실시하는 본사업에서는 예산 등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음.

□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66]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나 통합지원 정책·시범사업 평가 등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음.

□ 그 외, 대상자 본인 요청에 의한 지원 중단 비율을 보면, 기술지원형 사업은 3.0%(47명/1,585명)인 반면, 예산지원형 사업은 4.1%(453명/11,084명)로 예산지원형 사업이 다소 높게 나오는데 그 원인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의료 돌봄 등 복합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사업모델 및 대상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167].

---

16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그 외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ISP를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일 3억 2,400만원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조달청 공고를 통해 12월 30일에 계약함에 따라, 2억 8,800만원이 이월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ISP 예산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전용 재원 마련 및 승인에 부득이하게 상당기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나, <u>법률이 2024년 3월 제정된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 ISP 일정을 보다 앞당겨 추친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임</u>.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 계약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제 명	예산과목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방법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	260-01	288.360	㈜브이티 더블유	2024.12.30. ~2025. 5.29.	일반경쟁

* 자료: 보건복지부

167)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2차년도)」(2024.12.)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진 대상자 총 10,961명 중 4,005명(37.0%)이 고령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6)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예산액 2조 4,976억 4,800만원에서 16억원을 이용(감)[168]하여 예산현액 2조 4,960억 4,800만원이며, 이 중 2조 4,921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39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497,648	2,497,648	-	△1,600	2,496,048	2,492,130	-	3,9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1항[169]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예상수입액 대비 20% 수준에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법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170].

168)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1심 각하 선고 및 일부 법률비용 지급명령에 따른 정부 배상금 지급 부족분을 위하여 국제협력관리(7035-300) 사업으로 16억원 이용함.

1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수입액	65,338	75,932	90,069	99,580	111,338
실제수입액	61,605	77,314	91,688	102,266	106,696
국고지원액(A)	12,414	15,186	18,014	19,916	22,268
예상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	19.0	20.0	20.0	20.0	20.0
실제수입액의 20% 금액(B)	12,321	15,463	18,338	20,453	21,339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	20.2	19.6	19.6	19.5	20.9
차액(B-A)	△93	277	324	537	△929

자료: 보건복지부

170) 다만, 2021년~2023년의 경우 예상수입액보다 실제수입액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은 19.5~19.6% 수준으로 나타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필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이득 결정건수는 약 23만건, 그 금액은 4,096억 원에 이르며 최근 징수율은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171],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 인구 수의 증가[172],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173],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3~5등급)의 시설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1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172) 참고로,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명을 기록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이와 함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하였고 2034년에는 171만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상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유병현황, 2024 참조

17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비율은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연평균 11.3%(2015년 47만명 → 2024년 117만명) 증가하여 동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연평균 4.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장기요양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국고 법정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장기요양급여비 및 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간(2025~2034년) 연평균 10.2%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17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25~2034년>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 입(A)	17.8	19.3	20.7	22.2	23.9	25.7	27.7	29.8	31.6	33.2
지 출(B)	17.6	19.3	21.4	23.7	26.1	28.7	31.4	34.3	37.7	40.9
재정수지(A-B)	0.2	0.0	-0.6	-1.4	-2.2	-3.0	-3.7	-4.5	-6.2	-7.7
누적준비금	5.9	5.9	5.4	3.9	1.8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이와 같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 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175]

---

174)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

175) 박선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 나보포커스 제113호, 국회예산정책처, 2025. 6. 17.

□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제공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적정·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176][17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음.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178]부터 2024년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이득 결정건수는 총 226,147건에 이르고, 그 금액은 4,096억 2,500만원에 이름.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2011~2024)>

(기준: 2025.7.31., 단위: 개소, 백만원, %)

결정년도	기관수	결정건수	결정금액	납부금액	미납금액	징수율
계	12,285	226,147	409,625	372,664	36,961	90.98
2024	1,127	25,175	50,672	40,229	10,443	79.39
2023	1,349	30,924	72,580	65,022	7,558	89.59
2022	1,096	28,561	58,400	50,340	8,060	86.20
2021	949	27,857	51,216	48,359	2,857	94.42
2020	816	17,649	25,163	24,218	945	96.24
2019	800	17,233	22,713	22,258	455	98.00
2018	757	13,243	14,645	14,286	359	97.55

176) 참고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177)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관리 및 방지를 위하여 급여비용 부당청구 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적정청구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17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나, 부당기관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를 2011년부터 시행하였다는 설명임.

결정년도	기관수	결정건수	결정금액	납부금액	미납금액	징수율
2017	747	12,247	16,961	16,534	427	97.48
2016	781	11,557	31,016	26,769	4,247	86.31
2015	764	10,131	20,854	20,381	473	97.73
2014	698	8,134	17,904	17,264	640	96.43
2013	499	4,309	10,047	9,831	216	97.85
2012	914	9,561	9,207	9,024	183	98.01
2011	988	9,566	8,247	8,149	98	98.8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런데 지난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9.4%로 2022년 86.2%, 2023년 89.6%과 비교하여 저조하였고, 미납액이 104억 4,300만원에 이르는 등 징수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국회보고 제도 도입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의 사례를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모는 2024년 예산 기준 약 16조 2,069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179]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현재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예·결산 및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법」[180]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

1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80)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변경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예산현액은 5,462억 4,900만원으로, 이 중 5,453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46,105	546,105	144	-	546,249	545,306	-	94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41,444	541,444	-	-	541,444	540,812	-	632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2,988	2,988	-	-	2,988	2,988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1,673	1,673	144	-	1,817	1,506	-	31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55만명)을 대상으로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하고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식료품 지원,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자료: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나) 서비스 수행 필요인력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처우개선 필요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의 근로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특성상 필수적인 교통비·통신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역사업의 주된 내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필수인력인 서비스관리자(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5,414억 4,400만원 중 5,408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참고로, 서비스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의 업무(일 8시간 근무)를, 생활지원사는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업무(일 5시간 근무)를 수행하며, 평균 15명의 서비스 대상자 당 생활지원사 1명,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 당 서비스관리자 1명이 배정되고 있음.

< 2024년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 현황 >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제외)
기본급	- (1년 이상 2년 미만) 2,181,000원 - (2년 이상 4년 미만) 2,286,000원 - (4년 이상) 2,400,000원	- 1,308,000원

정규직 전환여부	-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사업안내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행기관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	
평균연령	- 43.1세	- 55.7세
인력현황 (2024.12.31. 기준)	- 3,182명 (생활지원사 13.7명당 1명)	- 36,296명 (취약 독거노인 15명당 1명)
배정기준	- 생활지원사 16명당 1명	- 사업대상 15명당 1명

* 자료: 보건복지부

□ 첫째,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하게 되는 바,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생활지원사의 경우 35개월인 반면, 서비스관리자의 경우 23개월에 불과함. 또한 이직률을 보면, 생활지원사의 경우 0.7%인 반면, 서비스관리자는 2.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서비스관리자의 처우 등 근로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2024년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 근로 현황 >

(기준 : 2024. 12. 31.)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평균 근속기간	23개월	35개월
이직률(%)	2.2%	0.7%

* 연간 이직률=연간 이직자/[{(조사기준년 1～12월 근로자)+(조사기준전년 12월～조사기준년 11월 근로자)}/2]×100

* 자료 : 보건복지부

□ 둘째,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수적이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181]

< 2024년도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현황 >

(기준 : 2024. 12. 31.)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교통비	9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10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통신비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7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기타 별도지원 (처우개선비·특별수당· 종사자수당·활동지원비·직급수당)	1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1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 자료 : 보건복지부

181)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 그 외 수당
–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8) 장사시설설치(2140-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사시설설치 사업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재해대책비,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사제도 운영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448억 4,300만원으로, 이 중 448억 4,000만원이 교부되어 332억 3,6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사시설설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4,843	44,843	-	-	44,843	44,840 (33,236)	-	3
· 공설 장사시설 설치	41,175	41,175	-	△38	41,137	41,137 (29,538)	-	-
· 재해대책비	-	-	-	38	38	38	-	-
·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3,488	3,488	-	-	3,488	3,488 (3,483)	-	-
· 장사제도 운영	180	180	-	-	180	177	-	3

나)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및 화장시설 확충 필요

공설 장사시설에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도시권 화장로 신·증설 등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주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11억 3,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95억 3,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1.8%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집행현황(2020～2024)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	불용
2020	42,037	179	-	42,216	42,216	31,921 (75.6%)	-	-
2021	52,533	-	-	52,533	52,533	20,955 (39.9%)	-	-
2022	36,561	-	-	36,561	36,561	24,618 (67.3%)	-	-
2023	48,649	△490	-	48,159	48,010	35,589 (73.9%)	-	149
2024	41,175	△38	-	41,137	41,137	29,538 (71.8%)	-	-

□ 첫째, 실집행이 부진한 것은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와 토목·건축사업 영향 평가, 토지보상 등 사전 필요 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보임.

< 2024년도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지연현황 및 사유 >

(단위 : %)

지자체	사업명	실집행률(%)	사유
인천시	봉안당 신축	0	각종 심의 협의기간 추가 소요로 착공 자연
대전 서구	봉안당 증축	10.4	암석 발생으로 공사기간 추가 소요
횡성군	자연장지(산분장지, 추모시설) 조성	35.7	시도 내 예산 재배정(6월) 사업기간 부족
옥천군	봉안당 신축	41.5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으로 착공 지연
보령시	봉안당 신축	2.0	각종 계약 진행기간 추가 소요
서산시	봉안당 신축	3.8	시공사 채권압류에 따른 공정 지연
완도군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45.2	소나무 재선충 방재 및 동절기 한파로 공사 기간 연장
신안군	봉안당 신축	16.4	건물구조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 추가
김해시	자연장지 조성	28.4	지하수 공사 등 추가 소요기간 발생
서귀포시	자연장지 조성	19.4	전년도 12월 예산확정으로 지방비 확보 등 소요기간 필요

* 자료 : 보건복지부

□ 하지만, 2024년도의 경우 대부분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적, 절차적 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182], 초고령사회[183] 장사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182) '우리나라의 연도별 총 사망자 수는 지난 1983년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한 이래 2020년 30만 4,9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2021년에도 31만 7,774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잠정 집계', '만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33.4%였으나, 불과 10년 만에 절반 수준(48.6%)으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2022.5.17.)

183)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경우로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함(20.4%).

□ 따라서, 공설 장사시설에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025년 1월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대란이 일어난 바, 지속적인 사망자 증가와 화장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화장로 신·증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음. 2024년부터 공설 화장시설 신·증축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는 문제도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및 화장수요 증가 >

(단위: 명,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사망자	317,680	324,000	335,000	345,000	355,000	365,000	375,000
일평균	870	890	918	945	973	1,000	1,027
화장수요	790	815	847	877	907	936	964

*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21」, 2021「장래인구추계」

< 2024년도 장사시설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개소, 기)

구분	화장시설 (화장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	장례식장
계	62(400)	499	625	211	1,081
공설	61(399)	328	200	79	78
사설	1(1)	171	425	132	1,003

* 자료: 각 시・도 장사업무실태조사 제출자료, 사설은 법인 및 종교단체 시설만 포함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반영하여 2024~2027년까지 화장로 65기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연도별 화장로 확충 계획 >

(단위: 기)

구 분	계	2024	2025	2026	2027
화장로 수	65	4	18	22	21

* 자료: 보건복지부(「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2023~2027년)」)

□ 특히, <u>화장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 대도시권에서 3일장 비율이 낮은 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도시권 화장로 신·증설 등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u>

< 전국 화장시설(화장로)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개소, 로)

시·도	화장시설	화장로	비고
계	62	400	
서 울	2	34	고양(23), 서초(11)
부 산	1	15	15
대 구	1	11	11
인 천	1	20	20
광 주	1	11	11
대 전	1	10	10
울 산	1	10	10
세 종	1	10	10
경 기	4	49	수원(9), 성남(15), 용인(12), 화성(13)
강 원	8	34	춘천(7), 원주(7), 동해(3), 태백(3), 속초(3), 정선(2), 인제(3), 강릉(6)
충 북	3	21	청주(11), 충주(6), 제천(4)
충 남	3	22	천안(9), 홍성(8), 공주(5)
전 북	5	28	전주(8), 군산(5), 남원(5), 익산(5), 정읍(5)
전 남	7	27	목포(7), 여수(5), 순천(5), 광양(5), 소록도(0), 곡성(1*사설), 해남(4)
경 북	12	46	포항(우현 3, 구룡포 1), 김천(4), 안동(5), 영주(2), 상주(3), 문경(3), 의성(4), 울릉(2), 경주(9), 구미(7), 울진(3)
경 남	10	44	창원(창원 8, 마산 3), 진주(7), 통영(4), 사천(4), 밀양(3), 고성(2), 김해(6), 남해(3), 함안(4)
제 주	1	8	8

* 자료: 보건복지부

9) 노인요양시설 확충 (223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양로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및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 예산액은 217억 1,100만원으로, 이 중 208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8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1,711	21,711	-	-	21,711	20,841	-	870
·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18,582	18,582	-	-	18,582	17,712	-	870
·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157	157	-	-	157	157	-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613	613	-	-	613	613	-	-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356	2,356	-	-	2,356	2,356	-	-
· 직접수행	3	3	-	-	3	3	-	-

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내역사업은 양로시설·요양시설을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구성됨.

□ 첫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주된 내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 177억 1,2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06억 2,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7.2%로 매우 부진한 바,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2022～2024) >

(기준: 2024. 12. 31.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1,429	4,317 (123.2)	12,893	6,165 (47.8)	5,433	6,691 (123.2)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49,803	7,389 (29.9)	27,198	3,219 (11.8)	13,149	3,934 (29.9)
합 계	61,232	11,706 (57.2)	40,091	9,384 (23.4)	18,582	10,625 (57.2)

□ 실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 설계, 착공 등 완공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이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기관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선정된 기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4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유형) 내역사업 사업별 실집행률 및 사유>

(기준: 2024. 12. 31. / 단위: %)

연번	지자체	사업유형	실집행률(%)	사유
1	노원구	노인요양시설	0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
2	사상구	노인요양시설	9.6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
3	파주시	노인요양시설	0	사업포기
4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100	-
5	대전시	노인요양시설	80	연내 집행 예정
6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100	-
7	화성시	주야간보호	100	-
8	파주시	주야간보호	58.5	사전절차 이행
9	창원시	주야간보호	0	연내 집행 예정
10	부여군	주야간보호	0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
11	안산시	노인요양시설	0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
12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100	-
13	순천시	주야간보호	100	-
14	신안군	주야간보호	0	사전절차 지연
15	신안군	노인요양시설	0	사전절차 지연
16	신안군	노인요양시설	0	사전절차 지연

* 사업포기 7개소 : 양주시('22) 2개소, 동해시('22), 용산구('22) 2개소, 곡성군('22), 강진군('23)
*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의 건축단가(198만원/㎡)가 조달청 노유자 시설의 3개년(2022~2024년) 평균 건축단가(358만원/㎡)의 55% 수준에 불과하여 2022년 6개소, 2023년 1개소 등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므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단가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의 건축단가가 198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 편성되어, 조달청 노유자 시설의 3개년(2022~2024년) 평균 건축단가 358만원/㎡의 55%, 2024년 이후 실제 건축비 평균단가 374만원/㎡의 52.9% 수준에 불과함.

□ 셋째, <u>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u>.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내역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4]에 따라 권리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6개소에 대한 운영비 6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 >

(기준: 2024. 12. 31.)

○ (설치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9.1.15.개정, ’19.6.12.시행) * 국정과제 44-5, 사회복지종사자(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 (센터기능)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4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고충 해소 기능을 위한 전문 창구 기능도 수행 필요 ○ (현황) 10개 시도 14개소* 운영 중 - 2024년 1개 시도(제주) 추가 설치 예정 * 서울4, 경기2,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강원1, 전북1, 전남1, 제주1

* 자료: 보건복지부

1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019.6.12. 시행)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보면 서울 4개소, 경기 2개소 등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운영 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6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편성되지 않은 8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야겠음[185].

□ 아울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8.)은 2027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대구·인천·충북·충남·경북·경남 7개 시도는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설치 지역에도 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2025년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현황 >

(기준: 2025. 4. 30. / 단위: 명)

연번	기관명	개소일	종사자수
1~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3.11. 1.	총 25명
5~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1. 5.13.	총 5명
7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1. 7. 1.	3명
8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1.12.23.	5명
9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2. 7.27.	2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2. 8. 3.	4명
11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3. 9.27.	2명
1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3.12. 1.	4명
13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4. 1. 2.	3명
1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4. 1. 2.	6명

* 자료: 보건복지부

1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1.15.)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처음 설치할 때 반영된 6개소 예산으로 10개소(시도별 1개소)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

1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ICT기기(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응급상황 신속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92억 6,700만원으로 289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9,267	29,267	-	-	29,267	28,907	360	-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847	28,847	-	-	28,847	28,487	360	-
· 고령자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420	420	-	-	420	420	-	-

나)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출장·교통비 미지급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ICT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 수행인력으로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시·도의 사업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응급관리요원은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는 거점응급관리요원 1~2명,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농·어촌 여건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이 배정되고 있음.

□ 응급관리요원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외(평일 야간, 휴일)에 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근무, 당직 등의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2024년도 응급관리요원 현황 >

(기준 : 2024. 12. 31.)

구 분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
자격요건 (권고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노인·장애인 관련 대인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가산점 부여	
근무시간	- 주 5일, 일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로시간 유연적용 (예시: 7시~16시 / 13시~22시)	
기본급(월)	2023년: 2,010,580원 (최저임금) 2024년: 근속수당 도입 (1년 미만) 2,060,740원 (최저임금)	

	(1년 이상 3년 미만) 2,096,340원 (최저임금+35,600원) (3년 이상 6년 미만) 2,131,940원 (최저임금+71,200원) (6년 이상) 2,167,540원 (최저임금+106,800원)	
정규직 전환여부	-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평균근속기간	- 24개월	- 32개월
평균연령	- 43세	- 44세
이직률	- 6.3%	- 4.3%
인력현황	- 20명	- 721명
배정기준	- 1명(9곳):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제주·충북 - 2명(7곳):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 (세종 포함)	- 지역센터를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인력배분 * 도시, 농·어촌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적절하게 대상자 배정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4년 12월말 기준 노인 256,105가구, 장애인 12,400가구 등 총 268,505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 중으로, 매년 응급관리요원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서비스 대상 가구 증가 등으로 1인당 장비 운영 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나 2025년에는 관리해야 할 장비 수가 금년의 장비 27만 2,000대보다 2만 1,000대 늘어난 29만 3,000대로, 채용 편성 인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일선에서도 업무가중으로 안전확인 및 대상자 확대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2020~2024) >

(기준: 2024. 12. 31. / 단위: 대, 건, 명)

연 도	댁내장비 (A)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B)	1인당 장비 운영 대수 (A/B)
			응급 호출·통화	화재감지	활동 미감지 대응		
2020	38,507	3,294	1,861	1,433	0	580	66
2021	99,273	78,745	12,016	4,373	62,356	590	168
2022	167,855	131,187	15,640	5,319	110,228	651	258
2023	238,806	155,373	17,954	6,836	130,583	671	356
2024	268,505	341,608	27,096	9,106	305,433	766	351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대수를 보면 351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보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요원을 확대충원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지역별 응급관리요원·댁내장비 현황 >

(기준 : 2024. 12. 31. / 단위 : 가구)

시도	응급관리요원	장비 운영 대수	인당 장비 운영 대수
계 / 평균	766	268,505	351
서울특별시	8	1,981	248
부산광역시	47	18,043	384
대구광역시	34	13,399	394
인천광역시	18	5,654	314
광주광역시	20	7,435	372
대전광역시	26	9,653	371
울산광역시	16	6,232	390
세종특별자치시	5	1,557	311
경기도	101	33,694	334
강원특별자치도	73	25,322	347

충청북도	40	13,569	339
충청남도	66	22,460	340
전라북도	71	24,894	351
전라남도	108	35,893	332
경상북도	61	22,255	365
경상남도	60	22,371	373
제주특별자치도	12	4,093	341

* 자료 : 보건복지부
* 음영 표시: 평균 운영 대수(351 대) 초과 지역

□ 다만, 확대 충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186], 기간제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야간·휴일 응급상황 대응, 출장·교통비 지원 미비[187] 등의 문제로 이직율이 높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2022~2024년 신규 응급관리요원 채용현황 >

(단위 : 명, %)

연 도	채용인원	이직	이직률	근무 중	미채용
2022	162	62	38.3	100	6
2023	102	11	10.8	91	15
2024	94	12	12.8	82	9

* 자료 : 보건복지부

186) 「2024년_독거노인_장애인_응급안전안심서비스_사업안내」 지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인건비 : 월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로 구성
  -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월급여는 최소 2,060,740원을 지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 포함)
  - 경력에 따라 보수에 추가 지금액*이 있으며, 과거에 같은 혹은 다른 기관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1년 이상 3년 미만) 35,600원, (3년 이상 6년 미만) 71,200원, (6년 이상) 106,800원
  -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187)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 가능
  - 시·도, 시·군·구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혹한기·혹서기 발생 대응 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11) 치매관리체계 구축(2234-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치매 예방·조기발견, 치매환자 가족 지원,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등 1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계획현액은 1,923억 500만원으로 1,920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치매관리체계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91,989	191,989	316	192,305	192,056	46	203
·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4,094	4,094	-	4,094	4,012	46	37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1,551	1,551	-	1,551	1,551	-	-
· 광역치매센터 운영	7,776	7,776	-	7,776	7,776	-	-
· 치매안심센터 운영	167,047	167,047	-	167,047	167,047	-	-
·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293	293	-	293	293	-	-
·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지급	3,726	3,726	-	3,726	3,683	-	43
·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1,500	1,500	-	1,500	1,380	-	120
· 공립요양병원 기술 지원 및 성과관리	319	319	-	319	319	-	-
·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3,876	3,876	-	3,876	3,876	-	-
· 치매공공후견지원	946	946	-	946	946	-	-
· 정책연구사업	-	-	316	316	316	-	1
· 치매관리사업	861	861	-	861	861	-	2

나) 농촌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 필요 등

농촌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기준 충족률을 제고하고, 치매환자 증가를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188]을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6.7%인 94개소임.

< 2025년도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 현황 >

(기준 : 2025. 4. 30. / 단위 : 개소, %)

구분	총계	충족	
			임상심리사
계	256	94(36.7%)	105(41.0%)
도시	103	47(45.6%)	50(48.5%)
도농복합	66	29(43.9%)	32(48.5%)
농촌	87	18(20.7%)	23(26.4%)

* 자료 : 보건복지부

□ 특히, 도시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 충족률이 45.6%인 반면, 농촌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기준 충족률이 20.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인력운용은 농촌 지역 거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서비스나 치매환자 지원 등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188)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제8조 관련)**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한편, 임상심리사 인력수급(2024년 누적 기준, 3,740명) 부족 문제도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미충족의 주요 요인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검진 시행자[189]로 임상심리사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추가하여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력 운용 실태를 반영하여 인력기준을 정비할 필요도 있겠음.

□ 둘째,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2022년도 446억 7,100만원(개소당 1억 7,450만원)에서 2023년도 251억 2,200만원(개소당 9,813만원)으로 감액(△43.8%)되었고, 2025년도 계획액에도 301억 4100만원(개소당 1억 1,174만원)만 반영되었음.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경도인지장애진단[190]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치매환자 추이(2019～2050)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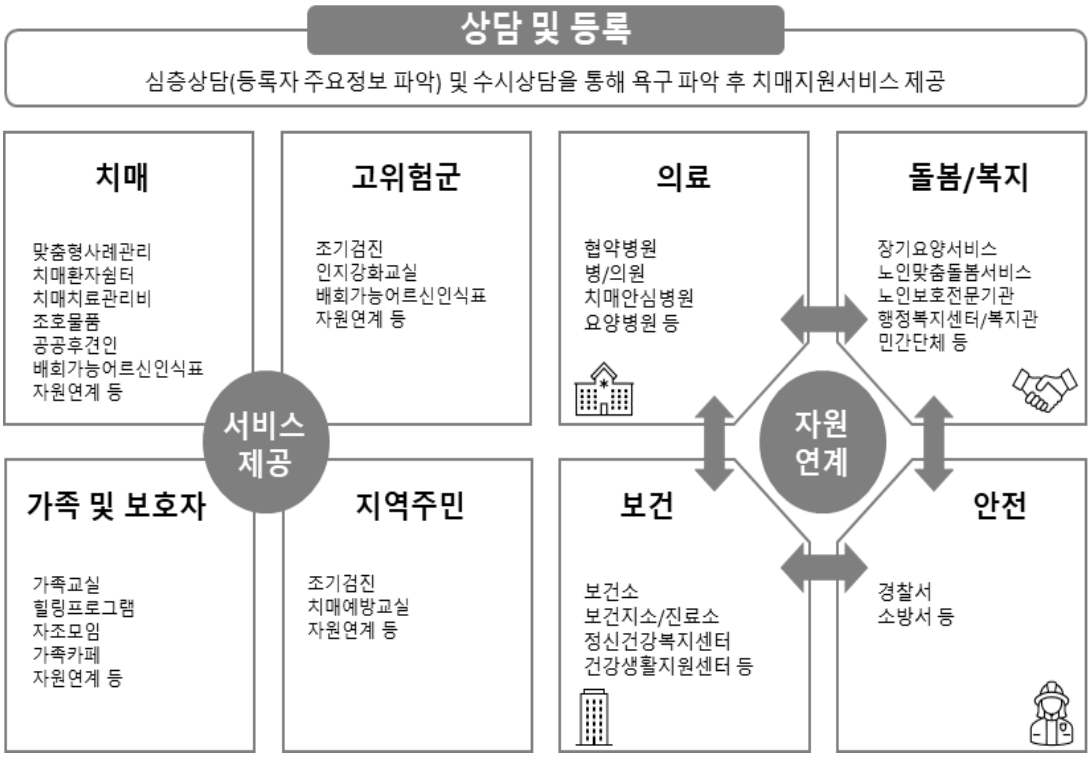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30	2050
65세 이상	7,718,616	8,134,675	8,577,830	9,010,545	9,462,270	13,056,326	19,003,889
치매환자	794,280	840,192	886,173	935,086	984,601	1,418,660	3,148,768
유병률(%)	10.29	10.33	10.33	10.38	10.41	10.87	16.57

* 자료: 「2024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189)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진단검사 검진 시행자
- (신경심리검사 수행)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

190) **「치매관리법」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



* 자료:「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 노인건강관리(2235-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실명·전립선질환·무릎관절·요실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홍보·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실명예방관리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계획현액은 86억 5,100만원으로 71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4,5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노인건강관리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8,333	8,333	318	8,651	7,156	45	1,450
· 기본경비	15	15	-	15	13	-	2
· 노인실명예방관리	2,054	2,054	-	2,054	2,054	-	-
· 전립선질환예방관리	182	182	-	182	182	-	-
·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4,082	4,082	-	4,082	4,082	-	-
· 요실금 치료지원	2,000	2,000	-	2,000	515	45	1,440
· 노인걷기앱개발 및 노인체조법 등 연구	-	-	318	318	310	-	8

나) 수요를 고려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 등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요실금치료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음.

□ 노인실명예방관리 및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사업은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전립선질환예방관리 사업은 저소득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및 진료상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치료비용(수술, 의료기기 등)을 지원함.

< 2024년도 노인건강관리 사업 현황 >

<table>
<tr><th>구 분</th><th>노인실명
예방관리</th><th>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th><th>전립선질환
예방관리</th><th>요실금
치료지원</th></tr>
<tr><td>사업내용</td><td>저소득 노인 등에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td><td>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관절 수술 지원</td><td>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지원</td><td>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 지원</td></tr>
<tr><td rowspan="2">사업추진
절차</td><td>(수행기관)한국실명예방재단</td><td>(수행기관)노인의료나눔재단</td><td rowspan="2">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국고보조금 지급</td><td rowspan="2">•(보건복지부) 참여지역 선정 등 총괄
•(시·군·구)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등
•(의료기기 비치 기관) 의료기기 사용·관리 등
•(평가기관) 사업 평가 기준 마련, 평가 등</td></tr>
<tr><td colspan="2">(대상자) 보건소에 수술지원 신청→ (보건소) 재단에 신청서 송부→ (재단) 대상자 확정 통보→ (의료기관) 대상자 수술 및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td></tr>
<tr><td>지원
세부내용
(인당 지원
금액 포함)</td><td>백내장·녹내장, 망막증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일부 제외)</td><td>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td><td>•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진료상담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
• 돌봄서비스 제공자 대상 도뇨관 유치, 자가도뇨 등 배뇨장애 관리 교육 실시</td><td>•(의료비)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 상한)
•(의료기기)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에 식약처 허가 요실금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td></tr>
<tr><td>대상자
선정기준</td><td colspan="2">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td><td>55세 이상 남성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배뇨장애자
*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사전 접수</td><td>•(의료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의료기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소득·연령 무관)</td></tr>
</table>

* 자료: 보건복지부

□ <u>노인실명예방수술비 신청이 연례적으로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u>

□ 노인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비 지원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술비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하고 있고, 2024년에도 8월에 마감된 바 있음

< 노인건강관리 내역사업별 신청 및 지원 현황(2020～2024) >

(단위 : 안, 명, 건, 개소)

지원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노인실명예방 수술비 지원	8,738	8,334	8,581	7,564	8,029	7,295	7,687	7,020	8,485	8,327
노인무릎 수술비 지원	3,292	2,537	3,536	2,484	3,469	2,491	2,834	2,192	5,128	3,235
전립선질환 예방검진	-	618	-	558	-	1,651	-	1,968	-	174
요실금 치료지원	-	-	-	-	-	-	-	-	20	20

* 주1)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두 지원 중
* 주2) 전립선질환 예방검진: 도서벽지에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사 방문 후 당일 검진하는 절차로, 신청자 수와 지원자 수가 같음(2020년부터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방문이 어려워 지원이 감소함).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4년도 계획액에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예산(40억 8,200만원)은 전년(32억 9,300만원) 대비 24% 증액되었으나,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20억 5,400만원)은 2022년 계획액(20억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도 적정수준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노인건강관리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2020~2025)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노인실명예방 수술비 지원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1,863	1,863	2,054	2,054	2,062
노인무릎 수술비 지원	2,992	2,992	2,992	2,992	2,992	2,992	3,293	3,293	4,082	4,082	4,086
전립선질환 예방검진	200	200	200	200	200	200	180	180	182	182	182
요실금 치료 지원	—	—	—	—	—	—	—	—	2,000	515	1,000

* 자료 : 보건복지부

□ 아울러, '요실금 치료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요실금 적기 치료를 통해 요실금 환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인 바, 당초 계획액은 20억원이었음.

□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 구체화가 늦어지고 지방자치단체 공모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 계획액의 26%인 5억 1,500만원만 교부되었으며, 이 중 실집행액은 2억 5,700만원에 불과하였음.

< 2024회계연도 요실금 치료지원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요실금 치료지원	2,000	2,000	-	2,000	515 (257)	45	1,440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2,000	975	-	975	238 (12)	-	737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	975	-	975	272 (240)	-	703
- 일반연구비 (260-01)	-	50	-	50	5	45	-

□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집행관리에 노력하여야겠음.

< 2024년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목적)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 (총사업비) 3,950백만 원(국비 2,000백만 원, 지방비 1,950백만 원)
○ (사업집행 주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국비 19.5억원 범위 내 선정
○ (지원내용) 요실금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2. 사업 내용
1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식) 요실금 환자가 본인부담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지원범위)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연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하되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환자] 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 [보건소] 의료비 지급
2 의료기기 지원
○ (지원방식) 공공시설에 요실금 환자용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사용 지원
○ (지원대상) 보건소(보건지소), 공공 의료기관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
* 예) 사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환자의 세부 질환 형태에 맞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도록 관리할 담당자(가급적 보건의료인) 등 필요
○ (지원범위) 요실금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 (지원절차) 시·군·구의료기기 구매계획 수립, 구매 및 설치 → 지원대상기관담당자 지정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관리
*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 의료기관에 한해 필요시 대여 가능
3 사업 평가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 검토

* 자료: 보건복지부

8. 장애인정책국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조 413억 8,700만원이고,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424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5조 358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041,387	5,041,387	5,042,471	5,035,870	795	5,804
일반회계	5,025,261	5,025,261	5,026,329	5,019,729	795	5,8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982	5,982	5,998	5,997	-	1
국민건강증진기금	10,144	10,144	10,144	10,144	-	-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장애수당(기초) 사업 등 총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조 252억 6,100만원, 예산현액은 5조 263억 2,900만원으로, 이 중 5조 197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계)	**5,025,261**	**5,025,261**	**5,026,329**	**5,019,729**	**795**	**5,803**
장애수당(기초)	150,633	150,633	148,235	148,235	-	-
장애수당(차상위 등)	68,518	68,518	74,662	74,662	-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43,805	43,805	43,800	43,798	-	2
장애인연금	893,157	893,157	893,117	893,061	-	56
장애인의료비 지원	35,868	35,868	35,868	35,868	-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5,001	5,001	5,001	4,963	-	38
장애인지원관리	986	986	1,186	1,071	82	3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92	192	192	136	-	56
장애인활동지원	2,284,604	2,284,604	2,280,808	2,280,510	43	255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47	194,047	194,047	194,047	-	-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44	2,544	2,544	2,544	-	-
발달장애인 지원	357,738	357,738	358,470	356,687	380	1,403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965	965	1,141	1,015	98	2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28,732	28,732	28,732	26,368	-	2,36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	669,549	669,549	669,549	668,963	-	586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0,995	10,995	10,995	10,995	-	-
장애인단체	6,843	6,843	6,843	6,763	-	80
장애인일자리지원	222,695	222,695	222,695	222,695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9,432	9,432	9,432	8,878	39	514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962	4,962	4,954	4,742	134	7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0,017	10,017	10,035	9,727	-	308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163	163	163	163	-	-
장애인 편의증진	989	989	989	989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9,911	19,911	19,911	19,911	-	-
중증장애인우선구매 촉진	2,720	2,720	2,720	2,720	-	-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 (총액)	94	94	91	86	3	1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 (비총액)	101	101	149	132	16	2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59억 8,200만원, 예산현액은 59억 9,800만원이며, 이 중 5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계)	**5,982**	**5,982**	**5,998**	**5,997**	**-**	**1**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5,982	5,982	5,998	5,997	-	1

4) 기금 결산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재활병원건립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당초 계획액과 계획현액은 101억 4,4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건강증진기금(계)	10,144	10,144	10,144	10,144	-	-
재활병원건립	7,000	7,000	7,000	7,000	-	-
권역재활병원 지원	684	684	684	684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460	2,460	2,460	2,460	-	-

5) 이·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용은 없었으며,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수당의 부족분 지급을 위해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에 37억 4,6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39억 100만원을 전용(증)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38억원을 전용하는 등 총 38억 7,5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3,901	△3,875	
일반회계	장애수당(차상위 등)	3,746	-	- 월별 수급자가 '24년 예산상 계획 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예산 부족 발생, 집행실적 및 지자체 수요 등 토대로 12월까지의 부족분 충당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	△5	-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대리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장애인연금	-	△40	-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대리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30백만원)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관련 용역(10백만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19	△19	- 웹접근성 인증 심사, SSL 보안 인증서 갱신비 마련을 위해 일반연구비(260-01)를 일반수용비(210-01)로 자체전용(4백만원) -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일반연구비(260-01)를 일반용역비(210-14)로 자체전용(9백만원) -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상용임금(110-03)을 고용부담금(330-09)로 자체전용(2백만원) - 전시체험장 천장누수 공사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일반연구비(260-01)를 일반수용비(210-01)로 자체전용(4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3,901	△3,875	
	장애인지원관리	85		-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대리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장애인활동지원	4	△3,800	-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한 자체 전용(4백만원)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자체전용(10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 지급분 확보를 위한 전용(3,746백만원) -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대리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40백만원) -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한 자체 전용(4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0	△10	- 편의증진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용역비 부족으로 장애인연금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용(20백만원) - 장애인차량 lpg 부당이득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대리계약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10백만원)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1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7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

6) 이월 및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3억 8,0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총 7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795	
일반회계	장애인지원관리	82	- 연구용역 계약기간('24.8.5~'25.4.24) 미도래
	장애인활동지원	43	- 연구용역 계약기간('24.12월~25.4월) 미도래
	발달장애인 지원	380	- 연구용역 계약기간('24.8.6~'25.7.23) 미도래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98	- 연구용역 계약기간('24.5.20~'25.3.16) 미도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39	- 연구용역 계약기간('24.7.2~'25.3.7.) 미도래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134	- 연구용역 계약기간('24.6.25.~'25.3.20) 미도래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3	- 절감분 이월(특근매식비 3백만원)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6	- 절감분 이월(일반수용비 3백만원, 임차료 3백만원, 국내여비 10백만원)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인제요양원 신축 및 인제재활병원 증·개축 사업 포기 등으로 불용액 23억 6,400만원이 발생하는 등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58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5,804	
일반회계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2	- 집행잔액
	장애인연금	56	- 집행잔액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38	- 집행잔액
	장애인지원관리	32	- 집행잔액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56	-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1백만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금리 인하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5백만원 발생
	장애인활동지원	255	-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지원	1,403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의사인력기준 미충족 등 4개소 미지정으로 인한 불용(1,368백만원) - (수용비) 연구용역 조달계약 낙찰차액(35백만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용	28	- 집행잔액(낙찰차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64	- (인제요양원 신축 및 인제재활병원 증·개축)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미수립 및 자부담 확보 불가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2,230백만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미승인 매각으로 1개소 보조금 교부 취소(40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불용(89백만원) - 기타 집행잔액 불용(5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	586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비 등 집행잔액
	장애인단체	80	- 집행잔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14	- '24년 국회 증액 신규사업으로 관련 지침 신설 등 사업 준비,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순연되어 불용액 발생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78	- 집행잔액(연구용역 62백만원, 장애체험센터 경상경비 12백만원, 기타 경상경비 4백만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308	-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기관별 인력채용 기간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잔액(239백만원) - 위탁 사업자 공모·선정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 경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58백만원) - 장애인 건강관리 연구상용임금 등 집행잔액(11백만원)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1	- 집행잔액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	-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1	- 연구용역 낙찰차액(0.6백만원)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장애아동 보호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연령, 경제적 수준, 장애 정도 등을 반영하여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68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1억 4,400만원을 증액 전용한 예산현액 746억 6,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8,518	68,518	-	6,144	74,662	74,662	-	-

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장애로 인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임.[191]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 연령,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

구분	18세 이상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1): 3급 중복은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자료: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재구성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함.

191) 김영애. (2025). 사회권 관점으로 본 장애인 정책 계획 고찰:'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7(1), 71-96.

<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 체계 >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주1):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경증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수당 또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함.

< 2024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체계 >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3만 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3만 원

자료: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재구성

다) 반복적인 예산조정(내역변경·전용)에 의존하는 집행 관행 개선 필요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은 최근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예산조정이 있었음에도 2025년도 예산편성액이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조정이 상시적 집행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수급자 변동 추이뿐 아니라 예산 편성 시점의 수급자 변동까지 반영하는 등 예산의 계획성과 집행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별도 내역사업 구분 없이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경증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만원을 지급하고,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각각 중증장애아동수당 9 ~ 22만원과 경증장애아동수당 3 ~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4년 685억 1,800만원의 예산액이 당초 편성되었으나, 10월 중 2차례에 걸쳐 각각 23억 9,800만원과 37억 4,600만원의 내역변경 및 전용이 이루어져 총 6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746억 6,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 예산조정 세부내역 >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0.08.)	장애수당(기초) (1531-300)	330-01	2,398	장애수당(차상위 등) (1531-301)	330-01
전용 ('24.10.28.)	장애인활동지원 (1535-304)	330-01	3,746	장애수당(차상위 등) (1531-301)	330-01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집행 점검 시, 동 사업의 수급 인원이 예산편성 당시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10월 내역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부족분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전용을 통해 이를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 장애수당(차상위 등) 예산편성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

구분	2024년 예산편성 계획인원	2024년 지급인원
차상위 장애수당	103,059명	107,383명(**계획 대비 +4,324명**)
중증장애아동수당	7,611명	8,069명(**계획 대비 +458명**)
경증장애아동수당	9,413명	9,888명(**계획 대비 +475명**)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참고로,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증감을 수반하게 되므로, 자체 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집행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192]

전용은 사업 간 유사성, 사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금액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193]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2024년도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의 내역변경 및 전용과 같은 예산조정을 통한 집행은 비록 절차적 측면에서는 법령 위반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액의 약 9%(685억 1,800만원 중 61억 4,400만원)를 변경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의 내용과 취지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어 보이며,

---

192) 기획재정부. (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9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2023년의 경우에도 2024년과 동일한 사유(예산편성 계획인원과 집행인원의 차이)로 2차례에 걸쳐 총 12억 2,000만원의 예산조정이 있었다는 점,[194]

② 2025년도 예산편성액이 7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24년 예산현액 746억 6,200만 원보다 오히려 그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동 사업은 향후, 내역변경 및 전용과 같은 예산조정이 상시적인 집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결산 단계에서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를 초래하여, 예산의 계획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운영의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반복적인 예산조정은 예산편성 시 직전 3개년 수급자 연평균 변화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실제 수급 인원 등 집행 수요의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내역변경 및 전용과 같은 예산조정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직전 3개년 수급자 연평균 변화율뿐 아니라 예산 편성 당해연도의 수급자 변화율도 반영하는 등[195]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4) 세부사업 장애인연금에서 장애수당(차상위 등)으로 12억 2,000만원의 내역변경이 있었음.
195) 예를 들어, '24년 예산의 경우는 '23년 편성하며, '20~'22년 직전 3개년 수급자 증감율만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21~'23년 1분기 최근 3개년 수급자 증감율까지 반영하는 방식

라) 지원 기준 및 법적 근거가 상이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세부사업 분리 또는 내역 구분 필요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가 상이한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구분 없이 통합 집행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과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사업 분리 또는 내역 구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2012년까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모두 '장애수당 지급'이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통합·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장애수당(기초)' 세부사업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차상위 등)' 세부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편성·집행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단서[196]에 따른 의무지출이므로, '장애수당(기초)' 세부사업으로,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본문[197] 및 제50조제1항[198]에

196)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따른 재량지출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차상위 등)’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199]

□ 그러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각각 지원 기준,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

①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월 3 ~ 6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근거한 사업인 반면,

②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및 경증장애아동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입소자에게 월 3 ~ 22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한 사업임.

- 참고로, 장애아동수당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은 최근 개정되어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단서 규정[200]에 의해 2025년 10월부터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임.

197)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198)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9) 보건복지위원회. (202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Ⅰ)

200)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기준 및 법적 근거 >

구분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수당 (차상위 등)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보장시설 입소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 중증 또는 경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3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월 6만원	≠	• 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22만원 • 중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 중증: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원 • 경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 경증: 보장시설 입소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3만원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단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무지출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본문 ※ 재량지출	≠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 현재는 재량지출이지만, 2025년 10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무지출

자료: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후, 재구성

□ 이처럼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가 상이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장애수당(차상위 등)'이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구분 없이 통합·집행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수당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집행했는지 집행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원칙대로라면 전용 등과 같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예산이 이를 거치지 않고 본래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② 성격이 다른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각각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전체’ 전체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201]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라는 정책목적은 동일하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법적 근거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이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현행 방식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수당(차상위 등)’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편성하거나, 동일 세부사업 내 ‘장애아동수당’을 내역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교부·집행·정산함으로써, 예산

201) 장애수당(차상위) 수혜자 비율 = (장애수당(차상위 등) 수혜자 수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수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100(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자료 2-1.)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향후 장애아동수당의 단계적 의무지출 전환에 따른 예산 운영상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1532-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하는 한편,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장애인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0억 100만원이며, 증액 전용 6,300만원, 감액 전용 6,3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0억 100만원 중 4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001	5,001	-	△6363	5,001	4,963	-	38
보조기기교부	1,847	1,847	-	-	1,847	1,847	-	-
중앙보조기기센터	1,059	1,059	-	△6363	1,059	1,021	-	38
지역보조기기센터	2,095	2,095	-		2,095	2,095	-	-

나) 전용 절차 없이 일반연구비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관행 시정 필요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에서 일반연구비로 집행되어야 할 과업이 전용 절차 없이 수년간 일반용역비로 반복 집행되면서, 예산 비목 간 구분 취지를 훼손하고, 집행의 신뢰성과 회계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은 국립재활원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등이 있음.[202]

□ 그런데 국립재활원의 일반연구비와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두 비목 간 예산 목적과 집행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에서는 「국가재정법」 제46조[203] 에 따른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연구비 성격의 사업을 일반용역비로

---

20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0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집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예를 들어,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연구비로 집행되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용역비에서 집행되어 왔으며,

- 품질 및 성능평가, 시험, 원가계산, 실태점검 등 연구적 성격이 강한 다수의 사업들도 일반연구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반복 집행되었음.

< 최근 5년간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2020년	• 보조기기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비(11) • 보조기기전문 온라인 교육 개발(10) • 교부사업만족도 조사(8) • VR웹버전 업그레이드(3) • 중앙보조기기센터 e-리플릿 제작(3) • 품질안전 점검 시험 수수료 및 사용성/개발/작업환경 평가 수수료 등(43) • 보조기기 품질실태 점검(11)	• 2020년 보조기기 산업실태조사(48) • 지역보조기기센터 사업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27) • 보조기기 공통 품질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32) • 중앙보조기기센터 앱 기능개선(15)
2021년	•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13) •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품질점검(시각신호표시기 등 5건 교부사업 등록제품 사후관리)(9) •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품질점검(바디슈트 등 3건 교부사업 등록제품 사후관리)(2) •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품질점검(이동변기 등 2건 교부사업 등록제품 사후관리)(2) • 보조기기 교부품목 원가계산 용역(4)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제도평가 및 품목 요구도 조사(9) • 2021년 보조기기 교육영상(실무과정 1차 및 2차) 제작(7) • 보조기기 품질개선 지원사업 홍보영상 제작(6) • 장애인보조기기(유모차) 품질시험 및 성능시험 용역(10)	• 보조기기 제품 추천을 위한 평가 프로토콜 개발 연구(48) • 중앙보조기기센터 웹사이트 기능개발(30)

구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 장애인보조기기(목욕의자) 실태점검 용역(7) • 보조기기교부사업 표준교육자료 제작(9) • 동영상(슬기로운 보조기기생활) 제작(7)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 등 평가용역(27)	
2022년	•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13) • 중앙보조기기센터 홍보부스 운영(7) • 영상(슬기로운 보조기기생활)제작(4)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 및 품목 요구도 조사(8) • 보조기기 등록제 원가계산(13) • 장애인보조기기(보행차 등6품목) 품질시험(11) • 보조기기 등록제 홍보동영상 제작(6) • 2022년 보조기기 발전방안 세미나 온라인 송출(5) • 피더시트 품질 및 성능시험(12) • 보행차 품질 및 성능시험(8) • 영상(보조기기 전문인력 교육) 송출 및 제작(6) • 3D 프린팅 보조기기 성능 비교시험(6)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46) • 중앙보조기기센터 앱 기능개선(32)
2023년	•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15) • 슬기로운보조기기생활 영상 제작 용역(4) • 교부사업 등록제품 사후관리 및 원가계산 용역(19) • 보조기기 품질시험 용역(3) •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체험장 가상체험 VR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10) • 3D프린팅 보조기기 성능 평가(15) • 하반기 등록제품 원가계산(2) • 장애인용 카시트 품질 및 성능 시험 추가 시험 용역(26)	• 2023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48) •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34)
2024년	•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15) • 보조기기 홍보소식 웹진 제작 용역(7) • 보조기기 사후관리 용역(12) • 팔 지지대 품질 및 성능시험 일반용역(7) • 보조기기센터 홍보영상 제작 용역(18) • 정형외과용 구두 품질 및 성능 확인 대행 일반용역(15) • 2024년 하반기 보조기기 등록제 접수 제품 원가계산 용역(8) • 중앙보조기기센터 모바일 앱(APP) 접근성 품질인증 수행 용역(11) • 보조기기 생활 영상(청각·언어장애인편) 제작 용역(5) • 3D 프린팅 보조기기(장애인용 자전거 페달) 품질 및 사용성 확인 대행 용역(26)	•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질기준 개발 및 제안 일반연구(44) •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등 기개선(19)

주1): 음영 표시는 일반연구비 집행이 적절한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고, 일반연구비는 학술, 기술, 평가,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中

일반용역비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일반연구비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 연구 관련 제반 용역

□ 예산은 각 비목의 성격과 집행 기준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회계책임성이 확보되고, 지출의 목적과 성과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집행의 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204]

그런데 국립재활원은 일반연구비로 집행되어야 할 정책연구, 평가,

204) 강태혁. (2018). 정부 세출예산 비목분류 체계의 합리화 방안. 정부회계연구, 16(1), 73-120.

실태조사 등의 과업들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년간 일반용역비로 반복 집행하여, 예산 비목 간 구분 취지를 약화시키고, 회계책임의 명료성,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 집행 시, 일반연구비와 일반용역비를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1535-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제공,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산급여,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조 2,846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7억 9,600만원이 감액 전용된 예산현액 2조 2,808억 8백만원 중 2조 2,805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고,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활동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284,604	2,284,604	-	△3,796	2,280,808	2,280,510	43	255
활동지원급여	2,213,224	2,213,224	-	△21,713	2,191,511	2,191,257		254
가산급여	47,034	47,034	-	17,967	65,001	65,001		
위탁사업비	23,844	23,844	-	-	23,844	23,844		
운영비	502	502	-	△50	452	408	43	1

나) 미이용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도 개선 필요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용자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사 연계 체계 점검 및 장기 미이용자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활동지원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체기능,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구분된 대상자에게, 월 최소 약 60시간(97.1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775.4만원)까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2024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지원 내용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급여량(단위: 만원)</th></tr>
<tr><td rowspan="6">활동지원급여</td><td rowspan="5">급여</td><td>1구간</td><td>2구간</td><td>3구간</td><td>4구간</td><td>5구간</td></tr>
<tr><td>775.4
(약 480시간)</td><td>726.9
(약 450시간)</td><td>678.5
(약 420시간)</td><td>630.1
(약 390시간)</td><td>581.6
(약 360시간)</td></tr>
<tr><td>6구간</td><td>7구간</td><td>8구간</td><td>9구간</td><td>10구간</td></tr>
<tr><td>533.2
(약 330시간)</td><td>484.5
(약 300시간)</td><td>436.2
(약 270시간)</td><td>387.8
(약 240시간)</td><td>339.3
(약 210시간)</td></tr>
<tr><td>11구간</td><td>12구간</td><td>13구간</td><td>14구간</td><td>15구간</td></tr>
<tr><td>290.9
(약 180시간)</td><td>242.4
(약 150시간)</td><td>194.0
(약 120시간)</td><td>14.56
(약 90시간)</td><td>97.1
(약 60시간)</td></tr>
<tr><td>본인부담</td><td colspan="5">-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0,400원 ~ 200,200원)</td></tr>
</table>

자료: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재구성

□ 2024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률은 84.7%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86.7%(2020년) → 86.0%(2021년) → 85.1%(2022년) → 84.7%(2023년) → 84.7%(2024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 수는 118,125명(2020년) → 130,160명(2021년) → 142,159명(2022년) → 155,602명(2023년) → 167,403명(2024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이용자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활동지원급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활동지원급여 이용 현황 >

(단위: 년, 명)

구분	대상자 (A)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합계		
		이용자 (B)	이용률 (C) (C=B/A)	이용자 (D)	이용률 (E) (E=D/A)	이용자 (F)	이용률 (G) (G=F/A)	이용자 (H)	미이용자	이용률 (I) (I=H/A)
2020	118,125	99,784	84.5%	2,375	2.0%	241	0.2%	102,400	15,725	86.7%
2021	130,160	109,010	83.8%	2,714	2.1%	237	0.2%	111,961	18,199	86.0%
2022	142,159	117,894	82.9%	2,869	2.0%	230	0.2%	120,993	21,166	85.1%
2023	155,602	128,478	82.6%	2,987	1.9%	263	0.2%	131,728	23,874	84.7%
2024	167,403	138,332	82.6%	3,127	1.9%	296	0.2%	141,755	25,648	84.7%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활동지원급여 6개월 이상 장기 미이용자 3,387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미이용 사유는 ▲ 활동지원사 미연계(35.89%), ▲ 병원 입원·사망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19.58%), ▲ 가족 돌봄(1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중증 또는 돌봄 난도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입원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퇴원 후 신속하게 지원 연계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재이용을 위한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함을 시사함.[205]

보건복지부는 매년 증가하는 활동지원급여 미이용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과 매칭 체계 개선, 장기 미이용자 및 일시 중단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5)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60일 이상 병원 입원, 사망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 신청 허용 등 활동지원급여 이용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 재정수요 증가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조정(내역변경)을 통한 가산급여 집행 관행 개선 필요

가산급여는 매년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예산조정(내역변경)에 의존한 집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과거 집행 실적과 수요 추이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집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 난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최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임.

2024회계연도 가산급여의 당초 예산편성액은 470억 3,4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내역변경을 통해 179억 6,700만원이 증액된 650억 100만원으로 확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집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적게는 약 22억에서 많게는 약 251억원이 내역변경을 통해 증액되어 집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가산급여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년	2,066	2,066	-	2,262	-	4,328	4,328	-	-
2021년	4,649	4,649	-	4,999	-	9,648	9,648	-	-
2022년	9,005	9,005	-	7,448	-	16,453	16,453	-	-
2023년	21,925	21,925	-	25,153	-	47,078	47,078	-	-
2024년	47,034	47,034	-	17,967	-	65,001	65,001	-	-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조정 세부 내역 >

구분	~에서		금액(백만원)	~으로	
	세부사업 명(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24.4.26.)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13,341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4.8.29.)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1,917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4.10.14.)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2,709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3.6.21.)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25,153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2.8.8.)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7,448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1.4.14.)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4,466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1.10.8.)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533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0.7.24.)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2,015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내역변경('20.9.28.)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247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330-01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가산급여가 매년 예산조정에 의존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최초 예산 편성 시점에서부터 실제 필요액보다 과소 계상되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가산급여 단가 인상과 지급 인원 증가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편성기준 대비 실제 이용시간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가산급여 지급 인원 및 지원 시간 단가 >

(단위: 명, 시간)

연도	가산급여 지급인원		가산급여 지원시간		가산급여 단가
	예산 편성 기준	실제 지급인원	예산 편성 기준	실제 이용시간	
2020	2,000	3,380	128.5	166.9	1,000원
2021	3,000	3,770	128.5	204.2	1,500원
2022	4,000	4,384	140.0	217.6	2,000원
2023	6,000	9,094	151.5	239.6	3,000원
2024	10,000	9,873	195.0	246.4	3,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이에 더해 2025년 가산급여의 편성 예산은 494억 4,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50억 100만원에 비해 오히려 155억 5,500만원 적게 편성되었음을 고려하면, 2025년에도 내역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의 집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활동지원사 연계를 위해서는 가산급여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

년 과소편성되어 내역변경에 의해 반복적으로 집행된다면, 동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단가 인상, 이용시간 증가, 수급자 확대 등으로 가산급여의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거 집행 실적과 수요 증가 추이를 기반으로 보다 예측 가능한 집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임시적 예산조정(내역변경)에 의존하는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보전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불균형 개선 필요

보전급여는 수급자 유형별로 집행 양상이 크게 달라, 65세 이상 장애인 보전급여는 반복적으로 과다 집행되고,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는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집행되는 등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추계 및 인지도 제고·접근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현행 법령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06]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지만,

이러한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2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이하생략. [시행일: 2025. 6. 21.]

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전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보전급여 제도 개요 >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보전급여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
근거 법령 및 시행일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1.1. 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3.1. 시행
지원 대상	•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량과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자격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도래자(등급 외 판정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선정기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 42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 42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그런데 보전급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장애인 보전급여 수급자는 매년 당초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30.8%에 이를 정도로 과다 집행되는 추세임.

반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기준인원에 매년 미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각각 20.7%, 7.5%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보전급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연도	65세 이상 장애인 보전급여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				
	예산편성기준인원	실제지급인원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편성기준인원	실제지급인원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2021년	408	560	10,570	13,627	128.9%	-	-	-	-	-
2022년	508	802	13,899	14,220	102.3%	-	-	-	-	-
2023년	608	1,238	17,494	34,467	197.0%	2,720	762	81,313	16,828	20.7%
2024년	500	1,794	14,922	49,369	330.8%	2,720	892	84,342	11,245	13.3%

주1):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전급여는 2021년부터 지급,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전급여는 2023년부터 지급

주2): 예산편성액은 산출 근거 상 예산액(국비)을 0.67(국비:지방비 평균)로 나눠서 조정한 금액임.

주3): 집행액은 당해 연도에 보전급여 수급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 기준임(국비, 지방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처럼 보전급여의 유형별 수급자 규모와 수요 추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에 따라, 정부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보전급여 제도에 대한 각 유형별 수요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전급여의 균형 있는 집행관리를 위해 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 보전급여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추이를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실시하고, ② 집행률이 저조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는 인지도 제고 및 신청 절차·접근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안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시각 또는 청각 장애 등과 같은 감각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94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아동가족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94,047	194,047	-	-	194,047	194,047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54,887	54,887	-	-	54,887	54,887	-	-
발달재활서비스	138,441	138,441	-	-	138,441	138,441	-	-
언어발달지원	651	651	-	-	651	651	-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운영비	68	68	-	-	68	68	-	-

나) 언어발달지원의 높은 잠재 수요와 만족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언어발달지원은 이용자 만족도와 잠재 수요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매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원단가 인상,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확대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언어발달지원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을 부 또는 모(조손가정의 경우 한 조부모)로 둔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과 같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장애가족의 돌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임.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편성액, 실집행액, 편성 기준인원 및 실제 이용자 수 등은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2022년부터는 예산편성액을 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1억 4,500만원) 감액한 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같은 기간(2022년~2024년) 실집행액은 5억 9,4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 이용자 수는 405명에서 365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언어발달지원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편성액	796	796	651	651	651
실집행액	763	774	594	625	410
예산편성 기준인원	550명	550명	450명	450명	450명
이용자 수	413명	435명	405명	400명	365명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언어발달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을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로 둔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9,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207]

또한 「2024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가 11개 주요 사회서비스[208] 중 가장 높은 95.6점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209]

반면, 언어발달지원의 실제 이용률은 전체 장애인 복지사업 중 0.1%에 불과하여,[210] 이처럼 높은 잠재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그 이용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7)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나,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대상 요건 중 하나인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을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로 둔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의 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208) ① 장애인활동지원, ②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③ 발달장애인주간활동, ④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지원, ⑤ 청년마음건강지원, ⑥ 가사.간병방문지원, ⑦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⑧ 일상돌봄서비스, 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⑩ 언어발달지원사업', ⑪ 발달재활서비스

209) 보건복지부(2025, 2월 26일).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92.0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보도자료].

21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 이는 수요 부족이나 서비스 품질 불만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211]에 비해 낮은 지원단가에 기인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부족 등 공급 인프라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단가는 예산편성 기준 월 20만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각각 2,668개소, 13,546명 인데 비해,

  언어발달지원의 지원단가는 예산편성 기준 월 18만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각각 165개소, 306명에 불과하여, 인프라 측면에서 발달재활서비스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임.

< 언어발달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현황 >

시도	언어발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수 (개소)	제공인력 수 (명)	제공기관 수 (개소)	제공인력 수 (명)
서울특별시	21	42	367	2,283
부산광역시	5	8	173	949
대구광역시	4	7	186	940
인천광역시	7	17	138	880
대전광역시	5	15	69	405
광주광역시	13	39	88	512
울산광역시	7	11	69	340
경기도	44	61	714	3,906
강원특별자치도	2	2	88	397

211)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유아 등에게 언어·청능, 행동발달·감각발달·운동발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시도	언어발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수 (개소)	제공인력 수 (명)	제공기관 수 (개소)	제공인력 수 (명)
충청북도	6	8	75	353
충청남도	13	23	104	490
경상북도	10	20	159	714
경상남도	10	12	175	705
전라남도	5	10	82	435
전북특별자치도	10	26	97	496
제주특별자치도	2	6	52	274
세종특별자치시	1	1	32	147
합계(중복제거)	165	306	2,668	13,546

주1): 2024.1.~12. 바우처 결제 이력(1회 이상)이 있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잠재 수요와 높은 만족도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발달재활서비스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확충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1535-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3,577억 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3,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584억 7,000만원 중 3,566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억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57,738	357,738	732	-	358,470	356,687	380	1,403
공공후견지원	3,515	3,325		△190	3,325	3,325		
부모가족지원	4,064	4,064			4,064	4,06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8,907	8,907		190	9,097	9,097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5,757	5,757			5,757	4,389		1,368
주간활동서비스	197,963	197,963		4,145	202,108	202,108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바우처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55,704	55,704		787	56,491	56,491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446	446			446	446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460	460			460	46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7,208	7,208			7,208	7,208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17,563	17,563			17,563	17,563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4,192	14,192			14,192	14,19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40,484	40,484		△4,932	35,552	35,552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925	925			925	925		
사업운영비	550	550	732	-	1,282	818	380	35

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선정 기준 완화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대비 실집행률과 이용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으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낮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는 등 이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212]에 근거하여, 도전행동(자해, 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①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② 주간 개별 1:1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③ 주간 그룹형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1:1 돌봄서비스의 2024회계연도 실집행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당시 기준인원과 금액에 비해 전반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

2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히, 본 사업 시작 첫해임을 고려하더라도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모두 실집행률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 또한 예산편성 기준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초기 집행 여건과 제도 안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예산 175억 6,300만원 중 83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약 47.3%에 그쳤고, 예산편성 기준인원 340명 중 실제 이용자는 55명으로 약 16.2% 수준임.

- 주간 개별 1:1 지원은 141억 9,200만원 중 62억 7,7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약 44.2%, 예산편성 기준인원 500명 중 이용자는 174명으로 약 34.8% 수준임.

- 주간 그룹형 1:1 지원은 편성액 404억 8,400만원 중 45억 6,6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11.3%에 불과하며, 예산편성 기준인원 1,500명 대비 실제 이용자는 255명으로 약 17% 수준에 불과함.

<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편성기준 및 실집행 현황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예산편성 기준	**실집행 현황**
• **예산편성액:** 175억 6,300만원 • **제공기관:** 34개소 • **예산편성 기준인원:** 340명	• **실집행액: 83억 500만원(47.3%)** • **제공기관: 32개소** • **이용자 수:** 55명**(16.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예산편성 기준	실집행 현황
• **예산편성액:** 141억 9,200만원 • **제공기관:** 125개소 • **예산편성 기준인원:** 500명	• **실집행액:** 62억 7,700만원(**44.2%**) • **제공기관:** 83개소 • **이용자 수:** 174명(**34.8%**)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예산편성 기준	**실집행 현황**
• **예산편성액:** 404억 8,400만원 • **예산편성 기준인원:** 1,500명	• **실집행액:** 45억 6,600만원(**11.3%**) • **기준인원:** 255명(**17%**)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러한 실집행 부진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첫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별로 선정조사표에 따른 점수를 바탕으로 시·도 심의위원회[213]에서 서비스 유형을 최종 결정함.

---

2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①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2. 해당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와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③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실제로 24시간 개별 1:1 지원 유형의 경우는 ① 통합돌봄 종합점수 80점 이상이면서, ②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 중에서도, ③ 시·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주거지원 및 야간돌봄의 필요성과 신청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종 판정한 경우에만 선정되는 등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요건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선정요건)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강해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유형	기준
주간 그룹형 1:1 지원	통합돌봄 종합점수 50점 이상 80점 미만
주간 개별형 1:1 지원	통합돌봄 종합점수 80점 이상
24시간 개별 1:1 지원	통합돌봄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도전행동		0~40점
	의사소통능력		0~10점
소계			0~70점
Ⅱ. 지원 필요도 (10점)	개인특성 (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 (7점)	**가정내 보호체계**	**0점~7점**
소계			0~10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둘째,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각 서비스 유형별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가 동 사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설명회(총 8회, 2,230명 참석), 유관기관 방문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214]에 따르면,[215]

발달장애인의 58.4%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복지정보 습득 경로 중 '행정복지센터 등 정부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2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 사업 안내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22-31.
215) 2024년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유형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고,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익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교부 체계 정비 필요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계획 대비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방비 사전 확보계획서 제출, 조건부 선(先)교부 제도 도입 등 탄력적인 보조금 교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편성된 국비 100% 지원의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건립 사업임.

- 동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99.73m2의 규모로 교육지원을 위한 교실, 상담실, 사무실 및 통합돌봄센터 등이 배치될 예정임.[216]

□ 그런데 동 사업은 2022년 최초 예산 편성 당시, '2022년 12월 ~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023년 7월 착공 → 2024년 12월 준공' 일정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0%, 2023년 5.0%, 2024년 28.6%로 계획 대비 매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217]

- 토지 매입, 행정 절차, 설계 기간 지연 등 복합적 사유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설계용역 공정률 90% 수준에 불과하고, 착공 여부 역시 2025년 연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임.

---

216) 보건복지부 제출
217) 2023년과 2024년의 실집행액의 대부분은 건축기획 용역, 설계용역, 주변 정비공사 등에 사용되었음.

<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자(익산시)					
	예산액	교부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300	300	-	-	300	-	300	-	0
2023년	925	925	-	300	1,225	61	1,164	-	5.0
2024년	925	925	-	1,164	2,089	598	1,491	-	28.6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더해,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보조금 교부 방식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래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동 사업의 보조금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연말에 일괄 교부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연내 집행이 어렵고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연내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교부일자
2022년	300	12월1일
2023년	925	11월29일
2024년	925	11월12일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이월액의 선(先)집행 및 소진 여부를 파악한 후, 당해연도 예산을 교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립 사업의 실제 추진 상황에 맞춰 보조금을 연중 분할 교부하고,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집행 관리 방식이라 할 수 있음.

특히,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각각 3억원, 11억 6,400만원이나 있었음에도 이월액 집행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연도 말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실집행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예산 집행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사업 관련 월별 집행 점검은 2024년 6월부터 실시하였음.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교부하여야 하고,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분기(9월 말)까지 교부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는 보조금의 사용 실적과 자부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과 같이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자본보조 건립 사업의 경우, 연말 일괄 교부 관행으로 인한 집행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비 또한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비 사전 확보계획서 제출, 조건부 선(先)교부 제도 도입 등 탄력적인 보조금 교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교부 방식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1535-31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은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복서비스 선택 및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탄력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9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억 7,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1억 4,100만원 중 10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965	965	176	-	1,141	1,015	98	28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230	230	176	-	406	281	98	27
시범사업 시스템운영	358	358	-	-	358	358	-	-
개별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357	357	-	-	357	357	-	-
개인예산제 운영관리	20	20	-	-	20	19	-	1

나) 계약 방법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비효율 개선 필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은 계약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계약 체결까지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과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관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등 집행 과정상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 내역사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정책연구비 260-02)						
	예산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유	불용사유
2023년	480	480	253	176	51	계약기간 미도래 ('23.5.24~'24.3.19)	낙찰차액
2024년	230	406	281	98	27	계약기간 미도래 ('24.5.20~'25.3.16)	낙찰차액(25) 및 집행잔액(2)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최초 계약연도인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회 입찰공고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218]에 근거하여 단일 응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내역사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관련 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공고일	편성예산	계약금액	응찰 및 낙찰업체 (계약기간)	낙찰차액	계약자 선정방법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1차: '23.4.3.	480	4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5.24.~'24.3.1.)	51	일반경쟁 후 수의계약(단일 응찰)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	1차: '24.4.18.	230	2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5.20.~'25.3.16.)	25	일반경쟁 후 수의계약(단일 응찰)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대상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1회 공고 후 단일 응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그러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은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축적하고 연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과제로서,

과제의 전문성, 정책 연계성, 연구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4년 2회차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공고 절차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219] 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연구용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회차 계약의 수행기관이었고, '시범사업 모의적용 및 모니터링' 등이라는 연구과제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회차 계약의 경우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 2회차 계약까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신속 집행 대상사업'으로 해석하여 1회 공고 후, 단일 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결과적으로 2024회계연도에 실시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의 경우는 불필요한 입찰공고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사업 착수가 전년도 계약의 종료 시점 기준(계약종료일: 2024년 3월 1일)이후, 약 2개월(계약체결일: 2024년 5월

2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20일)이상 지연되었고, 불용액도 발생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이 동시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일한 연구기관과의 연속적 과업 수행이 불가피한 연구과제의 경우, 사전에 계약 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적시·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1536-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87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63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3억 6,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8,732	-	-	-	28,732	26,368	-	2,363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720	-	-	-	5,720	5,631	-	89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1,645	-	-	-	1,645	1,645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211	-	-	△5	10,206	10,203	-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18	-	-	-	218	178	-	4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	1,292	-	-	5	1,297	1,296	-	1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750	-	-	-	1,750	1,750	-	-
대구인제요양원 신축	1,825	-	-	-	1,825	-	-	1,825
대구인제재활병원 증·개축	405	-	-	-	405	-	-	405
공립장애인복합 수련시설건립	5,000	-	-	-	5,000	5,000	-	-
공립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500	-	-	-	500	500	-	-
사업운영비	166	-	-	-	166	165	-	1

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반복적인 보조금 이월과 미수납 등 집행 부진 및 정산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교부 체계 마련과 함께 보조금 정산 관리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역사업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지원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신축, 노후설비 개선,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임.

- 2024년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전국에 8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2,385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855	134	67	53	42	39	48	42	3	159	20	27	19	34	29	55	52	32
이용자	12,385	1,281	910	811	547	607	591	479	54	2,913	299	467	283	519	515	766	763	580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022년 최초 실시 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2022년에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200만원(전년도 재이월액 없음), 2024년에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억 8,900만원(전년도 재이월액 3억 2,100만원 포함)이 이월되었음.

  특히, 2024년의 총 이월액은 당해연도 교부된 보조금의 약 8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서 울	197	-	113	-	29	-
부산	39	-	22	-	17	-
대구	56	-	34	-	81	-
인천	90	-	64	-	35	-
광주	36	-	6	-	4	-
대 전	31	-	61	-	24	-
울 산	54	-	38	-	3	-
세 종	41	-	30	-	14	-
경 기	379	78	439	126	88	-
강 원	52	-	125	-	47	27
충 북	15	-	34	-	695	692
충 남	132	68	61	3	13	-

구분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4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전 북	117	-	623	524	35	-
전 남	110	-	349	321	354	670(321)
경 북	44	-	91	28	16	-
경 남	93	-	139	-	152	-
제 주	39	-	51	-	39	-
합계	1,525	144	2,280	1,002	1,646	1,389(321)

주1): ( )안의 금액은 재이월액으로, 보건복지부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재이월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함.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동 사업의 보조금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회계연도에 징수결정된 보조금 3,700만원이 2025년 7월까지 수납되지 않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 징수결정된 보조금 역시 일부 금액이 여전히 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정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지방자치단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금액 (C)	비율 (C/A)	
2022년	17개 시·도	36	31	5	13.9%	86.1%
2023년	17개 시·도	60	26	34	56.7%	43.3%
2024년	17개 시·도	37	0	37	0%	0%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이월 및 정산 관련, 보건복지부는

① 보조금 이월은 최종 보조사업자인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집행 제고를 위해 민간 시설의 집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220]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월 실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을 독려 중이며,

②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교부 및 반납 절차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실적보고 이후 최종 정산금액의 변동에 따라 하위 사업자와 상위 기관 간의 확인 및 보정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어 개별 사업 수준에서의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설명임.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잔액과 발생 이자 등을 포함한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고, 반환액도 명확히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이러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민간 시설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간접보조 방식의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 사업의 정산 지연 사례는 법령 및 지침상의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2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이월의 경우는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필수)처리 기간으로 전체 사업기간이 순연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 판단하여 승인하였다고 함.

< 관련 법령 정리 >

근거 규정	주요 내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221] 및 제26조[222]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불가 • 회계연도 종료 시 중앙관서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은 반납받아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23] 및 제12조의2[224]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산보고서에는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2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2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집행의 실효성과 정산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 선정 시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집행잔액에 대한 신속한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여야 한다.

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분리·일시 보호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인 거주 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6,695억 4,900만원 중 6,68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8,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69,549	669,549	-	-	669,549	668,963		58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63,280	663,280	-	-	663,280	663,280	-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비	1,675	1,675	-	-	1,675	1,675	-	-
학대피해장애 아동쉼터설치비	1,142	1,142	-	-	1,142	571		571
학대피해장애 아동쉼터운영비	1,227	1,227	-	-	1,227	1,227	-	-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278	1,278	-	-	1,278	1,278	-	-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192	192	-	-	192	192	-	-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돌봄사업	442	442	-	-	442	442	-	-
인권지킴이지원 센터	90	90	-	-	90	90	-	-
인권실태조사	100	100	-	-	100	100	-	-
사업관리비	123	123	-	-	123	108	-	15

나) 공모 참여 저조 등에 따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부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유인 방안 마련 필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사업은 공모 참여 저조로 인해 2024년도 예산 중 절반이 불용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추가 설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역 간 장애아동 보호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설치 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비는 폭력,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현장에서 분리·보호하고, 이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 쉼터의 신규 설치를 목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임.

□ 2024년 말 기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225]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에 총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현황 >

지역	시설명	채용정원 (실제종사자 수)	운영개시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	6(6)명	2023년2월8일
	○○피해장애아동쉼터(여아)	6(5)명	2023년5월4일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	6(5)명	2023년7월25일
	○○피해장애아동쉼터(여아)	6(5)명	2023년7월25일

22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	시설명	채용정원 (실제종사자 수)	운영개시일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	6(6)명	2023년2월6일
	○○피해장애아동쉼터(여아)	6(6)명	2023년2월6일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	6(6)명	2023년12월29일
	○○피해장애아동쉼터(여아)	6(5)명	2023년12월29일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	6(4)명	2024년4월25일
	○○피해장애아동쉼터(여아)	6(4)명	2024년4월25일

주1): 구체적인 쉼터의 명칭은 보안을 이유로 적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동 사업은 당초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4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1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충청남도에 2개소(남아·여아 쉼터) 설치를 위한 5억 7,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5억 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충청남도에 교부된 5억 7,100만원은 2024년에는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상황임.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없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4회차 공모(2024.9.24.)에서 선정되어 공사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이월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함.

- 현재 충청남도는 부지 선정, 부동산 매입 등 준비 절차를 2025년까지 마치고, 2026년 1월 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2,641,896명 중 장애아동은 81,364명(3.1%)에 불과하지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263건(18.5%)으로 장애인구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같은 해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총 452건이며, 이 중 263건이 학대로 판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4%, 5.6% 증가한 수치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음.[226)]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공모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4년도 예산 중 5억 7,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025년도에는 동 사업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신규 설치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지역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7건(17.9%), 부산광역시 26건(9.9%), 울산광역시 22건(8.4%), 충청북도 17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2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지역별 장애아동 학대 사례 현황 >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서울		10	3.8
부산		26	9.9
대구		6	2.3
인천		8	3.0
광주		2	0.8
대전		7	2.7
울산		22	8.4
세종		9	3.4
경기	경기남부	51	19.4
	경기북부	19	7.2
	소계	70	26.6
강원		9	3.4
충북	충북	8	3.0
	충북북부	9	3.4
	소계	17	6.5
충남		12	4.6
전북		2	0.8
전남		9	3.4
경북		4	1.5
경남		47	17.9
제주		3	1.1
계		263	100.0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재구성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법령을 활용한 국고보조율 상향이나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차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27]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2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228]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등이 있음.

9)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1538-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0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995	10,995	-	-	10,995	10,995	-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0,995	10,995	-	-	10,995	10,995	-	-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탁사업 중심 인력 운영 구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해소 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수탁사업 중심의 인력 구조로 인해 전체 정규직의 약 79%가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는 고용 편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시적 수탁사업의 구조 개편 및 인력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229]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 관련 이슈를 반영한 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제도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다수 수행 중임.

□ 2024회계연도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예산은 109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집행 내역별 비중은 인건비(60.4%), 사업비(33.9%), 운영경비(5.7%) 순으로 나타남.

---

229)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집행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합계 (비율)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10,995 (100.0)	3,728 (33.9)	6,637 (60.4)	630 (5.7)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이 중, 전체 예산 집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인건비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대부분은 정규직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정규직 인건비 집행은 매년 전체 인건비 집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 정규직 인건비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규직 중 약 27%는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파악됨.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인건비 집행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예산액	정규직 인건비 집행액 (비율)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액 (비율)	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비율
2020년	5,867	5,713(97.4%)	154(2.6%)	25.3%
2021년	5,974	5,780(96.8%)	194(3.2%)	24.7%
2022년	6,164	5,874(95.3%)	290(4.7%)	27.7%

구분	인건비 예산액	정규직 인건비 집행액 (비율)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액 (비율)	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비율
2023년	6,475	6,259(96.7%)	216(3.3%)	29.3%
2024년	6,637	6,286(94.7%)	351(5.3%)	27.0%

주1): 인원은 연도 말 기준의 현원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1538-300) 외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 수행 인력은 제외한 수치임.
주2): 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비율 산정 시 사용된 무기계약직 인원은 연중 평균값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취합된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원 수와 비율 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체 근무 인력을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 중 매년 약 77 ~ 79%가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인력이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보임.

<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체 근무 인력 현황 >

구분	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인원	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비율
2020년	310명	51명	79.0%
2021년	308명	50명	77.3%
2022년	322명	85명	77.6%
2023년	324명	94명	79.0%
2024년	326명	111명	78.8%

주1): 전체 인원은 연도 말 기준의 현원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1538-300) 외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 수행 인력을 모두 포함함.
주2): 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비율 산정 시 사용된 무기계약직 인원은 연중 평균값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취합된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원 수와 비율 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이처럼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인건비 집행 기준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인력의 약 27% 수준이지만, 전체 인력 기준으로는 약 79%에 이르는 이유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력 운영 전반이 수탁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탁사업 인건비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이 아닌 안정성이 떨어지는 별도 세부사업 예산에서 편성·집행됨에 따른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장애인일자리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탁사업 관련 인력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4			
세부사업명		수탁사업명	시작연도	예산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1543-3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2008년	19,911	-	16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1543-30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2009년	1,933	2	22	1
장애인일자리지원(1539-300)		장애인 일자리지원 전문관리체계구축	2010년	1,150	-	9	1
발달장애인지원(1535-30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센터 운영	2013년	900	-	15	5
		중앙주간활동서비스		145			
		중앙부모교육		340			
		중앙긴급돌봄지원		107			
		비로소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10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년	30,151	-	162	85

구분			2024			
세부사업명	수탁사업명	시작 연도	예산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장애아동 가족지원 (1535-30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15년	272	-	5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관리사업 운영		153			
장애정도 심사제도운영 (1531-302)	장애등록 및 복지지원	2016년	386	-	2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36-3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018년	127	-	-	1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인식개선 (1542-302)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	2019년	350	-	1	2
	장애인식개선 대국민 정책홍보사업		200			
	국제장애인협력사업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1536-302)	장애인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	2020년	330	-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542-300)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2021년	326	2	1	1
합계			58,905	4	233	98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음.[230]

- 예를 들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는 경력 산정상 최대인정등급 기준으로 같은 직급인 정규직 6급과 무기계약직 다급은 월 기준 약 26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3급과 선임가급은 약 61만원까지 급여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수평적 임금격차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어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231]

230)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2025. 5. 7. 면담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 보수 기준표>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정규	무기	정규	무기	정규	무기	정규	무기
	3급	선임 가급	4급	가급	5급	나급	6급	다급
5등급	-	-	-	-	-	-	3,348	3,086
8등급	-	-	-	-	4,233	3,883	-	-
12등급	-	-	4,936	4,515	-	-	-	-
15등급	5,974	5,368	-	-	-	-	-	-

주1):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 보수 기준표는 30등급까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직급별 최대 인정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무기계약직에 편중된 인력구조에 대해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비율이 전체 인력의 80%를 초과하여 공공기관 평균(약 24%)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232]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무기계약직 위주 고용형태 개선에 관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233]를 받은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탁사업 중심 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수탁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231) 권오병, 이상민, & 하치동. (2023).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관계연구, 33(3), 49-75.
232) 국회사무처. (2023.). 2023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23년10월23일.
233) 보건복지위원회. (202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154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인 차별 해소와 인권 및 사회적 인식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장애인차별금지 연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제협력, 장애체험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4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00만원 감액 전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9억 5,400만원 중 47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962	4,962		△8	4,954	4,743	133	78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172	3,172			3,172	3,172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801	801			811	809		2
· 장애인차별금지 연구	515	515		10	515	370	133	12
·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66	66			66	14		52
· 장애인체험센터 운영	58	58		△18	40	28		12
·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 운영	350	350			350	350		

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전액 불용 주의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연구자 검증 등 사전 준비 미흡으로 2024년도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은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하여, 2009년부터 발효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인천전략[234] 관련 국제협력, 장애 관련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외여비는 1,400만원 집행되었으나, 일반연구비 5,0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사업 집행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년	220-02 (국외여비)	16	16	14	-	2
	260-01 (일반연구비)	50	50	-	-	50

자료: 보건복지부

234) 인천전략(Incheon Strategy)은 2012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회원국 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10년(2013~2022) 행동전략임.

□ 그간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2022년부터 편성되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집행되어 왔으나, 2024년의 경우는 전액 불용되어 이 같은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였음.

<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주관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불용 및 이유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3차 병합) 심사 대응 전략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48.7	'22.1.21. ~ '22.9.30.	낙찰차액 0.3백만원 불용
	아태장애인 10년 이행 최종 평가를 위한 연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34.6	'22.1.21. ~ '22.4.29.	-
20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30	'23.3.22. ~ '23.10.02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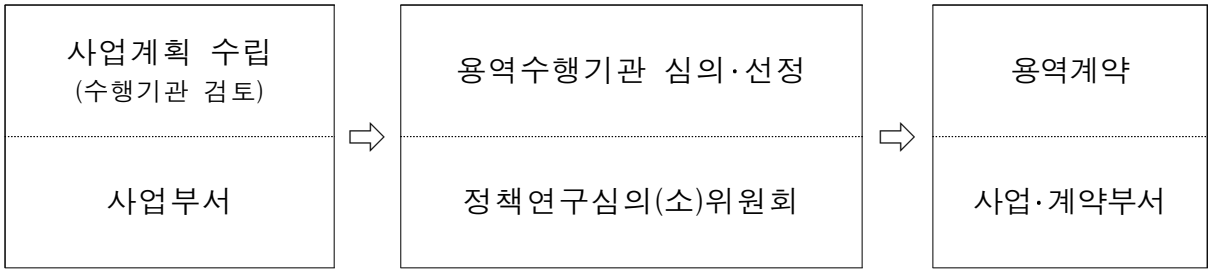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국회의 비준 동의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235]가 비준됨에 따라 개인진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전담부서·예산·인력), 권고 이행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였으나,

연구수행 예정자가 관련 소송의 이해관계인(차별구제 국가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임이 확인되어,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는 설명을 함.

235) 선택의정서는 국내 구제절차로 권리 침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을 핵심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최종 비준함.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선정절차[236] >



주1):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는 정책연구 담당부서의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외부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됨.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동 연구용역은 2024회계연도 내내 연구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의 일반연구비 집행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함.

특히, 단순한 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아니라 전액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최초 연구계획 수립과 주제 설정, 연구자 섭외 등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는 연구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연구자 선정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전액 불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함.

---

23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반연구비 집행 시, 연구 주제의 타당성 검토부터 연구자 검증,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이와 같이 일반연구비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1542-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0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전용 1,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00억 3,500만원 중 97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001	5,001	-	△6363	5,001	4,963	-	38
보조기기교부	1,847	1,847	-	-	1,847	1,847	-	-
중앙보조기기센터	1,059	1,059	-	△6363	1,059	1,021	-	38
지역보조기기센터	2,095	2,095	-		2,095	2,095	-	-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017	10,017	-	18	10,035	9,727	-	308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8,442	8,442	-	-	8,442	8,203	-	239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원	335	335	-	-	335	335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750	750	-	-	750	750	-	-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업무지원	150	150	-	-	150	92	-	58
장애인 건강관리	340	340	-	18	358	347	-	11

나) 실집행 저조 및 장기 미개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은 지정 이후,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개소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낮고, 아직까지 미개소 기관도 남아 있으므로, 개소 기준 완화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제7항[237]에 따라 장애인에게 안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임.

- 2024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에 서울특별시 서울의

2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등 총 21개소가 공모를 통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238)]

□ 그런데 동 사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또는 대부분 감액·전용되어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에는 예산편성액 4억 6,900만원 중 1,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2%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양상을 보여왔으며, 2024년에도 예산편성액 대비 실집행률은 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등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0년	629	△629	-	0%
2021년	1,140	△1,002	-	0%
2022년	1,140	△193	-	0%
2023년	469	-	15	3.2%
2024년	335	-	42	12.5%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집행이 저조했던 이유로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에 의료기관이 응모하지 않았으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 감액 및 전용 조치 등이 있었다는 입장임.

23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12월 시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82개소)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었으며, 2026년 12월까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할 예정임.

□ 그러나 단순히 공모 참여 저조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산 조정만으로는 사업 부진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공모를 통해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시설계획 변경, 개보수 일정 지연, 사업계획 미승인 등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이후 사업을 완료하였더라도 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개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된 기관 중 2024년에도 미개소 상태에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총 9개소인데, 모두 1회 이상 이월이 있었으며, 2회 이월의 경우도 6곳이었음.

- 또한 이 중 3개소는 실집행은 완료되었으나, 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임[239].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미개소 및 실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지정연도	개소여부	소재지	의료기관명	이월 현황	교부 집행 현황		비고
						교부액	실집행액	
1	2019년	미개소	경남 진주시	의료법인 문병우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	2019년→2021년 (2회)	57,000	57,000	완료심의중
2	2022년	미개소	경북 안동시	의료법인안동병원	2022년→2023년 (1회)	57,000	-	사업추진중
3	2023년	미개소	인천 남동구	국제바로병원	2023년→2025년 (2회)	58,500	-	사업추진중
4	2023년	미개소	광주 광산구	우리동네의원	2023년→2025년 (2회)	58,500	-	사업추진중
5	2023년	미개소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023년→2024년 (1회)	58,500	58,500	완료심의중
6	2023년	미개소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023년→2024년	58,500	58,500	완료심의중

239) 2024년도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없었음.

					(1회)			
7	2023년	미개소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2023년→2025년 (2회)	58,500	12,680	사업추진중
8	2023년	미개소	전남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2023년→2025년 (2회)	58,500	57,360	사업추진중
9	2023년	미개소	전남 장흥군	장흥통합의료병원	2023년→2025년 (2회)	58,500	3,300	사업추진중

주1):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남 장흥군의 경우는 사업계획안을 계속 심의 중인 상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2021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공모 시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일정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사유로 보조금을 반환받은 사례는 없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정 지연이 있더라도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보다는 이월 등을 통해 개소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일정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관리 방향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정 이후 이월 등을 통해 장기간 운영 개시를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실집행률뿐만 아니라 개소율 제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 50% 수준인 시설·장비비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 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지정 기준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소 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40]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241]

2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4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등이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 시행에 앞선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려는 것임.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9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9억 9,800만원 중 5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982	5,982	16	-	5,998	5,997	-	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982	5,982	16	-	5,998	5,997	-	1

나) 하위 법령 제정 시 자립 수요를 반영한 장애인주택 공급 기준 필요

장애인주택이 지방자치단체별 자립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소 또는 과다 공급되면서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 전 관련 하위 법령 제정 시 객관적·계량적 공급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 또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를 실시하여 자립 희망 장애인을 발굴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장애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선정된 자립장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제공하는 '장애인주택'에 입주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장애인주택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679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19만 6,000원 수준(1인 가구, 전용면적 평균 52㎡ 기준)임.

- 임차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800만~2,000만원)을 통해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등 기존 소득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자립장애인이 직접 부담함.

□ 동 시범사업의 핵심 요소인 장애인주택의 공급량은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자립대상자 목표량과 기존 장애인주택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LH)에 요청하고, 이후 국토교통부(LH)에서 제공한 주택후보군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공급량이 확정됨.

□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주택 공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및 목표 설정 수준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 구조로, 장애인주택이 지역별로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

실제로 2024년 기준, 동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장애인 및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된 장애인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컨대 대구광역시는 전체 자립장애인의 8.0%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4.4%에 그쳐,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자립장애인 비율이 14.2%, 13.2%인데 비해, 장애인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9.4%, 17.2%로 상대적으로 공급 비율이 높은 수준임.

< 자립 장애인 분포 및 시범사업 장애인주택 공급 현황 >

구분	자립장애인		장애인주택	
계	288명		319호	
서울특별시	4명	1.4%	4호	1.3%
부산광역시	39명	13.5%	42호	13.2%
대구광역시	**23명**	**8.0%**	**14호**	**4.4%**
인천광역시	**38명**	**13.2%**	**55호**	**17.2%**
광주광역시	19명	6.6%	17호	5.3%
경기도	**41명**	**14.2%**	**62호**	**19.4%**
강원특별자치도	2명	0.7%	2호	0.6%
충청남도	5명	1.7%	4호	1.3%

구분	자립장애인		장애인주택	
전북특별자치도	50명	17.4%	52호	16.3%
전라남도	4명	1.4%	3호	0.9%
경상북도	10명	3.5%	16호	5.0%
경상남도	8명	2.8%	6호	1.9%
제주특별자치도	45명	15.6%	42호	13.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242]에 따른 장애인의 동거권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이러한 공급 방식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본 사업으로 전환될 때, 장애인주택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자립 기회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4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보건복지부의 자체 분석에서도 특정 광역시 등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공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을 동 사업 실집행 저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음.[243]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 사업의 전국 확대 등 본 사업 전환에 대비하여, 지역별 자립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계량적 장애인주택 공급 기준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자료 2-1.

<국민건강증진기금>

13) 재활병원 건립 사업(1563-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재활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재활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액은 70억원이었으며, 전액 지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재활병원 건립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7,000	7,000	-	7,000	7,000	-	-
재활병원건립	7,000	7,000	-	7,000	7,000	-	-

나) 재활병원 건립 지연 해소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체계 개선 필요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장기 미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사후 관리 미흡, 실집행과 무관한 성과 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와 실적 기반 성과지표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재활병원은 장애인 또는 손상·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 이후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재활치료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임.

2024년 기준, 경인·호남·강원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재활병원 운영 현황 >

구 분	경인	호남	충청	강원	영남	제주	경북
기관명	경인권역 재활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강원도 재활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병상수	150병상	156병상	152병상	165병상	150병상	150병상	150병상
선정연도 (개원연도)	2006년 (2010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6년 (2012년)	2008년 (2011년)	2007년 (2014년)	2015년 (2021년)
운영 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	조선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양산부산 대학교병원	서귀포 의료원	경북대학교 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2024년도에는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각각 40억원과 30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충청남도는 2억 8,200만원만 집행되었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액 미집행으로 이월되었음.

-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공정률은 21%에 불과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2021년부터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충청남도는 2021년을 끝으로 예산이 모두 교부되어 이후, 2년간(2022년, 2023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2024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된 사례임.

<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활병원 건립 사업 진행 현황 >

구 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명	충남권역재활병원	전북권역재활병원
병상수	150병상	150병상
당초 건립 계획	2017년 ~ 2025년 (2022년, 2023년은 미편성)	2021년 ~ 2026년
공정률	**21%**	**0%**
운영기관	충무병원 영서의료재단	전주 예수병원
관련 예산	국비 135억, 지방비 360억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 기타(병원자부담 등) 190억

주1): 공정률은 2024년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충청남도의 경우 건립 부지 내 장해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를 제거한 후 현재는 2025년 10

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재활병원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재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현재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두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최초 예산 교부 이후 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공정률이 각각 21%와 0%에 그치고 있는 원인은

단순한 사업 추진상의 차질이라기보다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부지 확보 여부,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건립 지연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도 실집행률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나 집행 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 조정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였던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처럼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과는 매년 100%의 달성률로 집계되고 있음.

< 재활병원 건립 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활병원 건립 공정률 (단위 : %)	목표	65.4	75.9	76.8	77.7	83.3	전체사업비 대비 연도별 총 누적투자액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
	실적	65.4	75.9	76.8	-	-			
	달성도	100.0	100.0	100.0	-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자료 2-1.

이는 성과지표로 설정된 ‘재활병원 건립 공정률’을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때 누적투자액이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출 내역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교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즉,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한 시점에 해당 금액 전액이 곧바로 성과로 반영되는 방식임.

□ 이러한 사업 성과 산정 방식은 실제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지표 간 괴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통한 집행력 확보를 저해함으로써, 성과지표가 본래 수행해야 할 사업 관리 및 성과 진단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참고로, 동 사업과 유사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지표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순히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사업수행 보고에 근거하여 설계 착수, 착공, 골조 완공, 준공 등 건립 단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를 목표 개소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

- 즉, 각 병원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정률을 산출함으로써,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 (단위: %)	목표	60.0	77.5	85.0	92.5	97.0	연도별 예상 공정률	(사업진행단계별 가중치 총합)/목표 개소수×100	시·도 사업수행 보고
	실적	60.0	77.5	82.5	-	-			
	달성도	100.0	100.0	97.0	-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자료 2-1.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교부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집행 실적 및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이 필요함.

9.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3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3억 7,900만원임.

이 중 30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265	3,265	3,379	3,026	18	335
<일반회계>	3,265	3,265	3,379	3,026	18	335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31-304)	3,066	3,066	3,195	2,872	18	30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7011-248)	59	59	58	48	-	10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8)	140	140	126	106	-	20

2) 이·전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중 일부(3,000만원)를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자체 전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 사유
계	30 △30	
<일반회계>	30 △30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31-304)	30 △30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등 사무국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총 1,8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 사유
계	18	
<일반회계>	18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31-304)	18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보조사업 및 연구과제 등 낙찰차액(2억 500만원), 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1억원)으로 총 3억 500만원 불용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을 각각 불용하여,

예산현액 33억 7,900만원 중 3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335	
<일반회계>	335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31-304)	305	○ 민간위탁 보조사업(109백만원) 및 연구용역 과제(96백만원) 등 낙찰차액, 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100백만원) 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7011-248)	10	○ 사업 집행잔액 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8)	20	○ 사업 집행잔액 등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지원,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운영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30억 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900만원을 포함한 31억 9,500만원으로, 이 중 28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066	3,066	129	-	3,195	2,872	18	305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564	564	-	4	568	466	-	100
사회보장 관련 정책연구개발 지원	830	830	129	-	960	847	18	96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 운영지원	898	898	-	△4	894	785	-	109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업무 위탁 운영	675	675	-	-	675	675	-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활용지원	99	99	-	-	99	99	-	-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동 사업은 ①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②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원, ③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운영 지원, ④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업무 위탁 운영, ⑤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활용지원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①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및 **②사회보장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및 실무·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③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복지 지출산출, 사회보장 통계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며,

④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업무 위탁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지원 및 쟁점 안건 검토 등 협의 지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⑤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활용지원 사업은 각 부처·기관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활용 등을 위한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용역 사업임.

다) 행정 착오로 인한 예산 오집행 주의

예산 집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본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110-02)'[244] 비목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문위원 2명을 새로이 채용하였는데, 당시 정원(10명)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전문위원 1명의 4개월 분 인건비 1,900만원을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상용임금(110-03)[245] 비목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상용임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전문위원처럼 본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상용임금은 매년 2월까지 기관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

244) 기타직 보수(110-02)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금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로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의 보수 등을 말함.

245) 상용임금(110-03)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임.

2024년에 해당 예산을 상용임금 비목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본부 인건비의 상용임금 비목으로 이관 편성하여 정상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부 인건비로 편성된 기타직 보수를 해당 인건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이·전용 등 적합한 제도에 따르지 않은 채 목적 외 사용한 것이고,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라)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필요

시급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적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및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등 사회보장위원회 및 실무·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음.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등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2024년 12월 23일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그 중 약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 시행(제작가구)’의 이름으로 ‘에코하우스’라는 기업에서 8개 품목 25개의 벽체 고정형 붙박이 가구를 제작·설치하였음.

<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작·설치한 붙박이 가구 내역 >

설치장소	품목	단위(개)	금액(원)
7층 자료실	스툴의자	3	1,455,300
	디스플레이장	7	12,207,800
	곡선 책장	10	21,237,700
	벽선반	1	5,163,400
	기둥장	1	1,654,400
	사서실 벽장	1	2,552,000
	바테이블	1	2,774,200
	인포메이션데스크	1	2,895,200
합계		**25**	**49,940,000**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출한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이전에 따라 필요한 가구들을 구입하였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7층에서 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해당 물품들이 설치된 장소는 본관 7층 자료실이고, 7층 자료실은 보건복지부의 자료 보관 및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곳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내역사업과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결국,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를 같은 내역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하였더라도, 해당 시설장비유지비는 동 내역사업의 목적을 위해 집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예산 집행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실 개선이 아닌 보건복지부 전체의 휴게 공간 개선으로 보이므로 지출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 비목으로 세목조정하여 책장, 테이블 등의 붙박이 가구를 제작·설치한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등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 과목이고,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일반수용비로(210-01), 내구성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로 구입을 하여야 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간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으로 내구성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결국, 2024년 12월 23일 '시설장비유지비'로 약 5,000만원의 붙박이 가구를 제작·설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며, 그 내용 역시 계획적으로 내구성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246]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예산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심의한 예산의 틀 안에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적합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246)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무실 이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나,

적합하지 않은 비목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물품을 현장 제작·설치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해당 예산이 바르게 집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집행 및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급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적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